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13호

2020.10.5.(월)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6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7688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768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76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1
제7691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4
제7692호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8
제7693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7694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7695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7696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7697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31
제769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7699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7700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7701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39
제7702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7703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7704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7705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7706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770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770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7709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7710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제7711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7712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7713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771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7715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7716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7717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7718호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7719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7720호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7721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7722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7723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68
제7724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7725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7726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7727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7728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7729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7730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7731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7732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7733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7734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7735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7736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7737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7738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7739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92
제7740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7741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742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7743호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7744호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99
제7745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7746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7747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7748호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774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775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7751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775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7753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7754호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7755호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7756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7757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7758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7759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77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7761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7762호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24
제7763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제7764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7765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7766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7767호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 고 시

제2020-403호 청량리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34
제2020-404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상계4구역)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55
제2020-4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86
제2020-406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등 8건)	199
제2020-407호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지형도면 고시	200
제2020-410호 무교·다동구역 제19지구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5

◆ 공 고

제2020-278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20
제2020-2790호 2020년도 제1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222
제2020-2795호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225
제2020-2802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229
제2020-280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을 위한 열람공고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	234
제2020-2806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37
제2020-280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240

제2020-2816호	도시관리계획(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공고	241
제2020-282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43

◆ 구 고 시

제2020-14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고시(도봉구)	250
제2020-19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253

◆ 구 공 고

제2020-1140호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종로구)	255
제2020-1133호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종로구)	259
제2020-10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중랑구)	263
제2020-1229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성북구)	265
제2020-1389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동작구)	296
제2020-146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서초구)	299

◆ 사업소공고

제2020-262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300
제2020-263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300
제2020-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01
제2020-2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01
제2020-2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02
제2020-2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03
제2020-26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03

◆ 기 타

제2020-28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04
------------	--------------------------	-----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6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0월 31일” 을
“2021년 10월 31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부칙 제690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688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 기간, 시설물 등을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68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를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를 “3급지의 월 정기권 야간요금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급지”를 “해당 급지 요금”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율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로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 · 이화여대길 · 대흥로 · 구 용산선철도 · 양화로 ·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 · 도림로 · 선유로 · 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라. 강남 · 서초지역: 반포대로 · 올림픽대로 · 분당수서로 · 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 · 석촌호수로 · 삼학사로 · 잠실로 · 올림픽로 · 송파대로 · 신천로 · 오금로 · 올림픽로 · 위례성대로 ·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바. 천호지역: 올림픽로 · 상암로 · 양재대로 · 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사. 청량리지역: 제기로 · 전농로 · 서울시립대로 · 천호대로 ·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아. 용산 · 마포지역: 강변북로 · 마포대로 · 충정로 · 통일로 · 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자. 미아지역: 도봉로 · 오현로 · 오패산로 · 정릉로 · 삼양로 · 숲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차. 목동지역: 목동동로 · 목동서로 · 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급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 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9.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주차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급지체계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 체계로 변경함(별표1 비교3).
- 나. 주차장별 요금 차등화를 위해 해당 급지 요금에 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규정을 신설함(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하단).
- 다.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해 시장의 요금조정 범위를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변경함(별표1 비교4).
- 라.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1급지 지역(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명문화함(제5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인력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인력개발과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 재정담당 부서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심의함.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함.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융자업무 위탁대행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함(제1조 및 제2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제3조).

다.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상환금·차입금·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함(제4조).

라. 기금은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여유자금의 예치·예탁,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함(제5조).

마. 시장은 기금운용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둠(제6조).

바.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시장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91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관광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비용
2.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관광체육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관광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관광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3. 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 관련 학계·업계·언론계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광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서울 관광산업 발전 도모 및 위기 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설치함(제1조 및 제2조).

나. 기금을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및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용함(제4조).

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함(제5조).

라. 기금의 용도를 계정별로 각각 규정함(제6조).

(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의 용도로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 사업 비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명시함.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의 용도로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비용 마련 및 개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을 명시함.

마.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함(제8조).

바. 각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9조).

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10조).

아. 위원의 위촉,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및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92호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촉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의 주체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 이행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 지원
7. 시민사회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진단·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목표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서울시 주요 추진과제
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6.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7. 시민사회 기초조사와 시민사회 정책 개발 지원방안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0.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11. 자치구의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
- 12.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제5조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자치구가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한다.

-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통계조사와 학술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의 집적·공유에 관한 사항
-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 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법령·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둔다.

-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의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조정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제4장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조정·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조정과 정책협의를 위해,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위원 구성 시에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5장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 라고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되는 교육·훈련·국내외 연수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7.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운영
9.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교부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본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마을공동체 정책(2012년), 협치 정책(2016년) 추진 등을 통해 시민 또는 시민사회가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고 공익 활동을 하는 영역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서울시의 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나. 최근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시·도 계획 수립’,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다. 또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역별 NPO지원센터,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라. 이러한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제4조).
-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기본계획, 시행계획 의무를 신설함(제7조부터 8조까지 신설).
- 라.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비영리일자리 지원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제10조).
- 마.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제11조).
- 바.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근거를 신설함(제12조).
- 사.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
- 아. 권역별NPO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20조).
- 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입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693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자”를 “사람”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이용자의 이용금지 사항의 범위를 변경함(제6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694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학생들” 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학(교)” 을 “대학교 및 대학원” 으로 하고, “2년” 을 “5년”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학생 학자금대출” 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현행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제1조, 제2조 및 제3조).
- 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이 졸업 후 최대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함(제2조제3호).

◆ 서울특별시 조례 제7695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를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며, 제2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하고, 제5항 중 “5인”을 “2분의 1”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을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중 “청년의 부채경감 등”을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 한다.” 를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 · 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 · 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

제20조 제목 “청년허브의 설치·운영” 을 “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으로 하고 제1항 중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 를” 을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로 하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 · 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 · 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 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 · 교육 · 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 · 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단체 또는 기관” 을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범위를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제3조제1호).
- 나. ‘청년기업’의 정의를 명시함(제3조제4호 신설).
- 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 라.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하고 참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제3항).
- 마.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은 의무적으로 청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함(제11조제4항 신설).
- 바. 청년교육체계 마련 및 시행을 위하여 청년교육 관련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1조제5항 신설).
- 사. 청년의 부채경감에 관한 사항을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제14조제1항).
- 아.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8조제1항).
- 자.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내에 포함사항을 규정함(제18조제2항 신설).
- 차. ‘청년허브’에 관한 사항을 ‘청년지원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규정함(제20조제1항).
- 카. ‘청년지원기관’의 기능을 규정함(제20조제2항, 제3항, 제4항).
- 타. ‘청년지원기관’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0조제5항).
- 파.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0조제6항).
- 하. ‘청년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3조제1항).

◆ **서울특별시 조례 제7696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함(제5조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 조례 제7697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 ②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 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건의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청년참여기구는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③ 청년참여기구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 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5조(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사업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 제3조 1호를 따르며 “청년참여”, “청년참여기구”, “청년자율예산” 등의 용어를 정의함(제3조).

나.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다. 청년 참여자문회의를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할 수 있게 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69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자매결연” 을 “상호결연” 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자매결연” 을 “상호결연”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매결연’ 을 ‘상호결연’ 으로 함(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699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를 “추천한”으로,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로, “조사한 후”를 “조사하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관련 자구 등을 정비해 표창 제도와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변경(제11조제1항제1호).

나.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를 명확하게 구분(제11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00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위원의 임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 에서 ‘1년’ 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원 및 예산재정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01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정책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활용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물과 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운영을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 정리하고, 의회의 학술연구용역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이 의회사무처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활동을 권장하며, 연구용역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함(제3조).

나. 의회의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4조).

다. 의장이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 등을 규정함(제5조).

라. 연구용역 과제 제출처를 입법담당관으로 함(제6조).

마. 연구용역 관리 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10조).

바. 연구용역 과제의 제안 및 선정, 공모, 평가위원회, 관리, 평가 등 제반 절차 등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서울특별시 조례 제7702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항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 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성희롱 금지)” 를 “(성희롱 금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 를 “자문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상 제18조(성희롱 금지) 조항에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 정비(제14조).

나. 의장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제18조제2항 신설).

다. 의장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제19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03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지정.

2. 주요내용

시장 권위로 인해 부단체장이 시장 권한 대행 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함 (제33조제1항제1호 바목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704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 을 “재단,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을” 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2020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 업무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의 직무로 추가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6.4.공포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로 스페이스살림을 규정함(제8조).

나.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이내로 규정함(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05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을 “또는”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여성플라자의 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1. 기본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국제회의장 (전체)	360,000원 ~ 500,000원	1. 1회 단가로서, 1회란 오전(10:00 ~ 14:00), 오후(14:00 ~ 18:00), 야간(18:00~22:00) 중의 하나임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아트홀	280,000원 ~ 400,000원	
회의실	5,000원 ~ 50,000원	1. 시간당 단가이며, 회의실의 경우 전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3.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 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0,000원 ~ 30,000원	
시청각실	20,000원 ~ 40,000원	
강의실	5,000원 ~ 3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이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

2. 체육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시설이용	금 액	
수 영	1개월	40,000원 ~ 80,000원	
헬 스	1개월	40,000원 ~ 80,000원	
에어로빅	1개월	40,000원 ~ 60,000원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여성관련시설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의 부과·징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울여성플라자의 연수시설이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수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설 이용자를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제18조제1항).
- 나. 서울여성플라자의 숙박(연수)시설 이용감면 사항 및 이용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제19조 제1항 및 별표 6).

◆ 서울특별시조례 제7706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표개발”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중 “업무수행 상”을 “업무수행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상위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01호, 2020. 4. 7. 일부개정)]과 그 밖의 인용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과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옮겨 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과 인용법률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함(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5호).
- 나. ‘지표개발’ 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로 수정하여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라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제2조제1호).
- 다. ‘서울특별시장’ 의 약칭(시장)을 옮겨 규정함(제3조제1항).
- 라. 제8조제5항 후단의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제8조 제6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70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에” 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함에 따라 인권증진 대상으로 등록 장애인 외에 미등록 장애인도 포괄하여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증진 대상 장애인을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호).

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9조의3제2항).

※ 소관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조례 제770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함(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09호****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중 “과태료” 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징수” 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11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0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과 ‘그린 뉴딜’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추진 중임. 특히, 디지털 뉴딜 추진과제 중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등의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반개념인 ‘지능형교통체계’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서울시 정책의 적극 추진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정책이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하여 미래산업과 행정 혁신을 선도하고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능형교통체계’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7호).
 나.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3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1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신규 마을버스로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기준을 신설함(제10조제7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2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 를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 ‘주부’, ‘학생’ 등으로 특정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인권향상 측면에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의 정의를 개정함(제2조제5호라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3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고발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비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9.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최근 플랫폼 기반 택시산업 환경의 변화와 ICT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 차고지 밖 교대근무 등을 실증특례로 지정(' 20.7.27.) 관리하는 등 택시산업의 제도변화를 반영하는 현행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택시업체 노사 간 갈등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택시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에 대한 정의 삭제(제2조).

나. 포상금지급대상 중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와 별표 위반행위중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삭제(제3조, 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이용요금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1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5호****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차로변경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고처리 요구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체된 일이 있었음. 이후 응급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
- 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 이에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긴급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을 더욱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을 신설함(제5조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6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목 중 “부과·징수” 를 “부과·징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징수” 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30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7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현행 서울시 공영차고지 31개소 중 20개 차고지가 건설이 아닌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조항과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설치”를 “설치·매입” 개정하여 서울시 운영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차고지 정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변경함(제2조 및 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8호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과태료)” 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제11조 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719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목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9조의2 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0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유모차” 를 “유아차”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유모차’ 를 ‘유아차’ 로 함(제2조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1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소외계층” 을 “문화취약계층”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임.

나.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음. 이에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 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수정함(제6조의2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2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부과징수” 를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12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3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함(제4조).
- 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4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심의” 를 “자문 또는 심의” 로 한다.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 을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8조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0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를 “(위원의 해촉)”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 중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또는” 을 “작가 또는”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미술작품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3. 건축물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

제1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미술작품의 안전성
6. 유지관리의 적정성
7.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전까지” 를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0명” 을 “30명” 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시민위원 선정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제21조제4항 중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2조 제목 “(규정의 준용)” 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 으로 한다.

제22조 제목외의 부분 중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운영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제22조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공공미술위원회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통일하며, 미술작품 설치대상의 면적을
확정한 후 심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함(제8조).
- 나. 미술작품설치계획서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제19조).
- 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일반시민을 위촉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 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5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목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과·징수 하는”을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73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6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함(제4조제3항 신설).

나. 관람의 제한규정을 변경함(제7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7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설립·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 문화시설로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가. 국공립 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나. 또한 지역 문화시설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운영을 위한 필요시책 마련 규정(제3조제2항).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규정(제3조제3항).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8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과태료)” 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과·징수” 를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34조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29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과·징수하는” 을 “부과·징수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자치 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제 10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0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대기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기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시·도 조례”를 “시·도 조례 또는 시·군의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기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저공해엔진 개조·교체”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무인단속시스템”을 “단속시스템(차량에 장착된 단속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를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단속시스템”을 “단속시스템”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부과징수 및 감면”을 “부과징수, 감면 및 이의제기”로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을 조정하고 같은 날 여러 운행제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며, 시민의 구제권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함(제3조의2 신설).

나. 조례와 타 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혹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정한 각각의 운행제한 조치를 동일한 날 위반한 자동차가 타 법령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본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제4항 신설).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제5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1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을 “에너지취약계층”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을 “에너지취약계층” 으로 함(제8조제2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2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7.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교육홍보, 연구개발, 국내외 협력,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10.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11.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지원 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다양한 에너지사업 환경변화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또한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의 옥내 노후배관 교체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에너지 분야 사업추진 시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열거된 조문을 새로운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맞춰 용어를 변경함.
- 나. 태양광, 수소 등 에너지 간 융·복합 등의 신사업 분야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공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정 사업 항목을 신설함.
- 다. 노후 사용자 시설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3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과·징수” 를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4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표창)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과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법과 특별위원회를 제정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들 또한 과거에 비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나.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온라인 및 SNS상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및 폄하 등이 나타나는 등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다. 이에,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와 정신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그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5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산하 집행기관”을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를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를행정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제3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4조 조제목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을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투자기관”을 “제2조제1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를 “공개주기·시기·방법”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

제7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서울특별시 정보

공개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집행기관의 장”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⑧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장은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자체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전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및 제3호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2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나. 공개대상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현행화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함(제5조).

(1) 행정정보 공표대상 항목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을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을 신설함.

(2) 규칙에서 담당부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 때마다 실제 공표 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서 담당부서는 제외함.

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제7조 및 제7조의2, 제7조의3).

(1) 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함(제7조).

(2)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마.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함(제11조).

바. 종전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6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함(제4조, 제8조 및 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7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청소년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제6조제1항제2호).

- ‘이용료의 감면’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청소년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8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제한 규정의 범위 변경(제6조).

-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제1호 문구 개정, 제3호 및 제4호 각각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7739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수립을 규정함(제5조).
-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제6조).
- 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40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 을 “청소년”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 을 ‘청소년’ 으로 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41호****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혁신기술(「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서 일상생활권, 도심 근교지처럼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일상적인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기능을 담당함.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시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방식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추진사항을 신설함(제8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742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220명” 을 “245명”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한 서울시의 경기력 유지·강화를 위해 경기부의 창단 확대 필요성 대두, 이에 실업팀 부재에 따라 매년 전국체전에 미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창단요청 수요를 해소하고 동·하계종목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동계종목 창단수요 해소 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기인 정원을 220명에서 245명으로 확대(제3조제4항).

－ (현행) 비장애인 175명, 장애인 45명

⇒ (확대) 비장애인 200명(증 25명), 장애인 45명(변동없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7743호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한다.

제2조 중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한다.

제4조 중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함(제1조, 제2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44호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환경을 보호하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3.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한 단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별 핵심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의 실시
 5.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초·중·고, 대학, 실업팀, 장애인 등 선수의 유형과 선수·체육지도자 등 교육 대상에게 특화된 교육 체계(정서적·심리적 안정 지원을 포함한다)를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 체계에 따른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인권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게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 나.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제4조).
- 다. 체육인 인권 교육(제5조).
- 라. 인권위원회 심의(제6조).
- 마.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45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특히 2020년 1월 29일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둘 수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함(제5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 조례 제7746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가격리 장애인 지원) ①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또는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코로나 감염병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외 입국자 등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자가격리자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감염병에 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이에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제2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747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함(제8조제2항)

나. 이용자의 행위 및 이용의 제한규정의 범위를 변경함(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48호**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⑤ 시장등은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준공표지판과 별도 설치
2. 준공표지판에 혼합하여 설치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해당 공공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하고, 표지판의 규격·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도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 건립시 설계자의 의도를 설명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공건축의 설계의도 구현을 도모하고, 서울시 정책의 정확한 의도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정책 구현의 신뢰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건립시 설계의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도록 함(제9조제5항 신설).
- 나. 설계의도 표지판은 설계자가 디자인을 하되, 규격·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6항 신설).

◆ 서울특별시 조례 제774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장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제57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지원
 2.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 발굴, 시행 및 관리·운영 등 지원
 5. 도시재생사업 지역 관련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562호, 2019.8.27.)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및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 나.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시책발굴, 제도발전,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사업시행·관리,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개의 지원기구를 운영 중으로,
- 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기관의 범위를 다양한 전문분야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수행 업무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지원,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제8조제1항).
- 나.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을 현행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확대함(제8조제2항).
- 다. 효과적인 도시재생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제8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1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60% 이상으로서”를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의제 처리되는 대상지역(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나. 그러나, ‘골목길재생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 등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친 지역에서 조차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해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행정 절차 중복에 따른 행정낭비와 집수리사업 시행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 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나아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해서도 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보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 또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대한 노후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노후도 기준을 명확히 함(제6조제1항).
- 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함(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로서” 를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각각 “해당 위원회” 를 “시도시계획 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으로 한다.

제3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으로 한다.

제69조 제목 중 “징수절차” 를 “징수절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징수절차” 를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심의를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가 수행토록 하며,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대상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등을 추가하고, 과태료의 이의제기 절차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권장업종 관련 시설과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 따른 상가를 추가함(제19조제2항).
-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층수를 완화하거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외의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시 층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 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로 함(제28조제1항).
- 다.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추가하되, 이 경우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39조제2항).
- 라. 자연경관지구에서 높이 5층 이하(20m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추가하되, 재건축사업구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은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39조제7항).
- 마. 과태료의 이의제기 절차를 추가함(제6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3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차양면의 측면”을 “차양면”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현수식”을 “매다는 방식”으로 한다.

2.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호라목”을 “영 제17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정보안내판”을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 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

제27조제3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제2조제2항제8호).
- 나.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구분(제4조제1항).
- 다. 입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를 정함(제9조의2제1항).
- 라.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0조제1항).
- 마.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에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0조제1항).
- 바. 가로등에 설치하는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제11조제5항).
- 사.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 정비(제2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4호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다소 모호했던 해임 또는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5호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을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을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으로 함(제10조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6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사업

제44조의 제목 중 “과태료”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의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현물출자 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공영주차장(도시계획시설)’의 운영(위탁포함)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44조의 제목과 본문을 각각 ‘과태료 부과·징수 등’과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로 하여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사의 목적사업 범위에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사업을 포함함(제21조제1항제20호 신설).
- 나. 제44조의 제목과 조문에 과태료 부과 징수 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제4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7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 을 “범죄취약지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 을 “범죄취약지역” 으로 함(제8조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8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중 “건축사사무소로서 영 제19조의2제2항 본문의 건축사로 한다.”
을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건축사로
부터” 를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 로, “건축사” 를 “공사감리자” 로, “건
축사” 를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업무정지 처
분” 을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 「건설기술 진흥
법」 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으로 하며, 제3항 본문 중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에” 로, “「건축사법」” 을 “「건축
사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업무정지 처분” 을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건축사” 를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고, 제4항
본문 중 “건축사” 를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업무
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을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으로 하며,
제5항제2호의 본문을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건축사자격을 반납
한 자” 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한다.

제23조(실내건축)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
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용자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4항 본문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를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대상·주기 설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개정 및 건축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기존 ‘건축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제18조의2).
- 나. 건축법 유지관리조항(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삭제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조문정비(제23조, 제50조제1항 및 3항).
- 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 대상과 주기를 규정(제23조).
- 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이 기존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과태료’까지 확대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제5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9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동한 경력에 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을 추가하여 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위원에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을 추가함(제14조의2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7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 부분 중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을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25명”을 “2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는 폭넓은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해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제3조).

나.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3조).

다.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29명으로 변경함(제2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761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상 또는 노점” 을 “거리가게”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모차” 를 “유아차”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상 또는 노점’ 을 ‘거리가게’ 로 함(제13조제2항제1호).

나. ‘유모차’ 를 ‘유아차’ 로 함(제13조제2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62호**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에 관한 사항
9.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산업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3. 물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대학·연구소 및 기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물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안전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심의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시범사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성과평가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기업 창업·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업이나 사람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 등을 물산업 기술의 실증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우수한 기술을 선정·평가하기 위한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집적단지”라 한다)를 조성 및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산업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도시재생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 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2.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물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홍보활동 지원
2. 해외 친선도시 연결사업
3. 물 관련 국제행사 지원
4. 기술 및 인력 국제교류 지원
5. 해외진출 관련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적극행정의 면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세계 물산업은 물수요의 증가로 연 4.2%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다수의 국내 물기업은 기술력 확보와 역량강화에 필요한 연구시설 등이 없기에 우리시 물관련 기반시설, 대학,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육성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기업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5조).
- 나.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사안별 심의·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제10조까지).
- 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하여 자체 시범사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라. 물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을 선정하여 기업의 창업·육성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 마. 물산업 기술개발, 상용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 바.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사.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아. 물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지역 물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위한 홍보, 행사,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 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제18조).

◆ 서울특별시 조례 제7763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
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3조의3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764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수도사용자들 대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분할납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분할납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누수, 미납 사유로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765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 을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행상 또는 노점” 을 “거리가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제2호).
- 나.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함(제14조제7항 신설).
- 다. ‘행상 또는 노점’ 을 ‘거리가게’ 로 함(제17조제1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66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하고,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제4호,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같은 항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의 금지사항을 변경함(제6조제2호).

나.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그 관람을 취소 시 관람료를 반환하도록 함(제8조제6항 신설).

다. 무료관람의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확대함(제9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767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료 제출 지연·누락에 따른 감사의 비효율성과 단순 사실확인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결산검사위원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의 열람 등 접근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3호

청량리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0호(2010.11.25)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3호(2011.01.13.)로 정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청량리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B	19	청량리동	435	2.9	210	-	50	3	재개발	전면	
변경	B	19	청량리동	435	2.8	210	-	50	3	재개발	전면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 면적 감소 - 2.9ha → 2.8ha (감: 0.1ha)	· 청량리동 359번지의 제척으로 인한 정비구역 변경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9,314.29	감) 317.70	28,996.59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정비구역	· 면적 감소 - 29,314.29㎡ → 28,996.59㎡ (감: 317.70㎡)	· 청량리동 359번지의 제척으로 인한 정비구역 변경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9,314.29	감) 317.70	28,996.59	100.00	—
정비기반시설	소계	4,413.28	증) 54.93	4,468.21		—
	도로	2,313.36	증) 54.93	2,368.29	8.08	—
	공원	2,099.92	—	2,099.92	7.17	—
택지	소계	24,901.01	감) 372.63	24,528.38	84.75	
	택지1	23,572.26	감) 372.63	23,199.63	80.2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263.40	—	263.40	0.90	독서실
	택지3	806.68	—	806.68	2.75	KT대토부지
	택지4	258.67	—	258.67	0.88	KT대토부지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9,314.29	감) 317.70	28,996.59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9,314.29	감) 317.70	28,996.59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용도지역 면적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감소 29,314.29㎡→28,996.59㎡ (감: 317.70㎡)	· 청량리동 359번지의 제척으로 인한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 지역) 면적 감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중점		
기정	대로	3	9	25~30	보조 간선	일반 도로	1,600 (175)	제기동	청량리동	건고시177 62.12.8	
기정	중로	1	223	20~2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00 (77)	청량리동272	청량리동 205-719	-	
변경	중로	1	223	20~2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00 (77)	청량리동272	청량리동 205-719	-	구역내 B=1m확폭
기정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00 (150)	청량리동341	청량리동 214	시고 78-235 78.05.25	
변경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00 (150)	청량리동341	청량리동 214	시고78-235 78.05.25	남측 가각부 조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	청량리동215 -33	청량리동 213	시고95-98 95.04.11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6	청량리동447 -20	청량리동 442-1	시고95-98 95.04.11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2	청량리동 442-4	청량리동 442-17	서고시3012 10.11.25	

※ ()안의 수치는 구역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223	· 구역내 B = 1m 확폭	·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소공원변 인도 확보)을 반영하기 위한 구역내 도로 확폭
소로 1-	· 도로 남측 가각부 조정 - 도로모통이의 길이 15m 확보	· 도로모통이의 길이 확보를 위한 소로1류(홍릉로8길) 가각부 조정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공 원	소공원	청량리동 445-35번지 일대	2,099.92	-	2,099.92	서고시3012 2010.11.25	위치 이동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 원	· 정비기반시설 공원 위치 변경 (동측으로 약 1m 이동)	·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소공원변 인도 확보)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기반 시설 공원 위치 변경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계획(㎡, 개소)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리사무실	130.56	증) 69.44	200.00	—
경비실	27.00	감) 7.00	20.00	—
경로당	201.90	증) 24.02	225.92	—
어린이 놀이터	1,370.00	감) 220.00	1,150.00	—
어린이집	180.00 (42인)	증) 203.12	383.12	—
주민운동시설	1,042.75	감) 1,042.75	—	—
작은 도서관	30.00	증) 260.00	290.00	—
휴게시설	2개소	감) 2개소	—	—
주민공동시설	188.88	증) 711.12	900.00	—
근린생활시설	1,710.22	감) 780.22	930.00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동이용시설	· 공동이용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등	· 건축배치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9,314.29	189	—	—	189	—	—
변경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9,314.29	188	—	—	188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정비·개량 계획 변경 - 철거후 신축 동수 변경 (189동 → 188동, 감: 1동)	· 청량리동 359번지의 제척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 동수 변경

8. 건축시설계획(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택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9,314.29	택지1	23,572.26	청량리동 425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 이하	247% 이하	72m이하 (24층이하)
			택지2	263.40	청량리동 399	독서실	50% 이하	247% 이하	관계법규에 의함
			택지3	806.68	청량리동 377 일대	KT대토부지			
			택지4	258.67	청량리동 444-1 일대	KT대토부지			
변경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8,996.59	택지1	23,199.63	청량리동 425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50% 이하	247% 이하	72m이하 (24층이하)
			택지2	263.40	청량리동 399	독서실	50% 이하	247% 이하	관계법규에 의함
			택지3	806.68	청량리동 377 일대	KT대토부지			
			택지4	258.67	청량리동 444-1 일대	KT대토부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총세대수 : 576세대(100%) - 주택건설 85㎡ 이하 : 492세대 (85.42%) 85㎡ 초과 : 84세대 (14.58%) - 임대주택 100세대 (전체세대수의 17.36%) 40㎡ 이하 : 40세대 (임대주택의 40.00%) 40~50㎡ 이하 : 40세대 (임대주택의 40.00%) 50~60㎡ 이하 : 20세대 (임대주택의 20.00%)						
		변경	◦ 총세대수 : 610세대(100%) - 주택건설 85㎡ 이하 : 562세대 (92.13%) 85㎡ 초과 : 48세대 (7.87%) - 임대주택 159세대 (전체세대수의 26.07%) 40㎡ 이하 : 36세대 (임대주택의 22.64%) 40~50㎡ 이하 : 83세대 (임대주택의 52.20%) 50~60㎡ 이하 : 40세대 (임대주택의 25.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홍릉로변, 제기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4m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 택지1 면적 변경 - 23,572.26㎡→23,199.63㎡ (감: 372.63㎡) · 택지1 건폐율 변경 - 16%이하→17.50%이하 (증: 1.50%)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를 변경	·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소공원변 인도 확보) 반영 및 청량리동 359번지의 제척에 따른 택지면적 변경 · 효율적인 건축배치 계획을 위한 건폐율 상향 ·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한 기준용적률 상향 및 60㎡이하 소형주택 추가 확보, 임대주택 기부채납에 따른 세대수 계획 변경

■ 용적률 계획(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공공시설부담계획	●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요건					
	용도지역		최소부담기준		순부담면적	비고
	변경	구 분	비 율	면 적(㎡)		
	제2종(7층)→제3종	용도지역 변경 (2단계 상향)	20%이상	10,521.23㎡×20% = 2,104.25㎡이상	3,454.99㎡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29,314.29㎡	24,901.01㎡	4,413.28㎡		958.29㎡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413.28㎡ - 958.29㎡ = 3,454.99㎡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10% +(210%×1.3×0.13874) = 247.87% (정비계획 용적률 247%이하)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454.99 / 24,901.01 = 0.13874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공공시설 부담계획	●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요건									
	용도지역				최소부담기준				순부담면적	비고
	변 경		구 분		비율		면 적(㎡)			
	제2종(7층)→제3종		용도지역 변경 (2단계 상향)		15%이상		10,521.23㎡×15% = 1,578.19㎡이상		1,904.82㎡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	소계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 정비기반 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토지(지분)			환산부지면적			
				도로	공원	임대주택	독서실	임대주택		
	28,996.59㎡	24,528.38㎡	7,145.64㎡	2,368.29㎡	2,099.92㎡	1,450.91㎡	393.48㎡	833.04㎡	365.44㎡	4,875.3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7,145.64㎡ - 365.44㎡ - 4,875.38㎡ = 1,904.82㎡ (구역 면적 대비 6.57%)									
토지 기부채납	● 토지 기부채납 : 5,919.12㎡ - 도로(2,368.29㎡) + 공원(2,099.92㎡) + 기부채납 임대주택 토지지분(1,450.91㎡)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 임대주택 59형(13세대)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1,069,154,125원 ÷ 4,508,000원 = 237.16㎡(환산부지면적) - 건축비 : 1,037,500원/㎡ - 설치비용 : 1,069,154,125원 (건축비 1,037,500원/㎡ × 건축연면적 1,030.51㎡) - 부지가액 : 4,508,000원									
	● 임대주택 44형(42세대)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2,686,247,340원 ÷ 4,508,000원 = 595.88㎡(환산부지면적) - 건축비 : 1,069,000원/㎡ - 설치비용 : 2,686,247,340원 (건축비 1,069,000원/㎡ × 건축연면적 2,512.86㎡) - 부지가액 : 4,508,000원									
	● 독서실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1,773,850,000원 ÷ 4,508,000원 = 393.48㎡(환산부지면적) - 건축비 : 2,729,000원/㎡ - 설치비용 : 1,773,850,000원 (건축비 2,729,000원/㎡ × 건축연면적 650.00㎡) - 부지가액 : 4,508,000원									
	※ 임대주택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9호, `16.06.07)」상의 표준건축비 적용 ※ 독서실 건축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17)」상의 표준건축비 적용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산정에서, 부지가액 가중치 산정 시 참고 가능한 인근 유사 토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 가능 사례가 없는 경우 부지가액 가중치 2배 적용 → 2019년 개 별공시지가 2,254,000원/㎡의 2배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 용적률 완화 210% → 230%이하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토지] + 0.7 × α [건축물]) = 230% × (1 + 1.3 × 1.0 × 0.029392303 + 0.7 × 0.053147940) = 247.34% (정비계획 용적률 247%이하)									
	α[토지] = 공공시설제공면적(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토지) 후 대지면적 = (2,368.29㎡+2,099.92㎡+1,450.91㎡-365.44㎡-4,875.38㎡) ÷ {28,996.59㎡-(2,368.29㎡+2,099.92㎡+1,450.91㎡)} = 0.029392303 α[건축물] = 환산부지면적(건축물) ÷ 공공시설부지 제공(토지) 후 대지면적 = (393.48㎡+833.04㎡) ÷ {28,996.59㎡-(2,368.29㎡+2,099.92㎡+1,450.91㎡)} = 0.053147940									

구 분	산 정 내 용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세대수 산정	1) 상향되는 기준용적률 20%는 주택규모를 60㎡ 이하로 건설 ① 용적률 20%에 해당하는 연면적 : 23,199.63㎡ × 20% = 4,639.926㎡ ②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면적(계획 연면적) = 4,676.93㎡ (59㎡, 59세대 산정시 소형주택 공급면적) > 4,639.926㎡ 2)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계획				
	규 모	계	60㎡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기정	576세대(100%)	184세대(31.95%)	308세대(53.47%)	84세대(14.58%)
	변경	계	610세대(100%)	305세대(50.00%)	257세대(42.13%)
		기준용적률 상향 (59㎡기준)	59세대	59세대	-
		전용면적 축소 등에 따른 확보	551세대	246세대	48세대
		증/감	증) 34세대	감) 51세대	감) 36세대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기정

건립위치	세대수	세대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100 (의무 조성)	소 계	100	100.00	총 건립세대수 17% 이상 적용 17.36%
		40㎡이하	40	40.00	
		40~50㎡ 이하	40	40.00	
		50~60㎡ 이하	20	20.00	

· 변경

건립위치	세대수	세대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104 (의무 조성)	소 계	104	100.00	총 건립세대수 17% 이상 적용 17.05%
		40㎡이하	36	34.62	
		40~50㎡ 이하	41	39.42	
		50~60㎡ 이하	27	25.96	
	55 (기부채납)	소 계	55	100.00	전용면적 44㎡, 59㎡
		40~50㎡ 이하	42	76.36	
		50~60㎡ 이하	13	23.64	

■ 임대주택 건설 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임대주택 건설계획	· 임대주택(의무조성) 세대수 증가 - 100세대 → 104세대 (증: 4세대) · 임대주택(기부채납) 확보 - 55세대	· 총 건립세대수 비율(17% 이상)에 따른 세대수 증가 · 기부채납 계획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기부채납) 확보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로서 대상지 주변 녹지, 공원과의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단지내부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 유도	-
환경보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저감방안 강구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하여 홍수, 수물 등에 대한 방재 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교육환경 보존에 관한 계획	공사시 공사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처리	-

■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행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면적률	공동주택 30% 이상	○	· 생태면적률 30.13% 확보	·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반영,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와의 관계	○	· 녹지축에 변동 없음	· 단지내 녹지공간 조성, 오픈 스페이스 확보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 절·성토 발생 예상	· 지형변화 최소화 ·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지형변동 비율 30% 미만	○	· 지형변화 최소화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 보전	○	· 지하공간 터파기 작업 시 지하수 유출 예상	· 지하수 계측 및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 유지
	비오톱	4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건축물 높이제한, 통풍이 가능한 건축배치, Sky Line 등 고려(일조에 의한 사선제한)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른 국지적 풍향 및 통풍 변동 예상	·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건물 신축으로 에너지 사용증가 예상	· 청정연료(LNG) 사용 · 환경정화수종 식재
	경관	Skyline 보전	○	· 배후 능선 및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검토	· 건축물 배치 및 층고 설정에 반영
		조망권 확보	○	· 주변 지역에서의 시물레이션 실시	· 건축물 배치 및 층고 설정에 반영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 지상부에 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공원,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추가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 도로 계획	○	· 차 없는 외부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계획 검토	· 단지내 차 없는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지상에는 보행자만 통행 가능한 도로를 계획
	대기질		○	· 공사 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 예상	· 공사 시 자동차 세륜·세차시설, 살수 실시, 가설방진망, 속도제한 등 실시
	수질		○	· 운영 시 오수발생	· 기존의 주변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	· 공사 시 및 운영 시 건설 및 지정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 · 구 처리체계와 연계처리 또는 위탁 처리
	소음		○	· 공사 시 공사장비 소음 발생 · 운영 시 도로 교통소음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 준수 녹지공간 조성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기정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청량리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증) 358세대	해당없음
변경				증) 392세대	

■ 정비사업 시행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정비사업 시행계획	· 증가예상 세대수 변경 - 358세대 → 392세대 (증: 34세대)	·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에 따른 증가예상 세대수 변경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청량리 제8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9,314.29	감) 317.70	28,996.5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감소 - 29,314.29㎡ → 28,996.59㎡ (감: 317.70㎡)	· 청량리동 359번지의 제척으로 인한 정비구역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9,314.29	감) 317.70	28,996.59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9,314.29	감) 317.70	28,996.59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용도지역 면적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감소 29,314.29㎡→28,996.59㎡ (감: 317.70㎡)	· 청량리동 359번지의 제척으로 인한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 지역) 면적 감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중점		
기정	대로	3	9	25~30	보조 간선	일반 도로	1,600 (175)	제기동	청량리동	건고시177 62.12.8	-
기정	중로	1	223	20~2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00 (77)	청량리동272	청량리동 205-719	-	-
변경	중로	1	223	20~2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00 (77)	청량리동272	청량리동 205-719	-	구역내 B=1m확폭
기정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00 (150)	청량리동341	청량리동 214	시고 78-235 78.05.25	-
변경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00 (150)	청량리동341	청량리동 214	시고78-235 78.05.25	남측 가각부 조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	청량리동215 -33	청량리동 213	시고95-98 95.04.11	-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6	청량리동447 -20	청량리동 442-1	시고95-98 95.04.11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2	청량리동 442-4	청량리동 442-17	서고시3012 10.11.25	-

※ ()안의 수치는 구역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223	· 구역내 B = 1m 확폭	·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소공원변 인도 확보)을 반영하기 위한 구역내 도로 확폭
소로 1-	· 도로 남측 가각부 조정 - 도로모퉁이의 길이 15m 확보	· 도로모퉁이의 길이 확보를 위한 소로1류(홍릉로8길) 가각부 조정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공 원	소공원	청량리동 445-35번지 일대	2,099.92	-	2,099.92	서고시3012 2010.11.25	위치 이동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 원	· 정비기반시설 공원 위치 변경 (동측으로 약 1m 이동)	·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소공원변 인도 확보)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기반시설 공원 위치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1	23,572.26	감) 372.63	23,199.63	청량리동 42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263.40	—	263.40	청량리동 399번지 일대	독서실
택지3	806.68	—	806.68	청량리동 377번지 일대	KT대토부지
택지4	258.67	—	258.67	청량리동 444-1번지 일대	KT대토부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구 및 획지계획	· 택지1 면적 변경 - 23,572.26㎡→23,199.63㎡ (감: 372.63㎡)	·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소공원변 인도 확보)을 반영 청량리동 359번지 제척에 따른 택지 면적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

■ 건축물의 불허용도 계획(전층)

구 분	전 층	비 고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허용용도 계획(전층)

구 분	전 층	비 고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

2) 건축물의 밀도계획

■ 건축물의 건폐율 계획(변경)

구 분			전 층	비 고
기정	택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 이하	—
	택지2, 3, 4		· 50% 이하	—
변경	택지1		· 17.50% 이하	—
	택지2, 3, 4		· 50% 이하	—

■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기정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10%	· 247% 이하	—
변경		· 230%		·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

■ 건축물의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전 층	비 고
택지1	· 72m이하(24층이하)	—
택지2, 3, 4	· 관계법규에 따름	—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 치	· 공동주택 : 주변지역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하고 층고계획을 통한 자연스러운 개방감 확보 및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조망 차폐 최소화 고려하여 층수 조절 등 배치계획 수립 ·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이용이 용이토록 도로변 으로 배치하고, 보행동선과 연계 하여 적정위치에 배치 권장	—
형 태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평지붕을 권장하되,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 가능 · 옥상시설물(물탱크, 기계실 등)의 노출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벽은 자연환경요소와의 경합을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	—
색 채	· 건축물의 외장색채 중 주조색은 주변 경관에 부합하여 그 범위를 결정하고 강조색은 원색을 사용 가능하나,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계획 · 슈퍼그래픽을 사용할 경우 건축물의 기초색과 보조색을 활용하여 하단부에 사용할 것을 권장	—
건축선	· 홍릉로변, 제기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4m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옥상녹화	·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2007.2.7.)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 준수	—
생태면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준수	—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그러지 않은 사항은 기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2008.3)」 권장	—
빛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빛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빛물저수조 설치지침」 준수	—
신·재생에너지 시설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03.23.)」에 따라 시설 설치하도록 권장	—
야간경관 조명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소원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하도록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하도록 권장	—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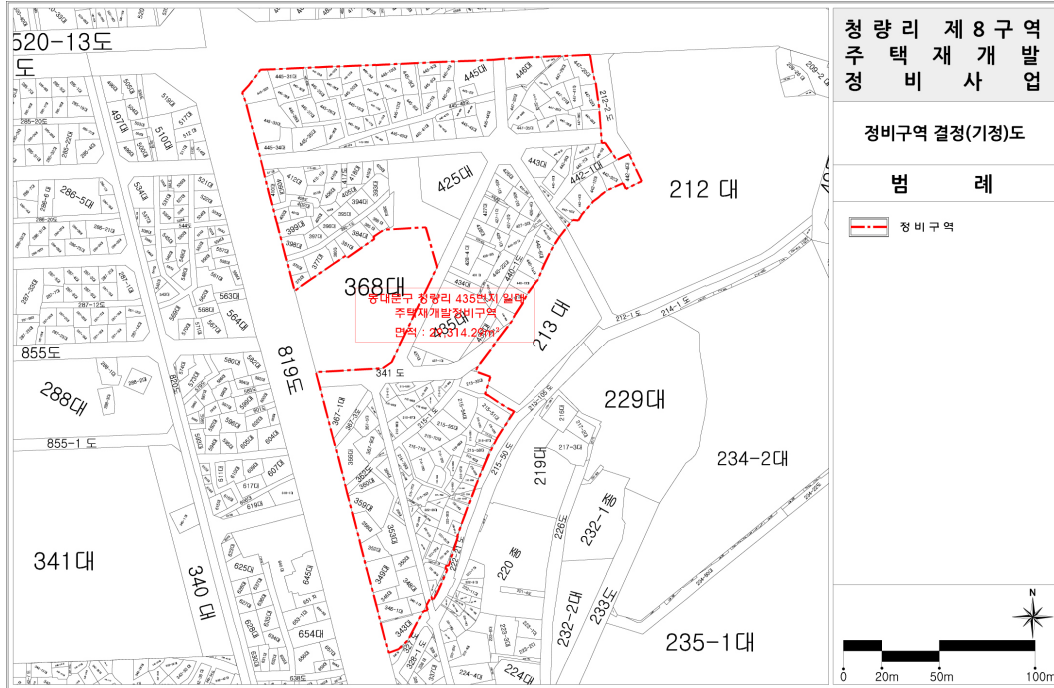
IV.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8),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67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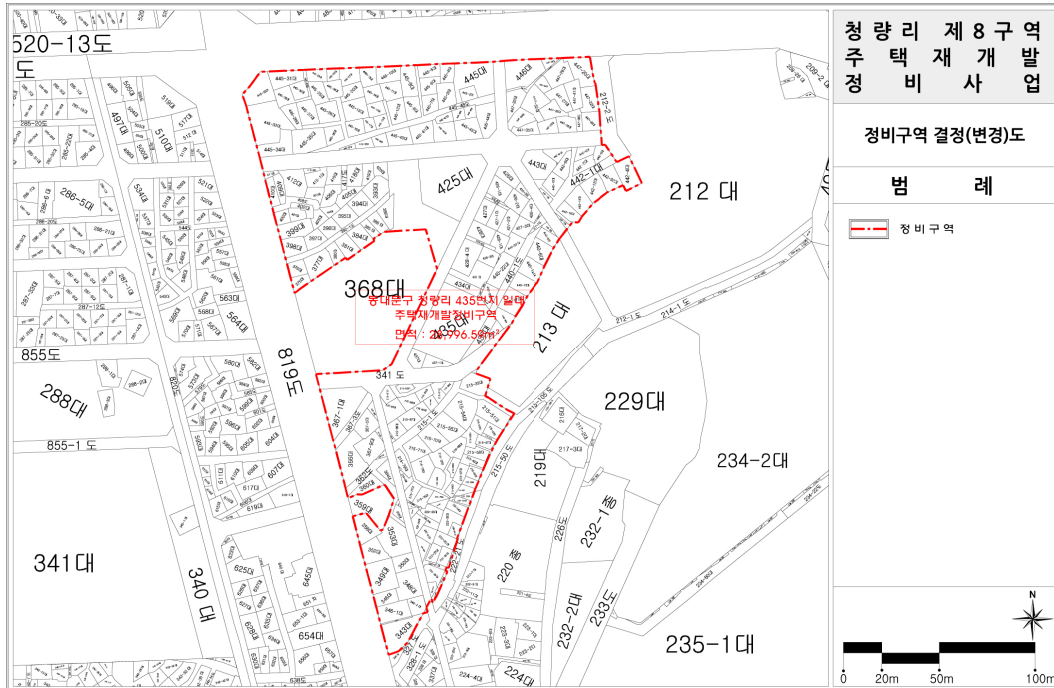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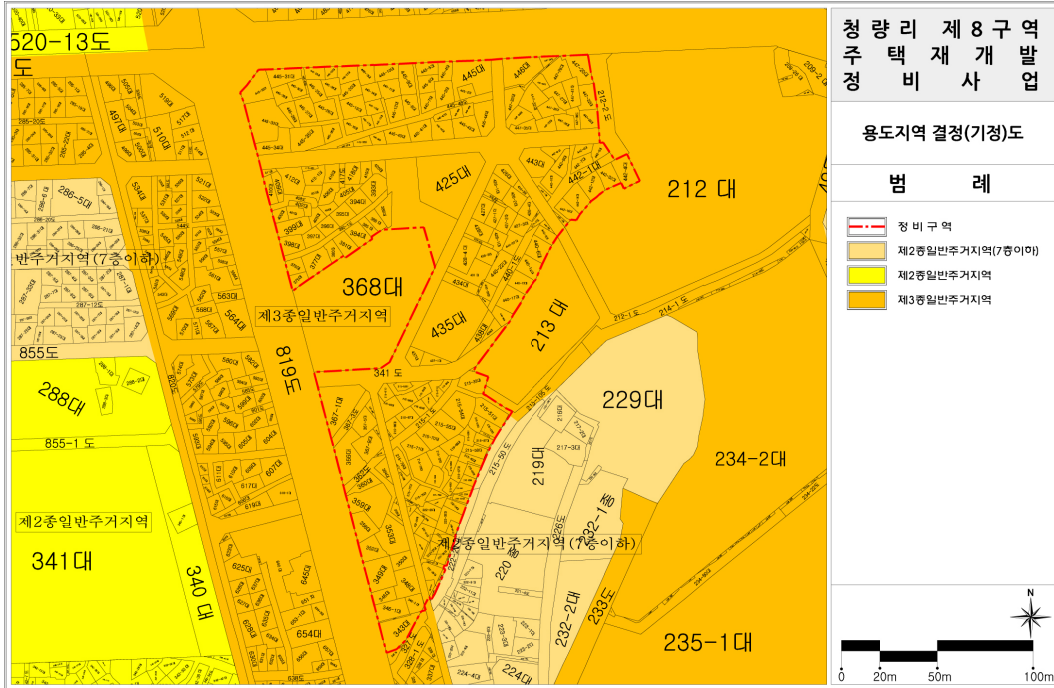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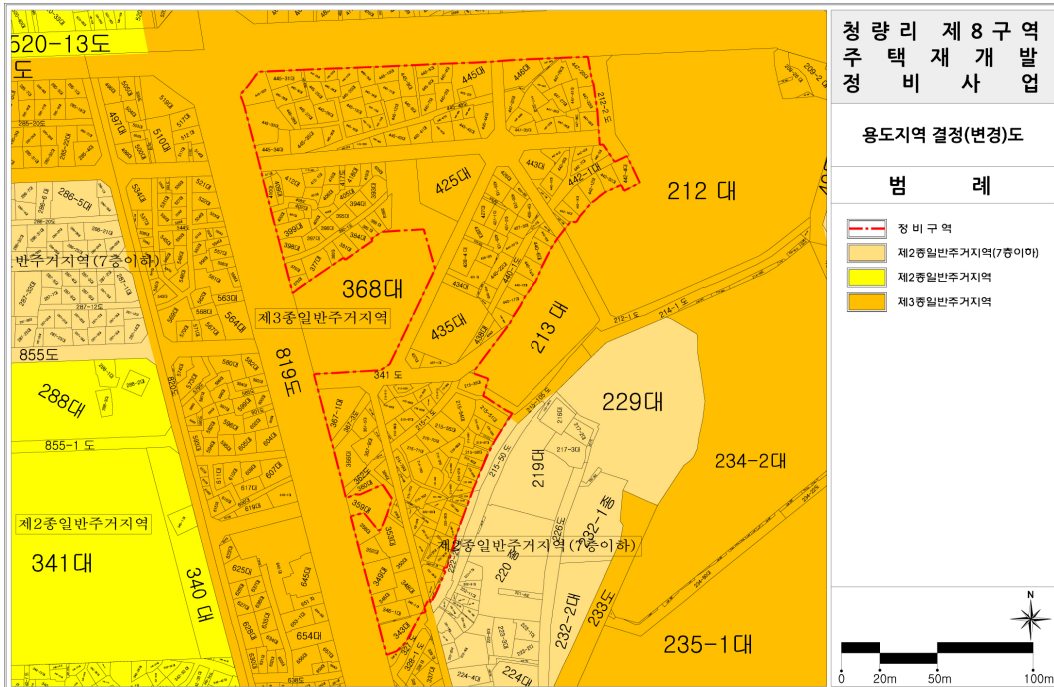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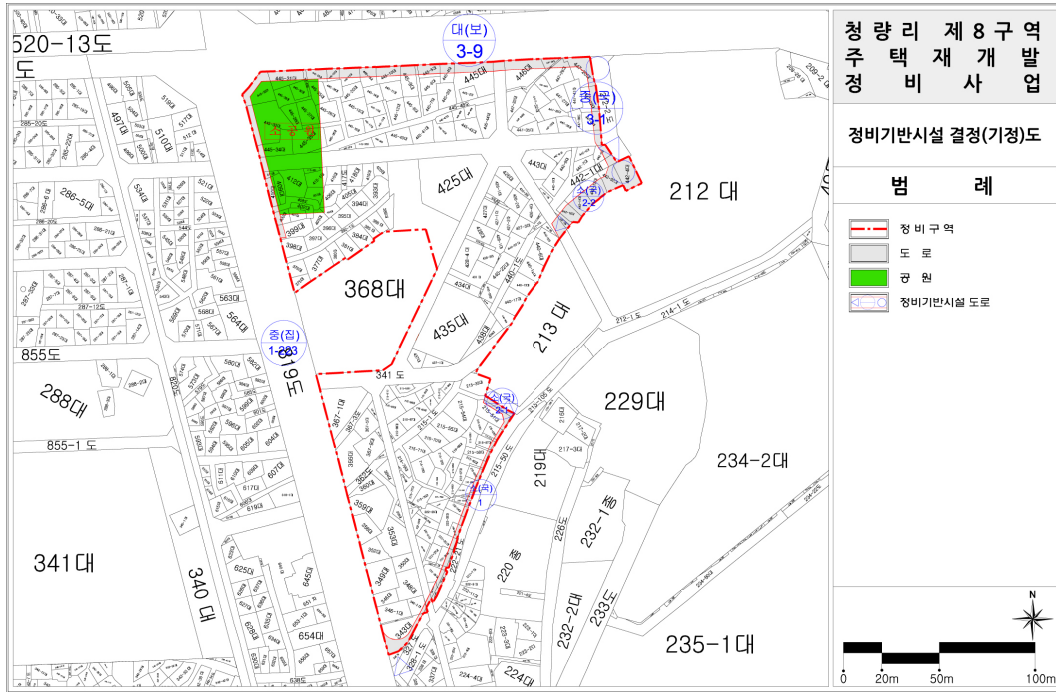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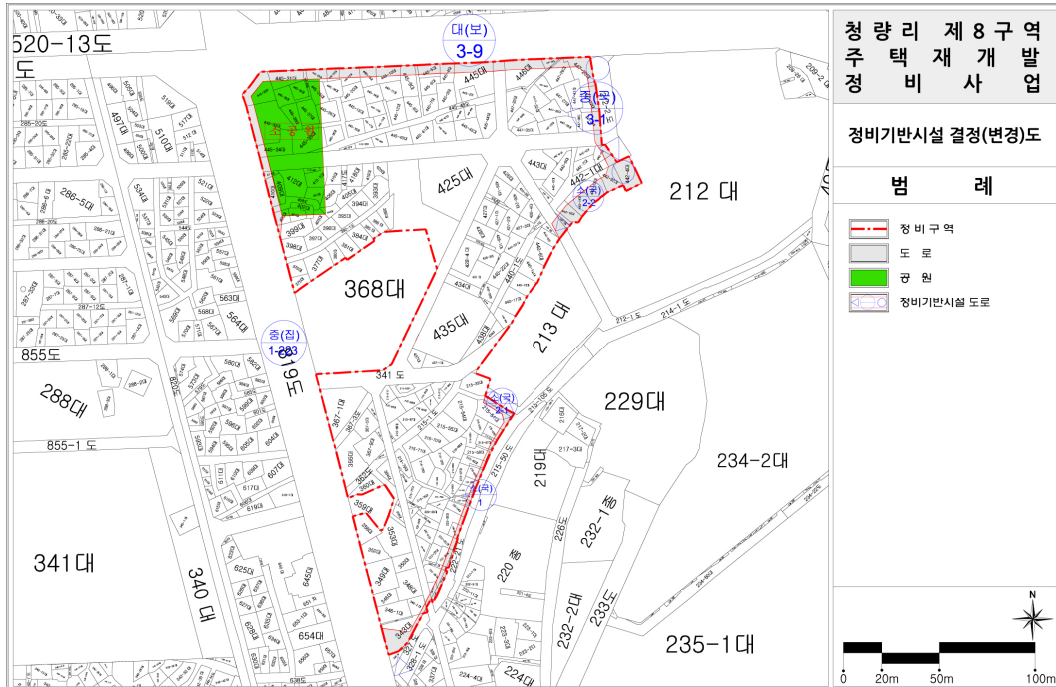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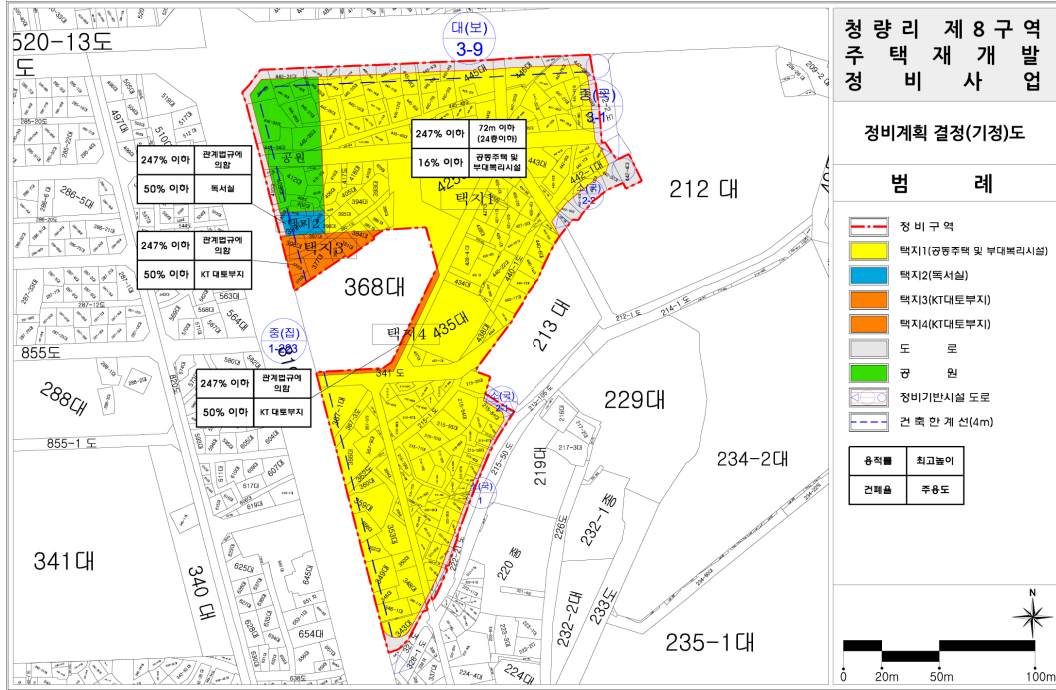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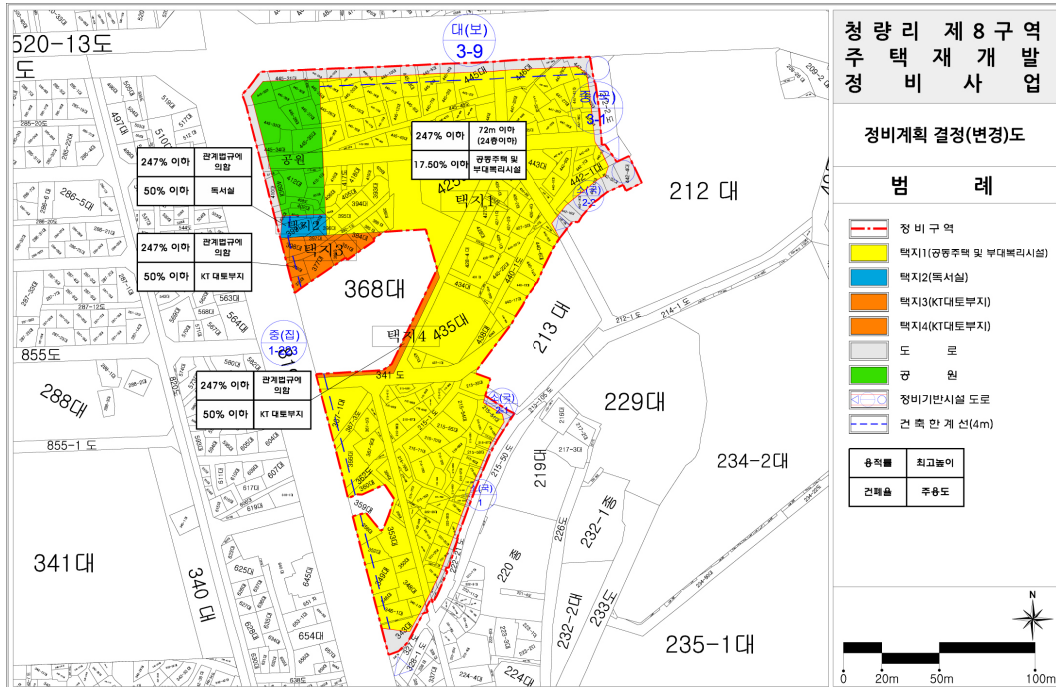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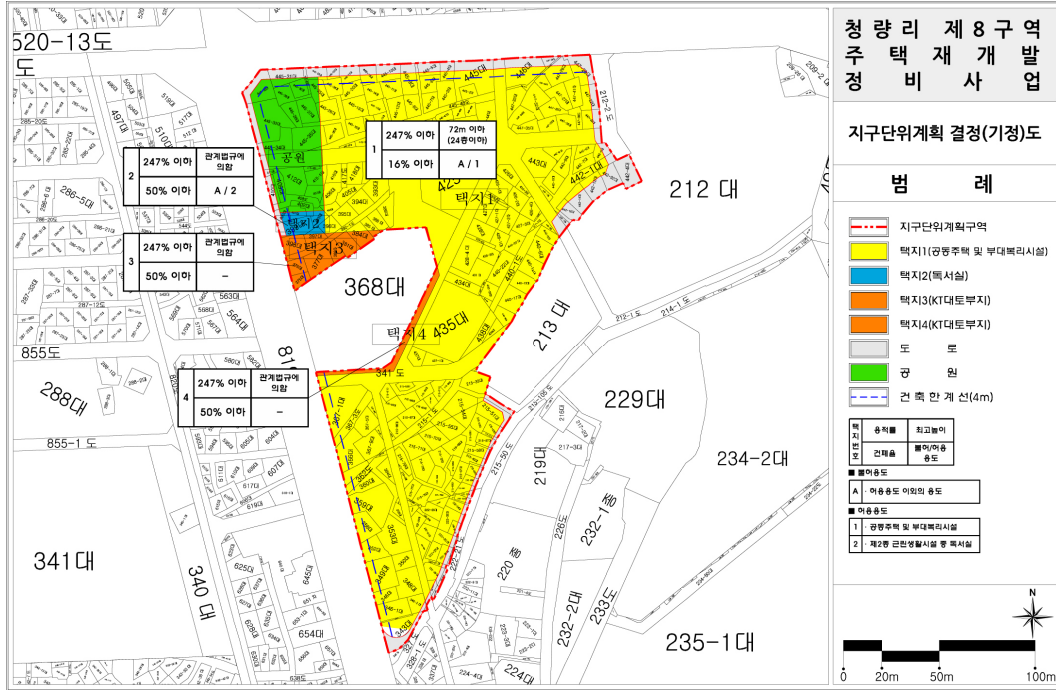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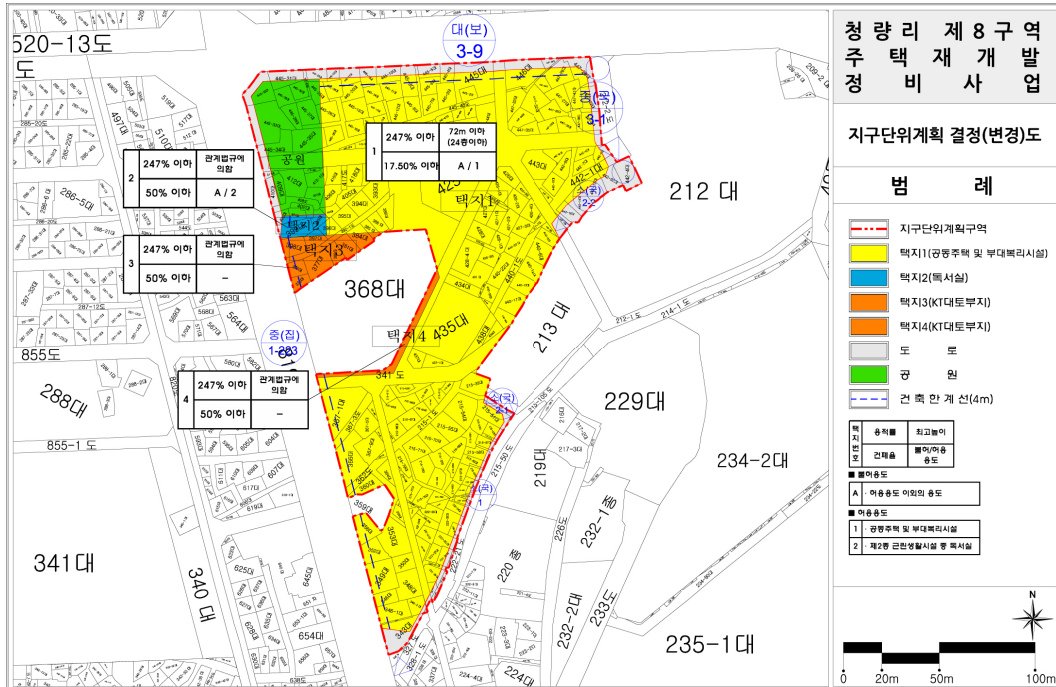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4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상계4구역)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7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1호(2013.07.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9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9호(2014.0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9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호(2017.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8호(2017.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2017.08.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4호(2018.0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6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6호(2018.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0호(2018.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4호(2019.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3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0호(2020.09.0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2.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노원구 상계3,4동 일원	473,039.6	증) 920.5	473,960.1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방식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73,039.6	증) 920.5	473,960.1	-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6개 구역)		405,698.0	증) 920.5	406,618.5	-	-
	상계1	자력6구역 8블럭 9롯데 일대	86,432.5	-	86,432.5	주택재개발	-
	상계2	자력2구역 17블럭 1롯데 일대	100,842.0	-	100,842.0	주택재개발	-
	상계4	상계동 85-33 일대	39,960.6	증) 920.5	40,881.1	주택재개발	-
	상계5	상계동 109-43 일대	112,378.0	-	112,378.0	주택재개발	-
	상계6	상계동 95-3 일대	66,084.9	-	66,084.9	주택재개발	-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7개 구역)		67,341.6	-	67,341.6	-
상계1		자력6구역 9블럭 31롯데	2,324.0	-	2,324.0	-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
상계2		자력6구역 15블럭 3-2롯데	5,637.0	-	5,637.0	-	성림아파트
상계3		상계동 산 151-1번지 일대	16,674.0	-	16,674.0	-	당고개근린공원
상계4		상계동 116-1번지 일대	2,106.0	-	2,106.0	-	SGI문화회관
상계5		상계동 86-1번지 일대	14,851.0	-	14,851.0	-	신상계초등학교
상계6		자력6구역 44블럭 1롯데	2,711.0	-	2,711.0	-	건영아파트 (87세대)
상계3 해제 구역		자력1구역 8블럭 2롯데 일대	23,038.6	-	23,038.6	-	상계로 확보부분 존치

※ 변경사유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상계4구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촉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노원구 상계동 85-33번지 일대	39,960.6	증) 920.5	40,881.1	-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나.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960.6	증) 920.5	40,881.1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1,890.9	증) 671.5	12,562.4	30.7	-
	도 로	9,373.9	증) 684.9	10,058.8	24.6	-
	소공원	602.0	감) 27.8	574.2	1.4	소공원1(상계로변)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663.0	증) 7.0	670.0	1.6	소공원2(수락산길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65.0	감) 0.4	64.6	0.2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공공청사	645.0	증) 2.2	647.2	1.6	보훈회관, 파출소
	수도공급설비	542.0	증) 5.6	547.6	1.3	-
택지 (획지)	소 계	28,069.7	증) 249.0	28,318.7	69.3	-
	4-1	27,362.7	증) 241.2	27,603.9	67.5	공동주택
	4-2	707.0	증) 7.8	714.8	1.7	보류지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주거용지 및 기반시설용지) 면적변경

2)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960.6	증) 920.5	40,881.1	100.0	-
주거지역	소 계	39,690.6	증) 914.3	40,604.9	99.3	-
	제1종일반주거지역	772.0	증) 17.8	789.8	1.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456.0	증) 125.7	5,581.7	13.7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32,580.6	증) 750.5	33,331.1	81.5	-
	제3종일반주거지역	882.0	증) 20.3	902.3	2.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70.0	증) 6.2	276.2	0.7	-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05	25~43	보조 간선	일반 도로	2,408 (650)	상계동 172-2일원	남양주시계 (상계동 산159-1)	서울시고시 제2008-309호 (08.09.11)	상계로
기정	중로	2	97	21~30 (1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805 (585)	상계동 95-376일원	-	서울시고시 제210호 (91.09.04)	수락산길
기정	중로	2	4	18	특수 도로	보행자 도로	28	상계동 117-17일원	상계동 117-15일원	서울시고시 제2008-309호 (08.09.11)	-

※ ()는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구간임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수락산 도시자연 공원	도시자연 공원	상계동 산151-1 일원	6,692,860 (16,739)	감) 0.4	6,692,859.6 (16,738.6)	건고138 (77.07.09)	-
변경	공원	소공원	상계동 117-13 일원 (상계동1355-6번지)	602.0	감) 27.8	574.2	서고2008-309 (08.09.11)	-
변경	공원	소공원	상계동 138-176 일원 (상계동1355-8번지)	663.0	증) 7.0	670.0	서고2018-214 (18.07.12)	-

※ 면적 ()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 지구) 면적임

※ 위치 ()는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다)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보훈회관, 파출소	상계동 117-8 일원 (상계동1355-4번지)	645.0	증) 2.2	647.2	서울시고시 제2018-214호 (18.07.12)	-

※ 위치 ()는 공공청사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변경

라)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상계동 117-7일원 (상계동1355-3번지)	542.0	증) 5.6	547.6	서울시고시 제2017-168호 (17.05.18)	-

※ 위치 ()는 수도공급설비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수도공급설비 면적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없음)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상계4 재정비 촉진 구역	39,960.6	4-1	27,362.7	상계동 85-3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5% 이하	23층이하	28층이하 (98m이하)
			4-2	707.0	상계동 117-8번지 일대	-	건축법규에 따름			
			-	645.0	상계동 117-8번지일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25m이하	-
			-	542.0	상계동 117-7번지일대	수도공급설비	60% 이하	200% 이하	10m이하	-
변경	상계4 재정비 촉진 구역	40,881.1	4-1	27,603.9	상계동 1355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5% 이하	23층이하	28층이하 (98m이하)
			4-2	714.8	상계동 1355-5번지	-	건축법규에 따름			
			-	647.2	상계동 1355-4번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25m이하	
			-	547.6	상계동 1355-3번지	수도공급설비	60% 이하	200% 이하	10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810세대 (임대주택 : 152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67세대 (8.3%)(임대주택 : 67세대) - 전용면적 40 ~ 50㎡ : 83세대 (10.2%)(임대주택 : 68세대) - 전용면적 50 ~ 60㎡ : 401세대 (49.5%)(임대주택 : 17세대) - 전용면적 60 ~ 85㎡ : 250세대 (30.9%) - 전용면적 85㎡초과 : 9세대 (1.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상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 획지 4-1, 4-2 등의 위치(지번)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 6)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8)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없음)
 9)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1)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12) 생태 면적률(변경 없음)
 13) 건축계획(변경 없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변경)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상계동 85-33번지 일대	39,960.6	증) 920.5	40,881.1	-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960.6	증) 920.5	40,881.1	100.0	-
주거지역	소 계	39,690.6	증) 914.3	40,604.9	99.3	-
	제1종일반주거지역	772.0	증) 17.8	789.8	1.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456.0	증) 125.7	5,581.7	13.7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32,580.6	증) 750.5	33,331.1	81.5	-
	제3종일반주거지역	882.0	증) 20.3	902.3	2.2	-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270.01)	증) 6.2	276.2	0.7	-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 1) : 기 결정고시(서고 제2020-143호)된 자연녹지지역 면적 오기 정정 [473.0㎡(270+203)
→ 27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05	25~43	보조 간선	일반 도로	2,408 (650)	상계동 172-2일원	남양주시계 (상계동 산159-1)	서울시고시 제2008-309호 (08.09.11)	상계로
기정	중로	2	97	21-30 (1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805 (585)	상계동 95-376일원	-	서울시고시 제210호 (91.09.04)	수락산길
기정	중로	2	4	18	특수 도로	보행자 도로	28	상계동 117-17일원	상계동 117-15일원	서울시고시 제2008-309호 (08.09.11)	-

※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구간임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수락산 도시자연 공원	도시자연 공원	상계동 산151-1 일원	6,692,860 (16,739)	감) 0.4	6,692,859.6 (16,738.6)	건고138 (77.07.09)	-
변경	공원	소공원	상계동 117-13일원 (상계동 1355-6번지)	602.0	감) 27.8	574.2	서고2008-309 (08.09.11)	-
변경	공원	소공원	상계동 138-176 일원 (상계동 1355-8번지)	663.0	증) 7.0	670.0	서고2018-214 (18.07.12)	-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 도시자연공원 면적 ()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면적임

※ 소공원 위치 ()는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3)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보훈회관, 파출소	상계동 117-8일원 (상계동 1355-4번지)	645.0	증) 2.2	647.2	서울시고시 제2008-309호 (08.09.11)	-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변경

※ 공공청사 위치 ()는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4)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수도 공급설비	가압장	상계동 117-7 일원 (상계동1355-3번지)	542.0	증) 5.6	547.6	서울시고시 제2017-168호 (17.05.18)	-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수도공급설비 면적 변경

※ 수도공급설비 위치 ()는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택지	28,069.7	4-1	상계동 85-33번지 일대	27,362.7	공동주택
			4-2	상계동 117-8번지 일대	707.01	보류지
변경	택지	28,318.7	4-1	상계동 85-33번지 일대 (상계동 1355번지)	27,603.9	공동주택
			4-2	상계동 117-8번지 일대 (상계동 1355-5번지)	714.8	보류지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 면적 변경

※ 위치 ()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 1) : 기 결정고시(서고 제2020-143호)된 보류지 면적 오기 정정(707.7㎡→707.0㎡)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주용도	획지 4-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
	획지 4-2	· 건축법규에 따름	-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폐율(%)	비 고
획지4-1(공동주택)	50% 이하	-
보류지, 공공청사, 수도공급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획지4-1(공동주택)	230.0%	-	255.0%이하	255.0%이하	-
보류지, 공공청사, 수도공급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획지4-1(공동주택)	25.0%	-	-

○ 높이 계획

구 분	높이기준	비고
획지4-1(공동주택)	평균 23층이하 / 최고 28층 이하	-
보류지, 공공청사, 수도공급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동측 상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남서측 수락산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마. 경관계획 (변경 없음)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건축물의 방향성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권장
건물 진출입구	수락산길변 근린생활시설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벽면 및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 진출입이 가능 하도록 설치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주변 건물과 조화를 유지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옥탑층 노출 금지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금지
저층부외관	수락산길변 근린생활시설	주가로에 면한 1층 벽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 및 색채	공동주택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원색계역 재료, 도로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공동주택	서측 수락산에서 동측 불암산으로 연계되는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공동주택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바.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공동주택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상계로변 : 6m, 수락산길변 : 3m

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 계	810	100.0	152	135	17	18.8	100.0	11.2
40㎡이하	67	8.3	67	67	-	8.3	44.1	-
40㎡초과~50㎡이하	83	10.2	68	68	-	8.4	44.7	-
50㎡초과~60㎡이하	401	49.5	17	-	17	2.1	11.2	11.2
60㎡초과~85㎡이하	250	30.9	-	-	-	-	-	-
85㎡초과	9	1.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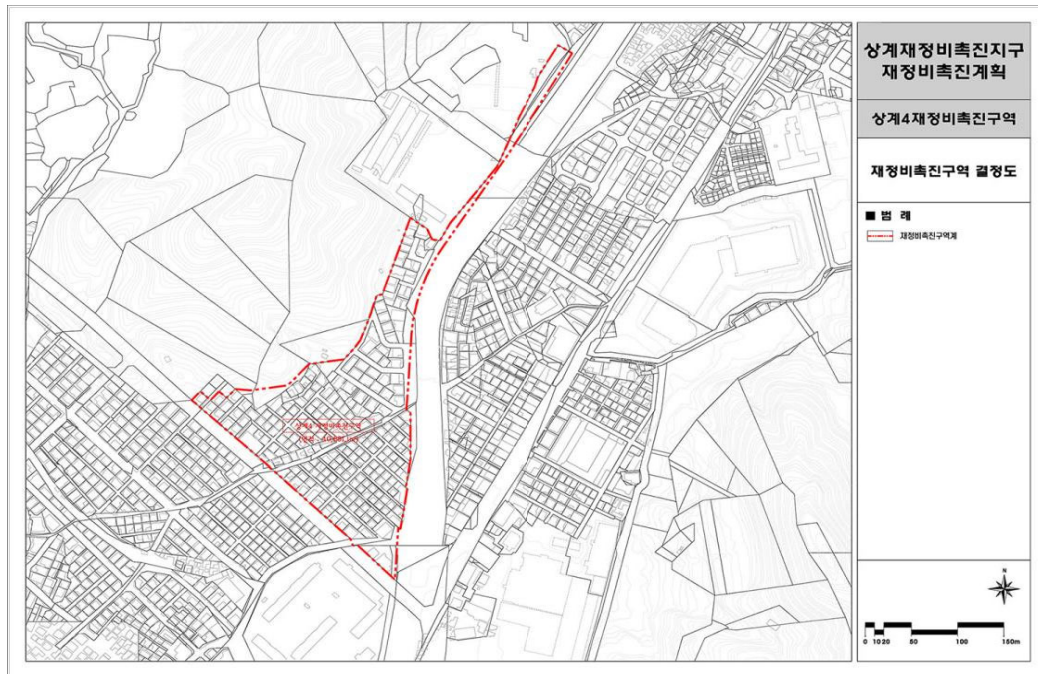
3) 환경관리계획

구분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1. 생태면적율	30% 이상	기 시가화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지역	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계획하여 생태면적율 34.63% 확보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 I	녹지분포가 거의 없는 지역임	녹지, 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녹지평가지표 I등급 확보
3.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비교적 평탄한 지형	지형변화 최소화
4. 비오톱	3등급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제외등급	녹지, 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일부 비오톱 등급이 향상되도록 계획
5. 일조	-	저층주택 밀집지역, 북측으로 수락산이 위치하고 있어 일조에 대한 영향 없음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북측 수락산이 위치하고 있어 바람길이 확보되어 있음	녹지, 수공간 확보 및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 바람길 확보계획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노후한 건축물로 인하여 에너지 효율 저하	단열재, 이중창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손실 최소화
8. 경관	-	스카이라인 보전	남측도로 접한 건축물을 저층으로 배치하여 고층으로 인한 폐쇄감 방지
9. 휴식 및 여유평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당해대상지에 조성 필요	옥상녹화,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0. 소음 및 진동	소음·진동기준	도로 및 지하철 4호선에 의한 영향 발생 지역	방음벽, 이중창 등을 이용하여 영향 최소화
11. 폐기물	폐기물 처리	주거지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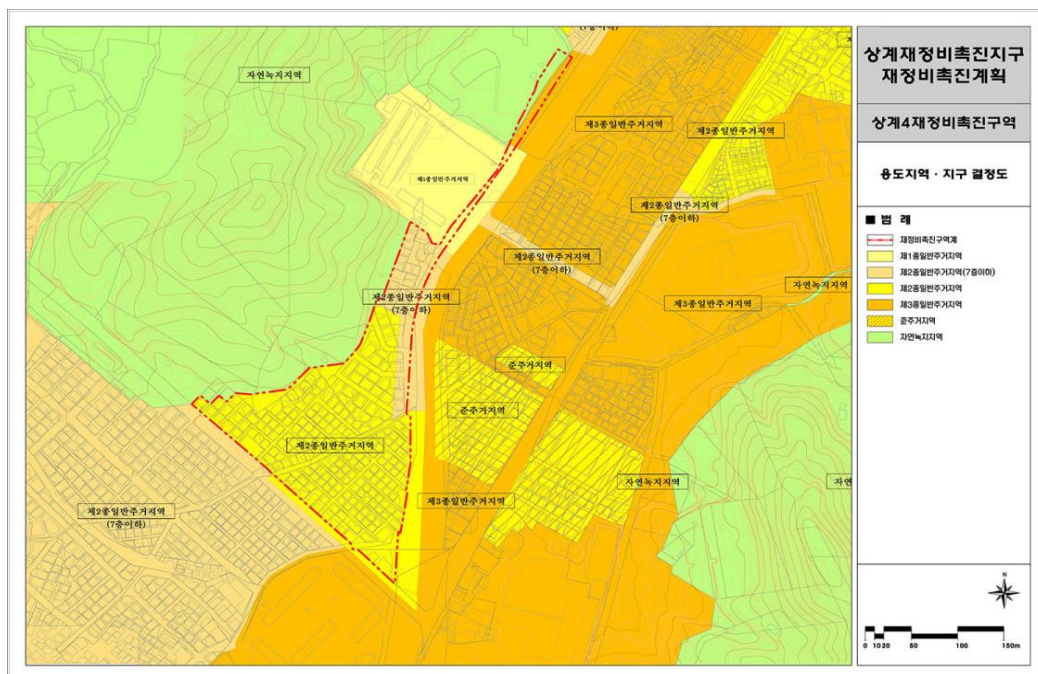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붙임(「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및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노원구 도시재생과 (☎02-2116-392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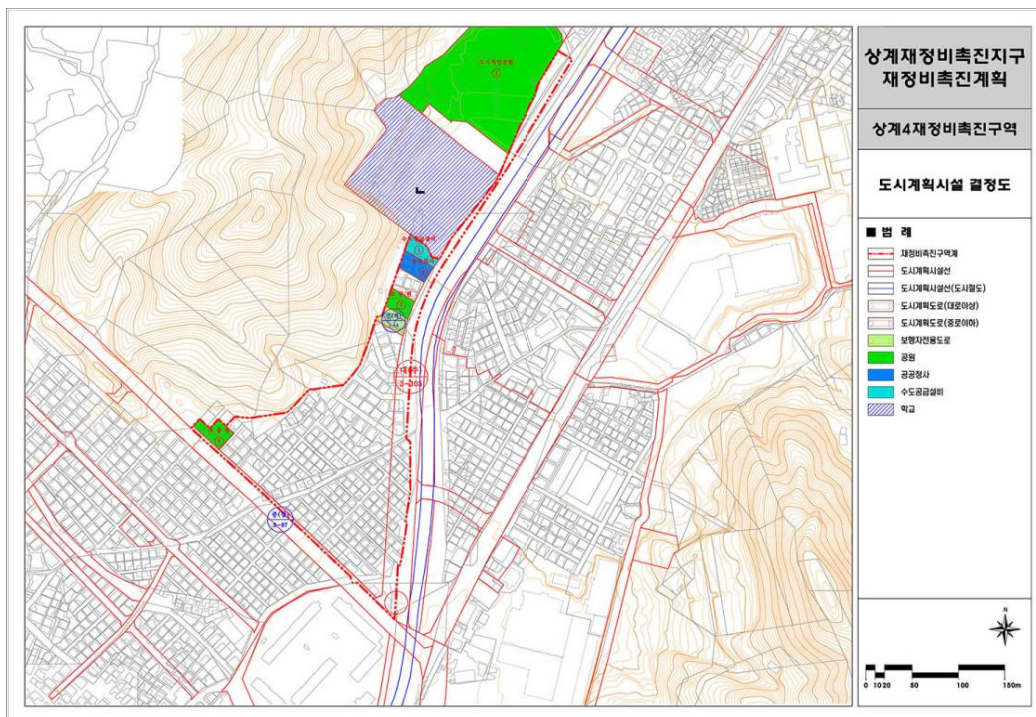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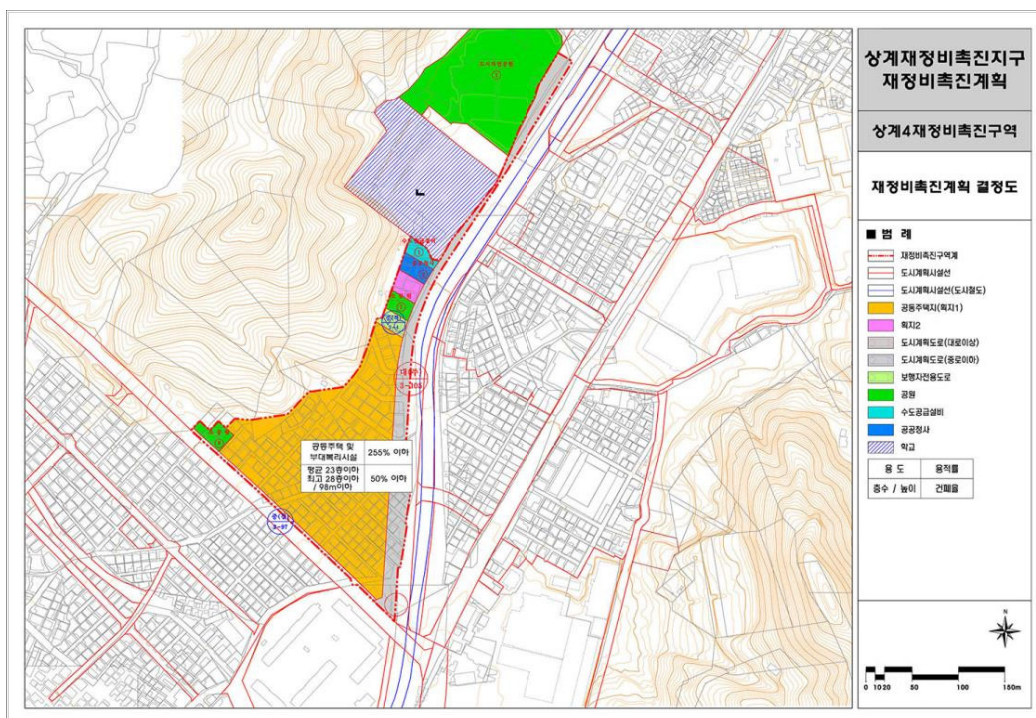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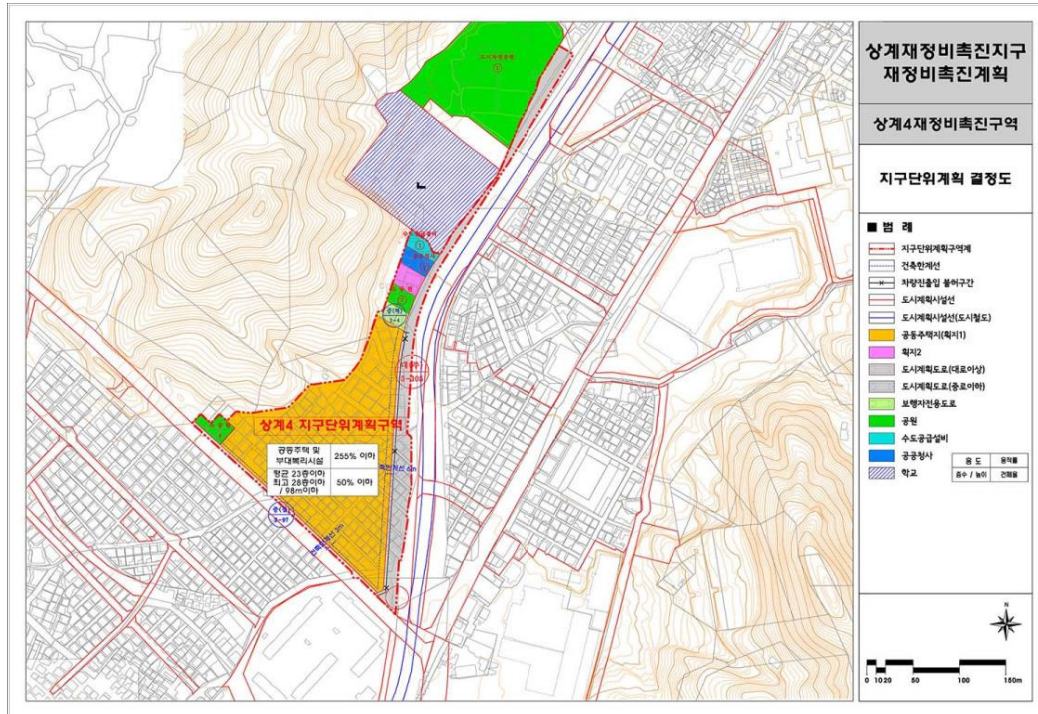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없음)】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붙임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고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노원구 상계3.4동 일원	473,039.6	증) 920.5	473,960.1	노후 ·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계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24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3,039.6	증) 920.5	473,960.1	100.0	-
주택 용지	소 계	277,776.5	증) 249.0	278,025.5	58.7	-
	주 거	165,901.3	증) 249.0	166,150.3	35.1	성림아파트, 건영아파트 존치
	주거복합	104,779.6	-	104,779.6	22.1	-
	종교시설	7,095.6	-	7,095.6	1.5	SGI 문화회관 존치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95,263.1	증) 671.5	195,934.6	41.3	-
	도 로	100,506.8	증) 684.9	101,191.7	21.4	-
	공 원	48,477.0	감) 21.2	48,455.8	10.2	-
	녹 지	5,433.0	-	5,433.0	1.1	-
	학 교	14,851.0	-	14,851.0	3.1	-
	공공청사	3,309.0	증) 2.2	3,311.2	0.7	-
	문화복지	6,815.4	-	6,815.4	1.4	-
	공공공지	14,378.9	-	14,378.9	3.0	-
	수도공급설비	542.0	증) 5.6	547.6	0.1	상계4구역
	체육시설	950.0	-	950.0	0.2	상계6구역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주거용지 및 기반시설용지) 면적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없음), (21,602인 / 8,008세대)

구 분		계획세대(세대)			계획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008	-	8,008	21,602	-	21,602	-
촉진구역	소계	7,642	-	7,642	20,633	-	20,633	세대당 약2.7인
	40㎡ 이하	763	-	763	2,060	-	2,060	
	40㎡~60㎡	4,469	-	4,469	12,066	-	12,066	
	60㎡~85㎡	2,316	-	2,316	6,253	-	6,253	
	85㎡ 초과	94	-	94	254	-	254	
존치관리 구역	소계	366	-	366	969	-	969	-
	공동주택	327	-	327	883	-	883	세대당 약2.7인
	상계3해제구역	39	-	39	86	-	86	현황인구 및 세대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0,846.3	증) 7.8	40,854.1	-
학 교	14,851.0	-	14,851.0	-
공공청사	3,309.0	증) 2.2	3,311.2	-
문화 및 복지시설	6,815.4	-	6,815.4	-
공공공지	14,378.9	-	14,378.9	-
수도공급설비	542.0	증) 5.6	547.6	-
체육시설	950.0	-	950.0	-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공청사 및 수도공급설비 면적 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3,910.0	감) 21.2	53,888.8	-
공원	소 계	48,477.0	감) 21.2	48,455.8	-
	도시자연공원	16,739.0	감) 0.4	16,738.6	-
	근린공원	18,137.0	-	18,137.0	-
	문화공원	11,141.0	-	11,141.0	-
	소 공 원	2,460.0	감) 20.8	2,439.2	-
녹지	소 계	5,433.0	-	5,433.0	-
	완충녹지	5,433.0	-	5,433.0	-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내 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및 소공원 7.8 면적 변경

5) 교통계획(변경 없음)

6) 경관계획(변경 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없음)

○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평균)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	1	C	상계동	자력6-8-9	8.6	190	20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2	C	상계동	자력2-17-1	10.1	210	20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4	C	상계동	85-33	4.0	230	23	5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5	C	상계동	109-43	11.3	231.10	23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6	C	상계동	95-3	6.6	258.33	23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 추진단계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단계적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 주택재건축사업 : 변경 없음

○ 주거환경정비사업 : 변경 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방식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73,039.6	증) 920.5	473,960.1	-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6개 구역)		405,698.0	증) 920.5	406,618.5	-	-
	상계1	자력6구역 8블럭 9로트 일대	86,432.5	-	86,432.5	주택재개발	-
	상계2	자력2구역 17블럭 1로트 일대	100,842.0	-	100,842.0	주택재개발	-
	상계4	상계동 85-33 일대	39,960.6	증) 920.5	40,881.1	주택재개발	-
	상계5	상계동 109-43 일대	112,378.0	-	112,378.0	주택재개발	-
	상계6	상계동 95-3 일대	66,084.9	-	66,084.9	주택재개발	-
	준치 관리 구역	소 계 (7개 구역)		67,341.6	-	67,341.6	-
상계1		자력6구역 9블럭 31로트	2,324.0	-	2,324.0	-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
상계2		자력6구역 15블럭 3-2로트	5,637.0	-	5,637.0	-	성림아파트
상계3		상계동 산 151-1번지 일대	16,674.0	-	16,674.0	-	당고개근린공원
상계4		상계동 116-1번지 일대	2,106.0	-	2,106.0	-	SGI문화회관
상계5		상계동 86-1번지 일대	14,851.0	-	14,851.0	-	신상계초등학교
상계6		자력6구역 44블럭 1로트	2,711.0	-	2,711.0	-	건영아파트 (87세대)
상계3 해제 구역		자력1구역 8블럭 2로트 일대	23,038.6	-	23,038.6	-	상계로 확보부분 존치

※ 상계4 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3,039.6	증) 920.5	473,960.1	100.0
주거 지역	소 계	436,803.7	증) 914.3	437,718.0	92.3
	제1종일반주거지역	63,832.2	증) 17.8	63,850.0	13.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8,654.1	증) 125.7	28,779.8	6.1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324.7	증) 750.5	204,075.2	4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979.4	증) 20.3	111,999.7	23.6
	준주거지역	29,013.3	-	29,013.3	6.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235.9	증) 6.2	36,242.1	7.7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 변경

○ 상계1구역 ~ 상계2구역(변경 없음)

○ 상계4구역(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9,960.6	증) 920.5	40,881.1	100.0	-
주거지역	소계	39,690.6	증) 914.3	40,604.9	99.3	-
	제1종일반주거지역	772.0	증) 17.8	789.8	1.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456.0	증) 125.7	5,581.7	13.7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32,580.6	증) 750.5	33,331.1	81.5	-
	제3종일반주거지역	882.0	증) 20.3	902.3	2.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70.0	증) 6.2	276.2	0.7	-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 변경

○ 상계5구역 ~ 상계6구역(변경 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없음)

구 분	주 용 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계 획		비 고
			기준	상한	평균/ 최고층수	최고높이	
상계1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190.00%	215.56%	21/25	88m	-
상계2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0%	251.60%	20/28	98m	-
상계4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0.00%	255.00%	23/28	98m	-
상계5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종: 50%이하 준주거: 60%이하	231.10%	261.00%	23/33	112m	준주거 일부포함
상계6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종: 50%이하 준주거: 60%이하	258.33%	305.00%	27/35	130m	준주거 일부포함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역 명		면적(㎡)	기반시설 면적(㎡)					
			계획 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매입 시설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순부담률
합 계	기정	405,698.0	151,772.4	72,211.9	44,498.2	-	35,062.3	8.6%
	변경	406,618.5	152,443.9	72,211.9	44,498.2	-	35,733.8	8.7%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86,432.5	32,728.3 (시설기부채납 3,241.3 포함)	12,524.5	14,645.8	-	5,558.0	6.4%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100,842.0	28,626.0 (시설기부채납 2,663 포함)	6,510.5	11,110.1	-	11,005.4	10.9%
상계4재정비촉진 구역	기정	39,960.6	11,890.9	4,898.9	3,221.7	-	3,770.3	9.4%
	변경	40,881.1	12,562.4	4,898.9	3,221.7	-	4,441.8	10.9%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112,378.0	43,835.2 (시설기부채납 3,364 포함)	24,399.0	10,276.6	-	9,159.6	8.2%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66,084.9	34,692.0 (시설기부채납 3,998.3 포함)	23,879.0	5,244.0	-	5,569.0	8.4%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라 구역면적 및 계획기반시설 면적 변경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없음)

구역명	총계	임대주택				분양			
		소계	40㎡이하	40㎡~ 50㎡이하	50㎡~ 60㎡이하	소계	60㎡이하	60~ 85㎡이하	85㎡초과
합계	7,642	1,518	763	654	101	6,124	3,714	2,316	94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1,388	294	168	121	5	1,094	547	547	-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2,200	519	274	225	20	1,681	1,094	587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810	152	67	68	17	658	399	250	9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2,081	355	161	156	38	1,726	1,217	459	50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1,163	198	93	84	21	965	457	473	35

13)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변경 없음)

14)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단계	사업기간				해당구역
	조합설립 인가시기	사업시행 인가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2014년	2016년	2019년	상계4구역, 상계6구역
2단계	2009년	2019년	2021년	2024년	상계5구역
3단계	2010년, 2013년	2019년	2021년	2024년	상계1구역, 상계2구역

※ 단계별 추진계획은 구청장이 이주총량의 범위내에서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 단계별 사업추진시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추진 구역별 또는 이주세대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분기별로 시행

15)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변경 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없음)

17)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8)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상계1, 2, 5, 6 재정비촉진구역(변경 없음)

나) 상계4재정비촉진구역(변경)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19)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노원구 상계3,4동 일원	473,039.6	증) 920.5	473,960.1	-

※ 변경사유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상계4구역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3,039.6	증) 920.5	473,960.1	100.0
주거 지역	소 계	436,803.7	증) 914.3	437,718.0	92.3
	제1종일반주거지역	63,832.2	증) 17.8	63,850.0	13.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8,654.1	증) 125.7	28,779.8	6.1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324.7	증) 750.5	204,075.2	4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979.4	증) 20.3	111,999.7	23.6
	준주거지역	29,013.3	-	29,013.3	6.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235.9	증) 6.2	36,242.1	7.7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05	25~43	보조 간선	2,408 (1,568)	상계동 172-2일원	남양주시계 (상계동 산159-1)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상계로
기정	중로	1	1	20~29	보조 간선	1,123	상계동 95-376일원	자력 2-11-4일원	일반도로	서고 1997-404 (97.12.13)	덕릉로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164	자력 6-53-35일원	자력 6-35-39일원	일반도로	"	5구역 내부
기정	중로	2	1	15	보조 간선	83	상계동 140-257일원	상계동 82-1일원	일반도로	"	당고개길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156	상계동 99-2일원	상계동 140-340일원	일반도로	"	5구역 내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97	21~30 (18)	집산 도로	18,805 (585)	상계동 95-376일원	-	일반도로	서고210호 (91.09.04)	수락산길
기정	중로	2	121	15	집산 도로	790	상계동 33	상계동 산 156-6	일반도로	건고197 (71.04.07)	
기정	중로	3	1	12~15	집산 도로	699	자력 6-42-9일원	자력 2-7-12일원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2구역 순환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31	자력 6-7-51일원	자력 6-1-21일원	일반도로	"	1구역 순환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7	상계동 91-3일원	상계동 1291일원	일반도로	서고 2012-226 (12.08.23)	-
기정	소로	1	a	10	국지 도로	76	상계동 107-863일원	상계동 107-856일원	일반도로	서고103 (79.03.02)	-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47	상계동 109-38일원	자력 6-53-39일원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건영아파트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95	자력 6-44-1일원	자력 6-44-1일원	일반도로	"	건영아파트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70	자력 2-23-22일원	상계동 산152-24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93	상계동 산152-24일원	자력 2-23-5일원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27	자력 2-4-3일원	상계동 111-660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102	자력 2-4-12일원	상계동 111-66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81	자력 2-5-17일원	상계동 58-32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44	상계동 58-1일원	상계동 58-32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59	상계동 58-20일원	상계동 58-15일원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7	자력 6-7-53일원	상계동 6-49일원	일반도로	"	공원과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4	18	특수 도로	28	상계동 117-17일원	상계동 117-15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중로	2	6	7~15	집산 도로	160	자력 6-12-17일원	상계동 61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40	자력 6-14-1가일원	자력 6-15-14일원	일반도로	-	성림아파트 출입도로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34	자력 2-11-14일원	자력 2-11-11일원	일반도로	-	-

※ 연장 항목 중 () 내용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은 없으며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면적 변경

○ 철도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고속 철도	도시 철도	신상계	사당	-	30.0	-	건고203 (75.12.20)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고속 철도	지하철 4호선 신상계 정거장	노원구 상계동 111	4,305	-	4,305	건고230 (90.5.4)	당고개역 폭 21m 연장 205m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자력 6-39-1	4,255	-	4,255	서고2008-309 (08.09.11)	중복결정: 중앙공원 지하 면적 일부

(2) 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수락산 도시자연 공원	도시자연 공원	상계동 산151-1 일원	6,692,860 (16,739)	감) 0.4	6,692,859.6 (16,738.6)	건고138 (77.07.09)	-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상계동 6-28 일원	18,137.0	-	18,137.0	서고2008-309 (08.09.11)	-
기정	3	공원	문화공원	자력 6-39-1일원	6,600.0	-	6,600.0	"	중앙공원
기정	4	공원	문화공원	상계동 82-8 일원	4,541.0	-	4,541.0	"	-
변경	7	공원	소공원	상계동 117-13 일원 (상계동1355-6번지)	602.0	감) 27.8	574.2	서고2008-309 (08.09.11)	-
변경	8	공원	소공원	상계동 138-176 일원 (상계동1355-8번지)	663.0	증) 7.0	670.0	서고2018-214 (18.7.12)	-
기정	9	공원	소공원	자력 2-4-7 일원	1,195.0	-	1,195.0		-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 도시자연공원 면적 ()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면적임

※ 소공원7,8 위치 ()는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 녹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자력 6-16-15 일원	5,433	-	5,433	서고 2008-309 (08.09.11)	-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상계동 95-379 일원	2,372.0	-	2,372.0	서고 2008-309 (08.09.11)	-
기정	2	공공공지	상계동140-257 일원	2,173.0	-	2,173.0	"	-
기정	3	공공공지	상계동140-271 일원	474.9	-	474.9	"	-
기정	5	공공공지	자력 6-41-1 일원	1,698.8	-	1,698.8	"	-
기정	6	공공공지	자력 6-53-39일원	7,129.2	-	7,129.2	"	-
기정	8	공공공지	자력6-6-41일원	531.0	-	531.0	"	-

(3) 유통·공급시설(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상계동 117-7 일원 (상계동 1355-3번지)	542	증) 5.6	547.6	서고2017-168 (17.05.18)	-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수도공급설비 면적 변경

※ 위치 () 는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수도공급설비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자력6-9-31	2,324	-	2,324	-	높이:31m 용적률:200%, 건폐율:60%
변경	2	공공청사	보훈회관, 파출소	상계동 117-8 일원 (상계동 1355-4번지)	645.0	증) 2.2	647.2	서고2008-309 (08.09.11)	높이:25m 용적률:200%, 건폐율:60%
기정	3	공공청사	-	상계동 65-12 일원	340.0	-	340.0	서고2018-226 (18.07.19)	용적률:200%, 건폐율:60%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공청사(보훈회관, 파출소) 면적 변경

※ 위치 () 는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공공청사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상계동 86-1 일원	14,851	-	14,851	교위고5 (87.2.17)	신상계초

○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2	문화시설	자력 6-13-16 일원	1,993.4	-	1,993.4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3,241.3㎡)
기정	3	문화시설	자력 2-23-10 일원	1,636.0	-	1,636.0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2,663㎡) 관리청:노원구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사회 복지시설	상계동 101-163일원	3,186.0	-	3,186.0	서고 2008-309 (08.09.11)	건축물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환산부지면적:3,364㎡)

○ 체육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체육시설	상계동 95-182 일원	950.0	-	950.0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3,998.3㎡) 관리청:노원구

(5) 방재시설(변경 없음)

○ 하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2급 하천	상계동 40	중랑천 합류지점	-	6.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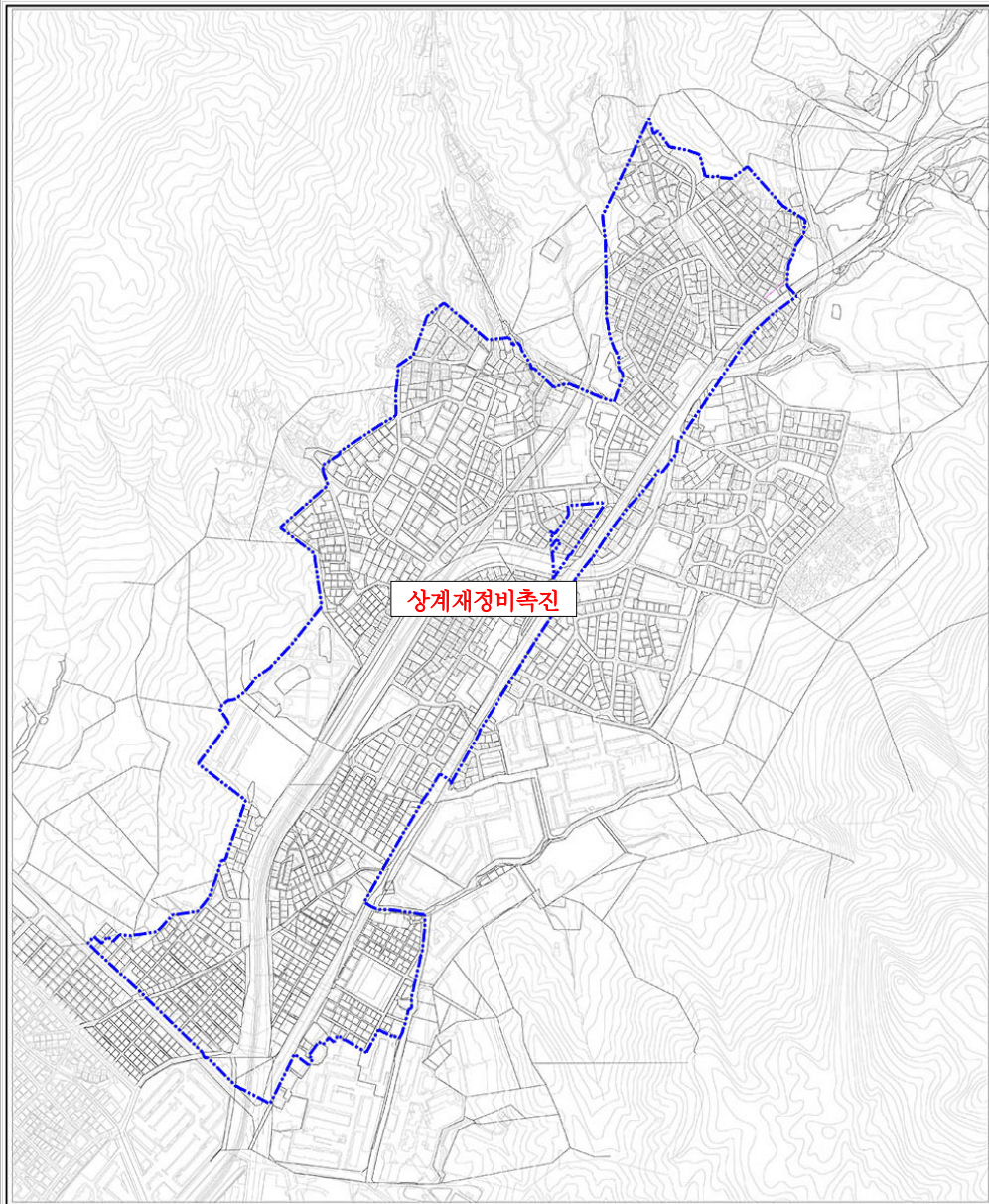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상계4 지구단위계획구역	상계동 85-33 일원	39,960.6	증) 920.5	40,88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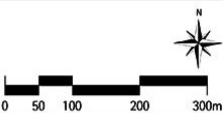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상계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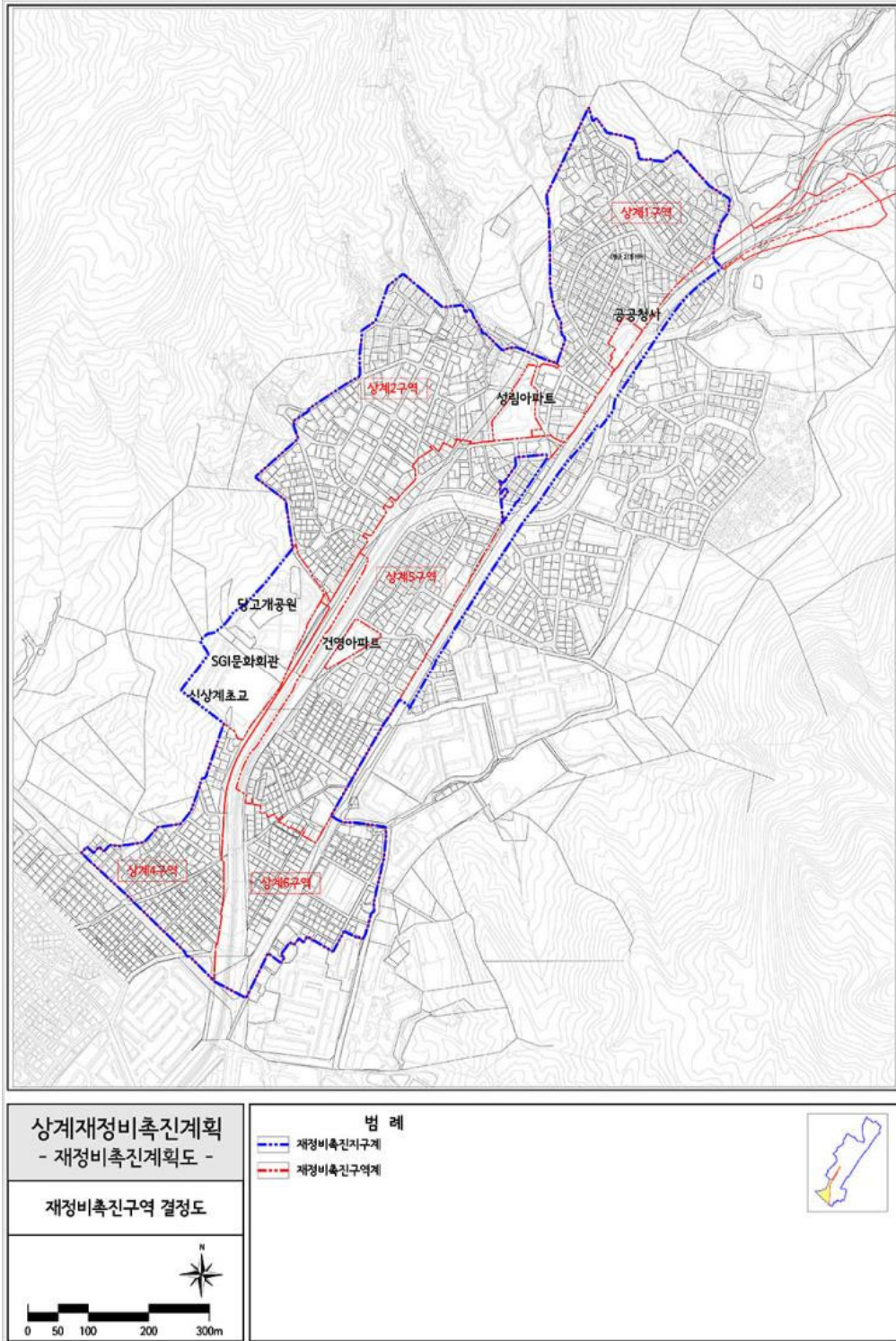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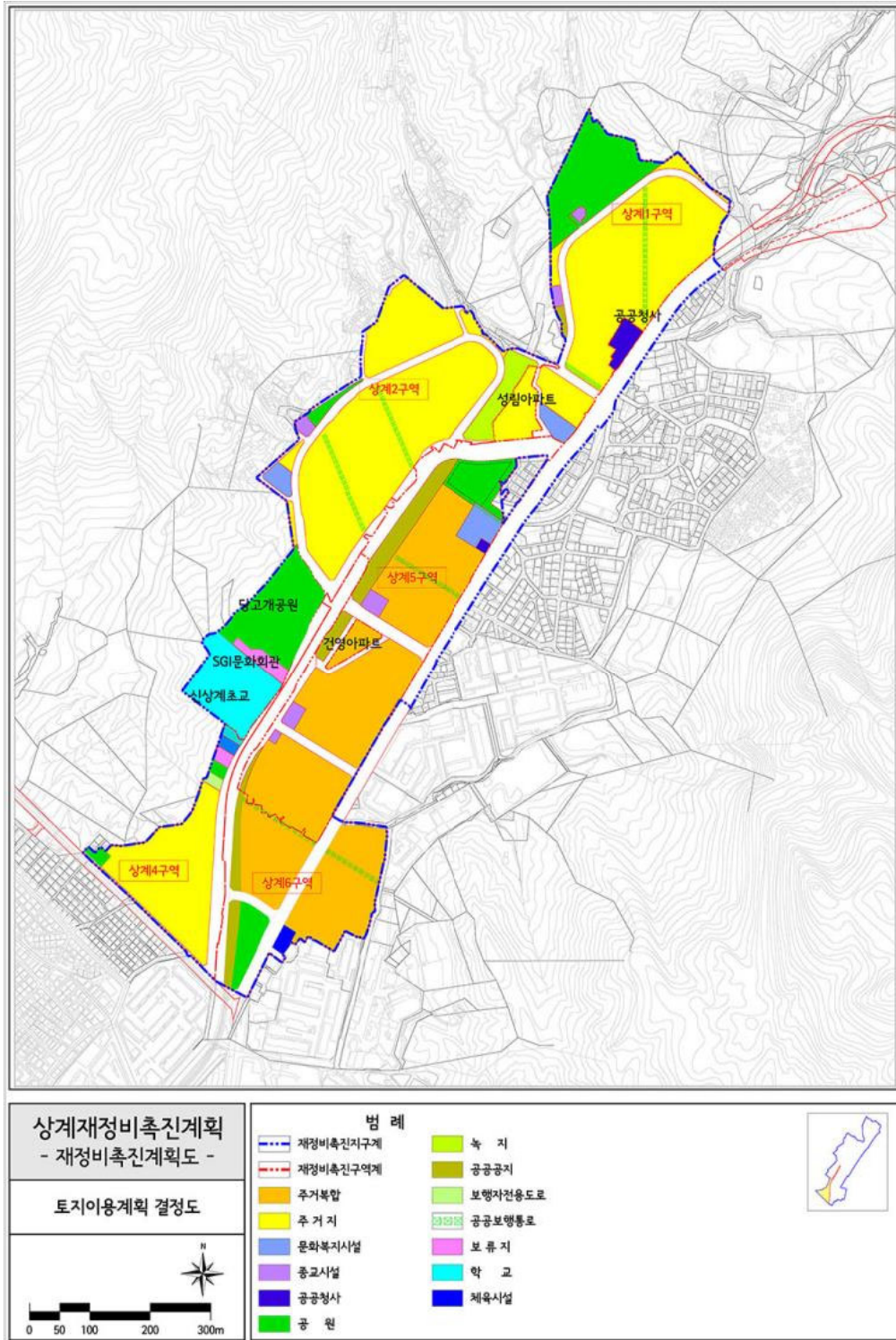
범 례
--- 재정비촉진지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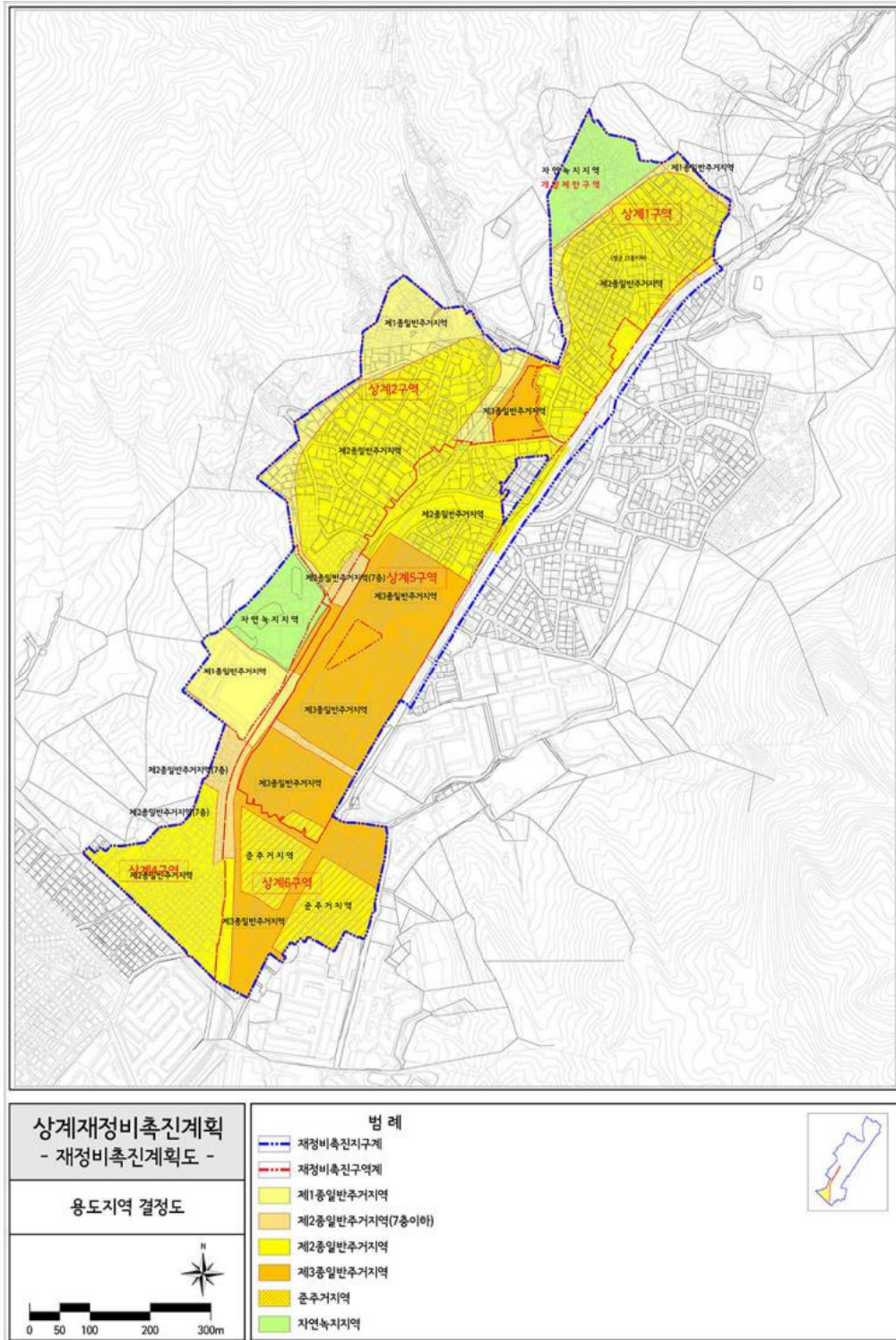
■ 상계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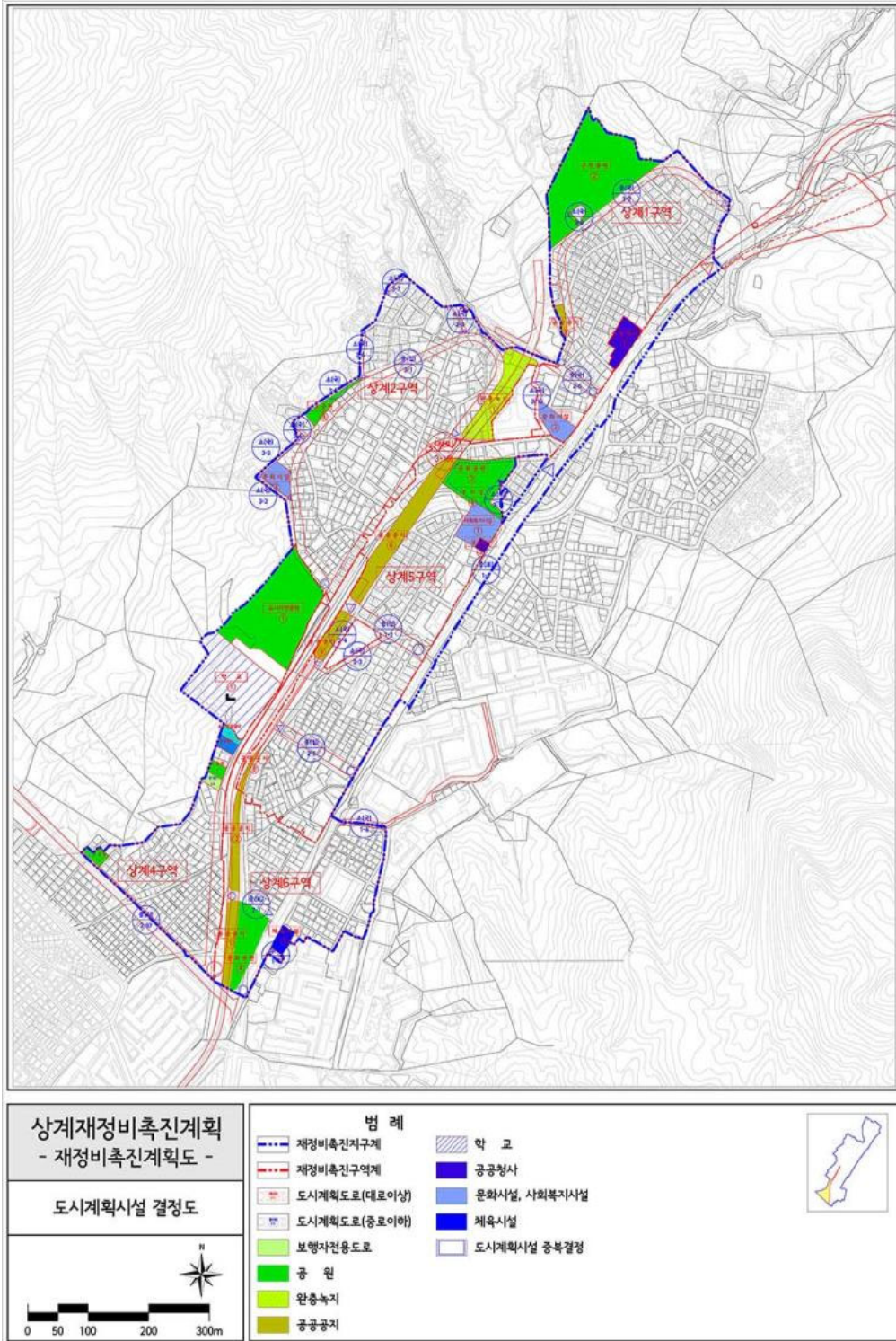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78-145호(1978.6.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979-454호(1979.10.25.)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70호 (2020.6.25.)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567호로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열람공고 한 “장기미집행도로(서초대로) 보상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년 5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39~1719-8(강남역~서초역)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명칭 : 장기미집행도로(서초대로) 보상사업

라. 사업의규모(변경)

－ 기정 : 토지보상 3,611㎡

－ 변경 : 토지보상 3,615㎡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3년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본관 10층)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도로(서초대로) 보상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기정	서초동 1715-15	88.5	88.5	도	김영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전부	-	-	-
2	기정	서초동 1316-42	45.4	45.4	대	김대중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대사리	전부	-	-	-
3	기정	서초동 1316-44	50.9	50.9	대	김대중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대사리	전부	-	-	-
4	기정	서초동 1691-6	371.3	91.3	대	김일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2	-	-	-
						이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			
	변경	서초동 1691-6	371.3	91.4	대	김일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2	-	-	-
						이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			
5	기정	서초동 1691-7	410.3	63.5	대	이철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110번길	전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강남역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지상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서초중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권
	변경	서초동 1691-7	410.3	63.6	대	이철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110번길	전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강남역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지상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서초중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권
6	기정	서초동 1677-14	711.9	80.8	대	김병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전부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12(양재동)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7	기정	서초동 1690-3	571.3	151.6	대	윤춘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전부	주식회사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20(태평로2가)	근저당권
8	기정	서초동 1689-4	355.5	76.6	대	정균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4	97.66/100	주식회사신한은행 (신한프라이빗뱅크 서초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정우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4	2.34/100	-	-	-
	변경	서초동 1689-4	355.5	88.3	대	정균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97.66/100	주식회사신한은행 (신한프라이빗뱅크 서초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주식회사신한은행 (신한피더블유엠서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정우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4	2.34/100	주식회사신한은행 (신한피더블유엠서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	-	-
9	기정	서초동 1689-5	497.9	24.9	대	김일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25/100	-	-	-
						박창곡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25/100	-	-	-
						김종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15.6/100	주식회사하나은행 (사당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국(서초세무서장)		근저당권
									국(서초세무서장)		근저당권
						김수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9.4/100	국(서초세무서장)		근저당권
									국(서초세무서장)		근저당권
						김종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6	15.6/100	주식회사하나은행 (사당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국(마포세무서장)		근저당권
									국(마포세무서장)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임정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6	9.4/100	주식회사하나은행 (사당동지점) 국(마포세무서장) 국(마포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9	변경	서초동 1689-5	398.4	24.2	대	김일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25/100	-	-	-
						박창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25/100	-	-	-
						김종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15.6/100	주식회사하나은행 (사당동지점) 국(서초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근저당권
						김수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9.4/100	국(서초세무서장) 국(서초세무서장)		근저당권 근저당권
						김종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6	15.6/100	주식회사하나은행 (사당동지점) 국(마포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근저당권
						임정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6	9.4/100	주식회사하나은행 (사당동지점) 국(마포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근저당권
10	기정	서초동 1688-3	340.8	80.3	대	주식회사 복성산업 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	전부	주식회사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 주식회사아이비 케이지축은행 (서울영업부)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6층(역삼동)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10	변경	서초동 1688-3	340.8	80.3	대	주식회사 복성산업 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	전부	주식회사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 주식회사아이비 케이지축은행 (서울영업부)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스카이저축은행	103(논현동)	
									주식회사아이비 케이저축은행 (서울영업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근저당권
11	기정	서초동 1688-4	344.7	64.6	대	주식회사 복성산업 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	전부	주식회사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근저당권
									주식회사아이비 케이저축은행 (서울영업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하나저축 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6층(역삼동)	근저당권
	변경	서초동 1688-4	344.7	64.6	대	주식회사 복성산업 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	전부	주식회사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근저당권
									주식회사아이비 케이저축은행 (서울영업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03(논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아이비 케이저축은행 (서울영업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근저당권
12	기정	서초동 1553-23	66.2	66.2	대	광명산업 개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2-3	1/2	-	-	-
13	변경	서초동 1674-6	249.2	249.2	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전부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초센터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14	기정	서초동 1691-4	310	76.2	대	이강숙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4/10	-	-	-
						위성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3/10			
						위성돈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2/10			
						위지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1/10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5	변경	서초동 1691-4	310	76.4	대	이강숙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4/10	-	-	-
						위성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3/10			
						위성돈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2/10			
						위지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1/10			
	기정	서초동 1572-20	121.9	121.9	대	김정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5/16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초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김광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6길	4/16			
						김광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4/16			
						이재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1/16			
						이정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1/16			
						이준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37	1/16			
						김정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9	5/16			
						김광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4/16			
17	변경	서초동 1572-20	121.9	121.9	대	김광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4/16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초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이재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9	1/16			
						이정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9길	1/16			
						이준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9	1/16			
						김길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전부			
						강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전부			
	기정	서초동 1717-10	411.5	125.2	대	강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전부			
						강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전부			
						신경은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전부			
						김은정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30	전부			
						김은정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30	전부			
						김은정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30	전부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0	기정	서초동 1690-2	330.8	81.8	대	김문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	전부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초동종합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
	변경	서초동 1690-2	330.8	81.9	대	김문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	전부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초동종합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
21	기정	서초동 1672-16	0.7	0.7	대	김석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전부			
22	기정	서초동 1675-13	841.6	153.5	대	유병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전부	주식회사우리은행 (우이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23	기정	서초동 1675-20	145.6	145.6	대	한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전부	주식회사하나은행 (압구정피비센터 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변경	서초동 1675-20	145.6	145.6	대	한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전부	주식회사하나은행 (압구정피비센터 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테크노마트 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당권
24	기정	서초동 1689-2	356	86.0	대	허식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9-1	20/40	-	-	-
						심영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2-3	6/40			
						허원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5	9/40			
						허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40			
	변경	서초동 1689-2	356	88.3	대	허식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9-1	20/40	-	-	-
						심영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2-3	6/40			
						허원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5	9/40			
						허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40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5	기정	서초동 1689-3	355.8	81.2	대	오정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146 / 355.8	주식회사신한은행 (제기동역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허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209.8 / 355.8	-	-	-
	변경	서초동 1689-3	355.8	88.3	대	오정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146 / 355.8	주식회사신한은행 (제기동역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허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209.8 / 355.8	-	-	-
26	기정	서초동 1718-9	1100.7	200.8	대	서영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45-108	550.3 / 5110.7	-	-	-
						서영건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55.03 / 5110.7			
						이규임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55.03 / 5110.7			
						서일환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55.03 / 5110.7			
						서일문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55.03 / 5110.7			
						최문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3길	55.03 / 5110.7			
						서주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3길	128.4 / 15110.7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서주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3길	73.38/1100.7			
						서일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3길	73.38/1100.7			
27	기정	서초동 1718-5	663.4	115.4	대	김영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6길	1/2	주식회사신한은행 (신한퍼더블유엠 서울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최동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6길	1/2	-	-	-
28	기정	서초동 1691-3	337.8	83.0	대	안병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면 운산리	5/8	-	-	-
						홍장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결궁로 265	1/8			
						김형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0	1/8			
						안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1/8			
	변경	서초동 1691-3	337.8	83.3	대	안병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면 운산리	5/8	-	-	-
						홍장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결궁로 265	1/8			
						김형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0	1/8			
						안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1/8			
29	기정	서초동 1572-6	428.5	73.7	대	박성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1/2	-	-	-
						박지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2/16			
						김재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1/16			
						김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1/16			
						박지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2-3	2/16			
						노선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2-3	216			
	변경	서초동 1572-6	428.5	74.0	대	박성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1/2	-	-	-
						박지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2/16			
						김재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1/16			
						김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1/16			
						박지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2-3	2/16			
						노선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2-3	216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0	기정	서초동 1716-3	1062.8	99.8	대	주식회사 복성산업 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서초동, 서초빌딩)	전부	주식회사우리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당권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동대문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역삼동)	근저당권
31	기정	서초동 1554-2	657.2	113.1	대	주식회사 복성산업 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서초동, 서초빌딩)	전부	주식회사우리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6층(역삼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울영업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6층(역삼동)	근저당권
	변경	서초동 1554-2	657.2	113.2	대	주식회사 복성산업 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서초동, 서초빌딩)	전부	주식회사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2	기정	서초동 1554-3	609	104.9	대	주식회사 복성산업 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서초동, 서초빌딩)	전부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당권
									주식회사아이비 캐이저축은행 (서울영업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스카이저 축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0(논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아이비 캐이저축은행 (서울영업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서초동 1554-3	609	104.8	대	주식회사 복성산업 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서초동, 서초빌딩)	전부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6층(역삼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스카이어축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0(논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아이비케이저축은행(서울영업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4,5층(부전동)	근저당권
									법무법인한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9-4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도곡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근저당권
33	기정	서초동 1719-8	255.5	65.4	대	주식회사 양진양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서초동)	전부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도곡동금융센터)	51(회현동1가)	
34	기정	서초동 1553-24	72.8	72.8	도	광명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6-8	전부	-	-	-
35	기정	서초동 1572-7	654.5	111.4	대	성동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15-71	전부	신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07, 204동 202호(역삼동, 역삼아이파크)	근저당권
	변경	서초동 1572-7	654.5	93.8	대	성동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15-71	전부	신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07, 204동 202호(역삼동, 역삼아이파크)	근저당권
36	기정	서초동 1321-37	168.4	168.4	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전부	-	-	-
37	기정	서초동 1321-38	88.9	88.9	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전부	-	-	-
38	기정	서초동 1321-39	102	102	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전부	-	-	-

※ 지적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편입면적 변경 및 소유자·이해관계인 표시 현행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6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등 8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등 8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연번	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1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	365,883
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압구정동 481번지 일대	118,859
3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78,990
4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구역	잠원동 73번지	85,331
5	신반포25차아파트 재건축구역	잠원동 61-1번지	10,630
6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구역	반포동 30-1번지	13,692
7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구역	송파동 151번지 일대	54,386
8	신동아아파트 재건축구역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	57,387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⑤’의 구역범위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역 변경이 수반될 수 있음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2.03.02.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함

3. 관련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63),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1), 송파구 재건축사업과(02-2147-2888), 용산구 주택과(02-2199-736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7호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2호(2011.10.27.)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변경

결정 구분	등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	응봉동	193-162	3.6	170	7층	60	2	단독	
변경	응봉동	193-162	4.0	170	7층	60	2	단독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35,587	증) 4,055	39,642	-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587	증)4,055	39,642	100.0	복측 도로 포함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7,734	증)2,291	10,025	25.3	
	도 로	3,638	증)2,368	6,006	15.2	복측 도로 포함
	근린공원	2,910	감)1,303	1,607	4.0	절개지 제척
	소 공 원	926	감)926	-	-	
	사회복지시설(획지3)	260	증)2,152	2,412	6.1	공공시설 설치
획지	소 계	27,853	증)1,764	29,617	74.7	
	획지1	26,530	증)2,094	28,624	71.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1,323	감)330	993	2.5	종교시설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5,587	증) 4,055	39,642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608	감) 715	2,893	7.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1,979	증) 4,770	36,749	92.7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332	15	국지 도로	239	응봉동 193-79	응봉동 191-24	일반 도로	-	1990.5.1	-
변경	중로	2	332	15	국지 도로	192	응봉동 193-79	응봉동 191-15	일반 도로	-	1990.5.1	연장축소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1	응봉동 193-82	응봉동 193-199	일반 도로	-	2011.10.27	-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89	응봉동 193-120	응봉동 193-187	일반 도로	-	2011.10.27	폭원축소 연장확대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90	응봉동 193-209	응봉동 205-21	일반 도로	응봉 초교	2001.11.30	-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136	응봉동 193-233	응봉동 193-138	일반 도로	응봉 초교	2001.11.30	폭원 및 연장축소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30	응봉동 191-15	응봉동 191-9	일반 도로	-	2011.10.27	-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37	응봉동 191-15	응봉동 191-9	일반 도로	-	2011.10.27	폭원축소 연장확대
기정	소로	3	1	6~10	국지 도로	833	행당동 95-1	응봉동 191-22	일반 도로	-	1972.3.30	-
변경	소로	3	1	6~10	국지 도로	892	행당동 95-1	응봉동 191-13	일반 도로	-	1972.3.30	연장확대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14	응봉동 193-141	응봉동 193-19	일반 도로	-	2011.10.27	-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125	응봉동 193-141	응봉동 193-19	일반 도로	-	2011.10.27	연장확대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332	중로 2-332	· 도로연장 변경 L : 239m → 192m	· 도로 선형조정에 따른 변경
소로 1-1	소로 3-3	· 도로 시종점변경 · 도로연장 및 폭원변경 L : 51m → 89m, B : 10m → 6m	· 교차로 형태 개선과 암벽등반공원 진입을 위한 도로선형 변경
소로 2-1	소로 3-5	· 도로 시종점변경 · 도로연장 및 폭원변경 L : 190m → 136m, B : 8m → 6m	· 도로 선형조정에 따른 변경
소로 2-2	소로 3-4	· 도로연장 및 폭원변경 L : 30m → 37m, B : 8m → 6m	· 도로 선형조정에 따른 변경
소로 3-1	소로 3-1	· 도로 종점변경 · 도로연장 변경 L : 833m → 892m	· 도로 선형조정에 따른 변경
소로 3-2	소로 3-2	· 도로연장 변경 L : 114m → 125m	· 도로 선형조정에 따른 변경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응봉동 269-3	674,720.4 (2,910)	감) 1,303	673,417.4 (1,607)	77.7.14	응봉 근린공원
폐지	②	공원	소공원	응봉동 191-7	926	감) 926	-	11.10.27	

※ ()는 구역내 면적. 응봉근린공원 전체면적은 성동구고시 제2016-100호(2016.10.28)로
고시된 면적임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 위치 변경 응봉동 193-185 → 응봉동 269-3 · 공원 면적 변경 A : 674,720.4㎡ → 675,174.4㎡ (구역내 A : 2,910㎡ → 3,364㎡)	· 암벽등반공원 진입로개설 및 응봉동 193-185일원 절개지 제척 등 토지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②	소공원	· 폐지	· 사회복지시설부지 확보

3)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응봉동 192-4	260	증) 2,152	2,412	11.10.27	-

■ 사회복지시설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 면적 변경 A : 260㎡ → 2,412㎡	· 지역내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 부지 추가 확보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획지1	200	증) 40	240	
	어린이놀이터		746	증) 54	800	
	어린이집		-	증) 340	340	
	주민운동시설		-	증) 400	400	
	작은도서관		-	증) 165	165	
	주민공동시설		100	감) 25	75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5,587	응봉동 193-162일대	161	-	-	161	-	
변경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9,642	응봉동 193-162일대	161	-	-	161	-	

2)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획지 또는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5,587	획지1	26,530	응봉동 193-125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8% 이하	51m이하 평균13층이하 (최고17층)										
			획지2	1,323	응봉동 193-78일대	종교부지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변경		39,642	획지1	28,624	응봉동 193-125일대 및 193-185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02.1% 이하	45m이하 평균12층이하 (최고15층)										
			획지2	993	응봉동 193-81일대	종교부지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획지3	2,412	응봉동 192-9일대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table><tr><th>구 분</th><th>세 대 수</th></tr><tr><td>합 계</td><td>501 (100.0%)</td></tr><tr><td>전용 60㎡ 이하</td><td>113 (22.55%)</td></tr><tr><td>전용 60~85㎡ 이하</td><td>280 (55.89%)</td></tr><tr><td>전용 85㎡ 초과</td><td>108 (21.56%)</td></tr></table>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1.39%							구 분	세 대 수	합 계	501 (100.0%)	전용 60㎡ 이하	113 (22.55%)	전용 60~85㎡ 이하	280 (55.89%)	전용 85㎡ 초과	108 (21.56%)
구 분			세 대 수																
합 계	501 (100.0%)																		
전용 60㎡ 이하	113 (22.55%)																		
전용 60~85㎡ 이하	280 (55.89%)																		
전용 85㎡ 초과	108 (21.56%)																		
변경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table><tr><th>구 분</th><th>세 대 수</th></tr><tr><td>합 계</td><td>525 (100.0%)</td></tr><tr><td>전용 60㎡ 이하</td><td>106 (20.19%)</td></tr><tr><td>전용 60~85㎡ 이하</td><td>359 (68.38%)</td></tr><tr><td>전용 85㎡ 초과</td><td>60 (11.43%)</td></tr></table>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88.57%							구 분	세 대 수	합 계	525 (100.0%)	전용 60㎡ 이하	106 (20.19%)	전용 60~85㎡ 이하	359 (68.38%)	전용 85㎡ 초과	60 (11.43%)		
구 분	세 대 수																		
합 계	525 (100.0%)																		
전용 60㎡ 이하	106 (20.19%)																		
전용 60~85㎡ 이하	359 (68.38%)																		
전용 85㎡ 초과	60 (11.43%)																		
기정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층수 완화 (7층 ⇒ 평균13층 이하) ● 대상지 동측변의 4개동 평균높이는 응봉산 최고높이의 1/2이하로 계획할 것 ● 중랑천변에 접한 건축물은(현재 건축계획상 106동, 109동 위치) 각각 10층이하, 8층이하로 계획할 것																
변경			●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층수 완화 (7층 ⇒ 평균12층 이하) ● 건축심의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고려하여 일조권 및 채광방향일조 등 완화 ● 건축계획은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20.7.15) 결정내용 참고 (첨부)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부지 북측 15m, 남측 6m, 동측 8m, 서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부지 서측 인접대지변 : 건축한계선 3m																
변경			● 북측, 남측, 동측, 서측 도로 및 인접대지변 : 3m																

3) 개발가능용적률

구 분		산 정 내 용						
기 정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종교용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5,587㎡	27,853㎡	7,734㎡	1,717.23㎡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7,734.00㎡ - 1,717.23㎡ - 0㎡ = 6,016.77㎡ (16.9%)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 + 1.3 × α) = 170 × (1 + 1.3 × 0.2160) = 217.74%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6,016.77㎡ / 27,853.00㎡ = 0.2160 ○ 정비계획용적률 : 218% 이하						
변 경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종교용지)	신설 정비기반시 설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주)	세입자 손실보상 환산부지주)	신설 정비기반시 설 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 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9,642㎡	29,617㎡	10,025㎡	1,700.36㎡	430.44㎡	4,425.60㎡	3,728.27㎡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 + 세입자손실보상 환산부지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10,025.00㎡ + 1,700.36㎡ + 430.44㎡ - 4,425.60㎡ - 3,728.27㎡ = 4,001.93㎡ (10.09%)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 + 1.3 × α) = 170% × (1 + 1.3 × 0.1455) = 202.16%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4,001.93㎡ / (29,617.00 - 1,700.36 - 430.44)㎡ = 0.1455 ○ 정비계획용적률 : 202.1% 이하						

주)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주거사업과-4568. 2019.4.25.)을 반영하여, 향후 세입자대책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확정 후

건축물(사회복지시설)기부채납 규모 결정 (용적률, 공공기여 총량 변동 없음)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환경친화적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배치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 균형 고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 유입을 최소한으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화재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342세대 계획) 501세대 증) 159세대	해당사항 없음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372세대 계획) 525세대 증) 153세대	해당사항 없음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반경200m 이내 광희중학교, 응봉초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하여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가능토록 계획	

자.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차.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획지1	26,530	응봉동 193-125일대	26,53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획지1	28,624	응봉동 193-125일대 및 193-185일대	28,62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획지2	1,323	응봉동 193-78일대	1,323	종교부지
변경	획지2	993	응봉동 193-81일대	993	종교부지
신설	획지3	2,412	응봉동 192-9일대	2,412	사회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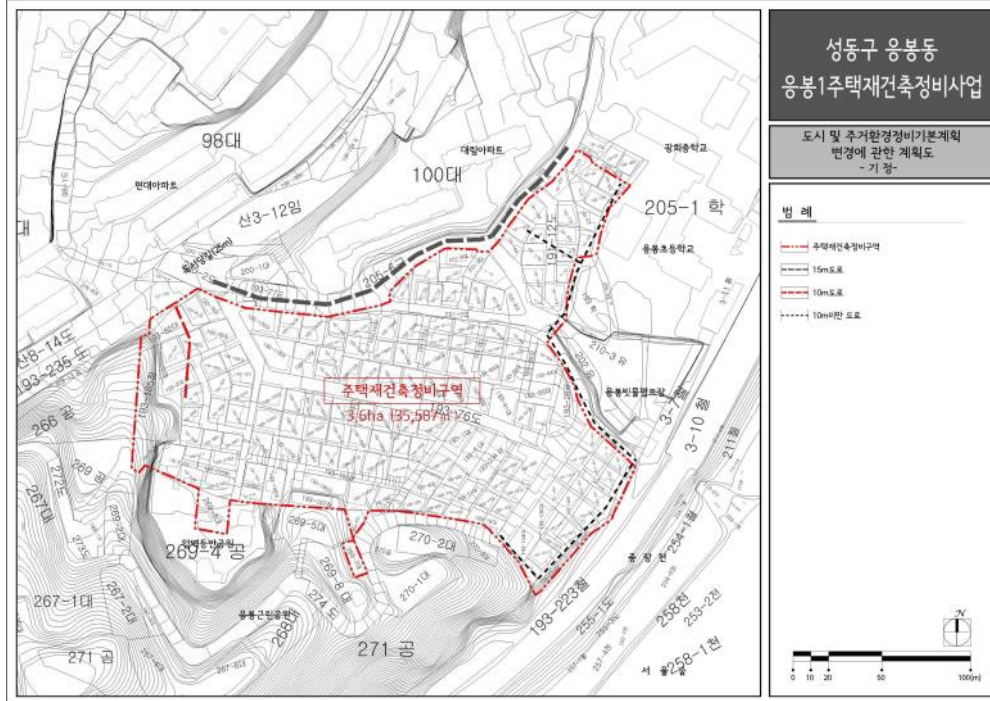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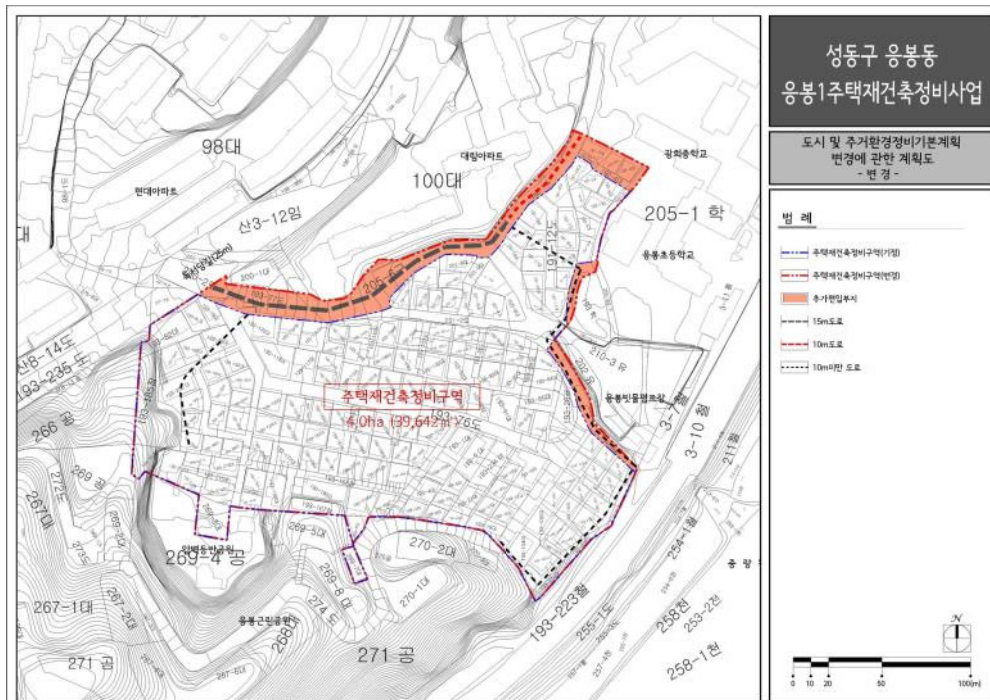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9) 및 성동구 주거정비과(☎02-2286-658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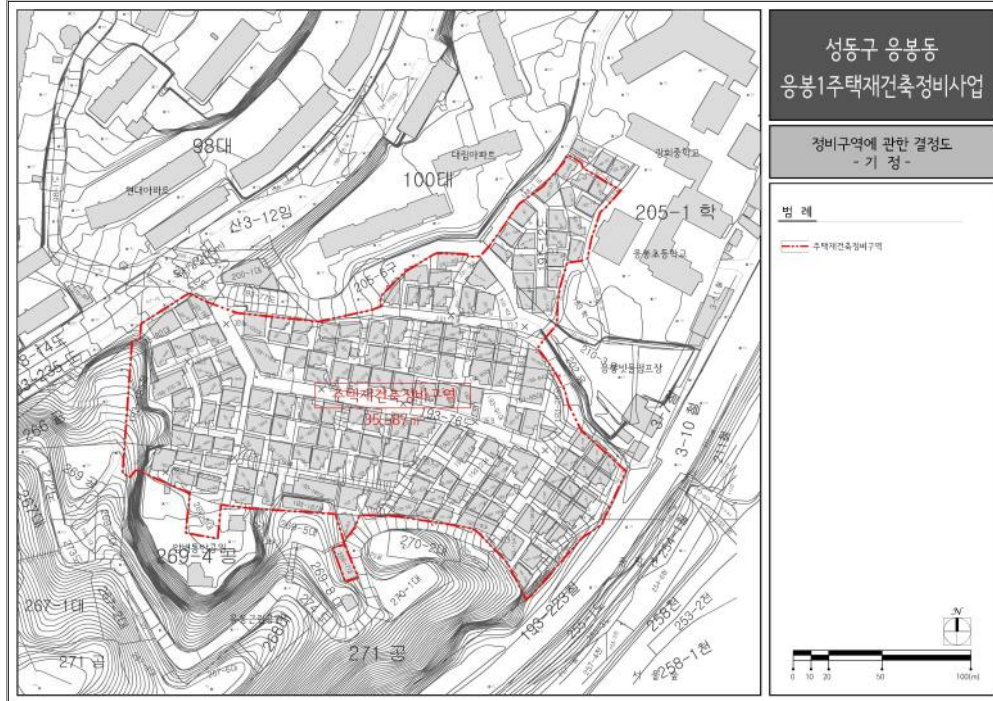
기본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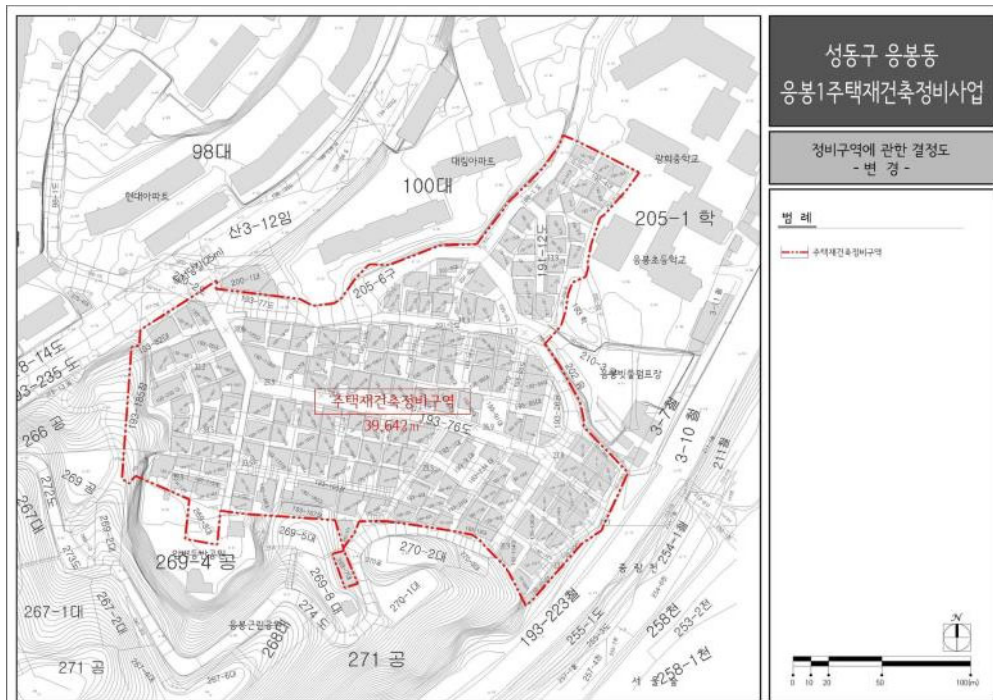
기본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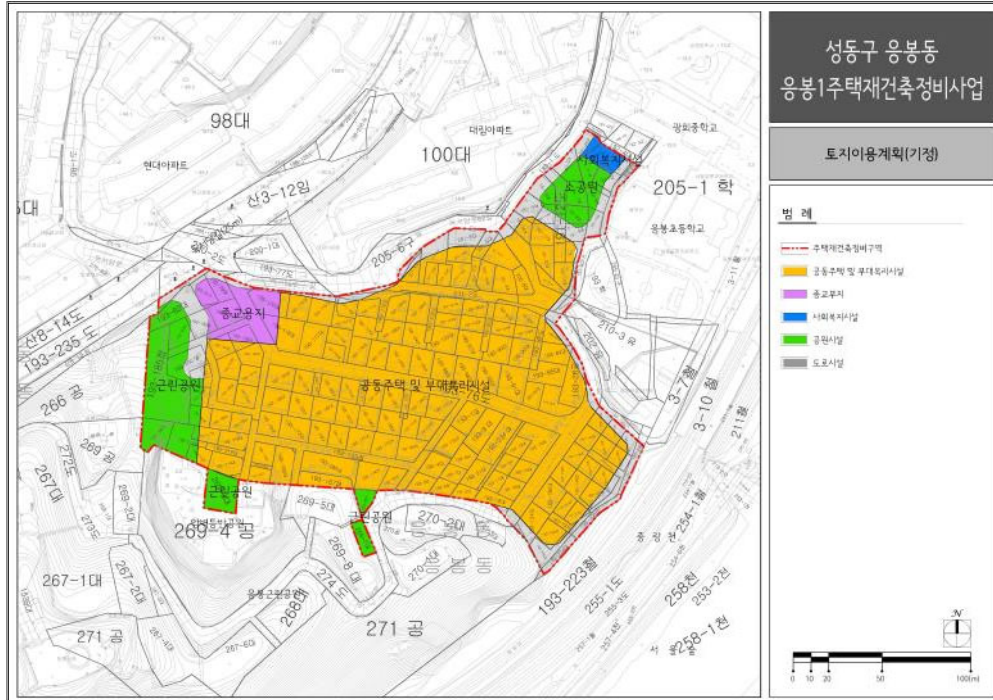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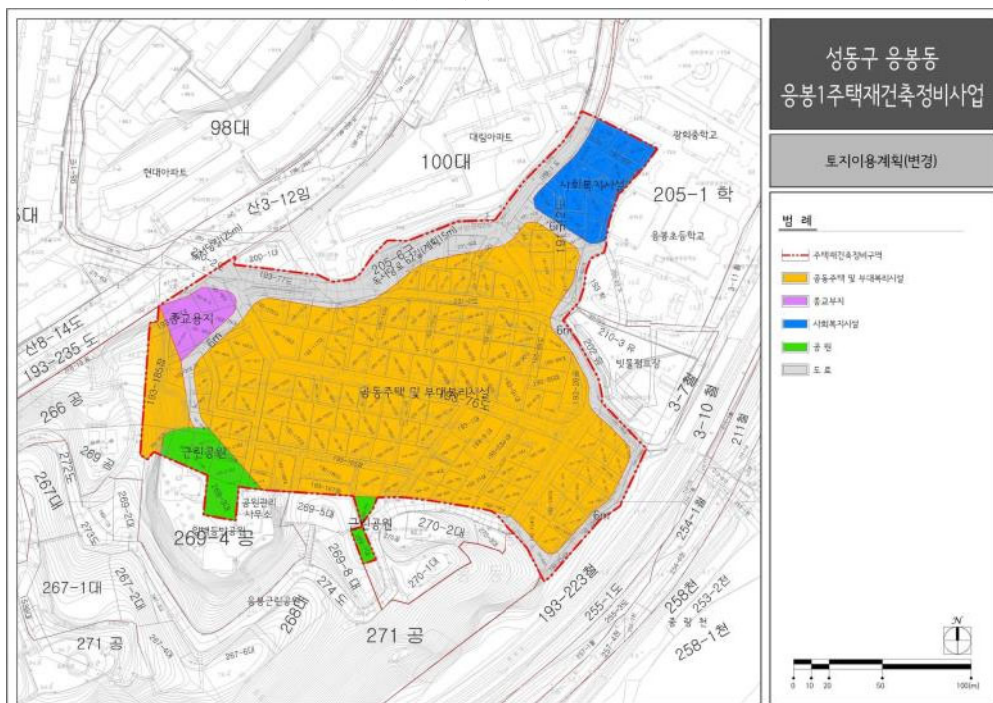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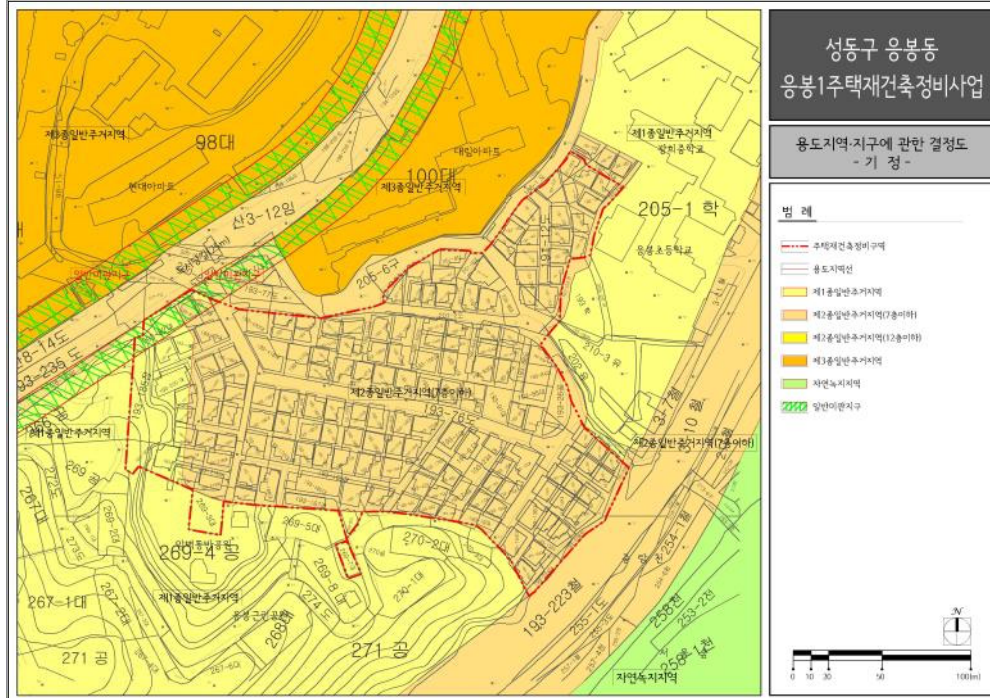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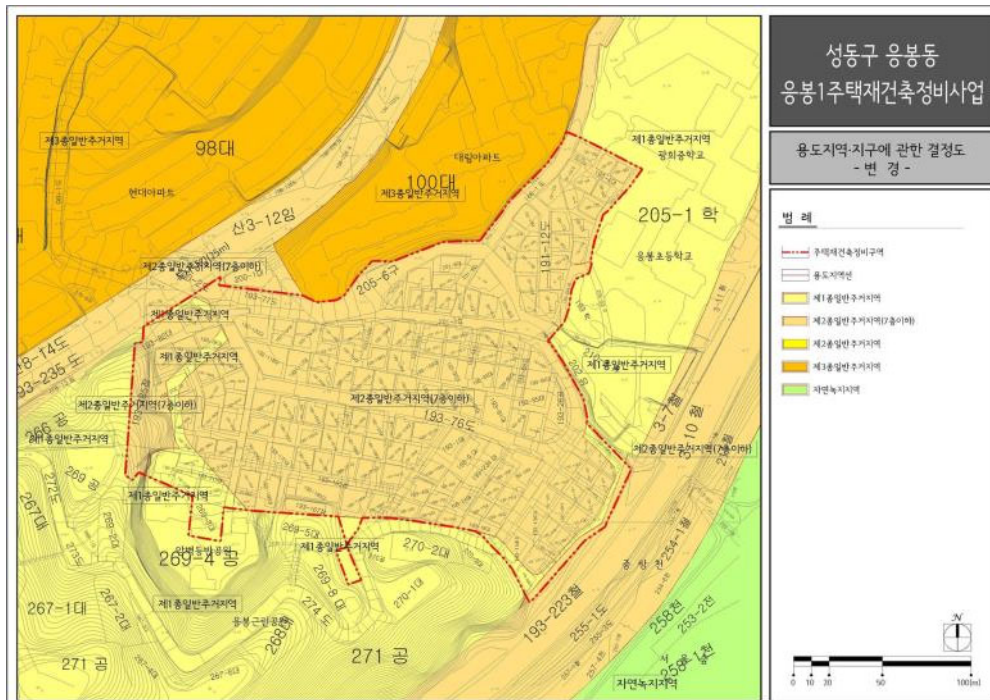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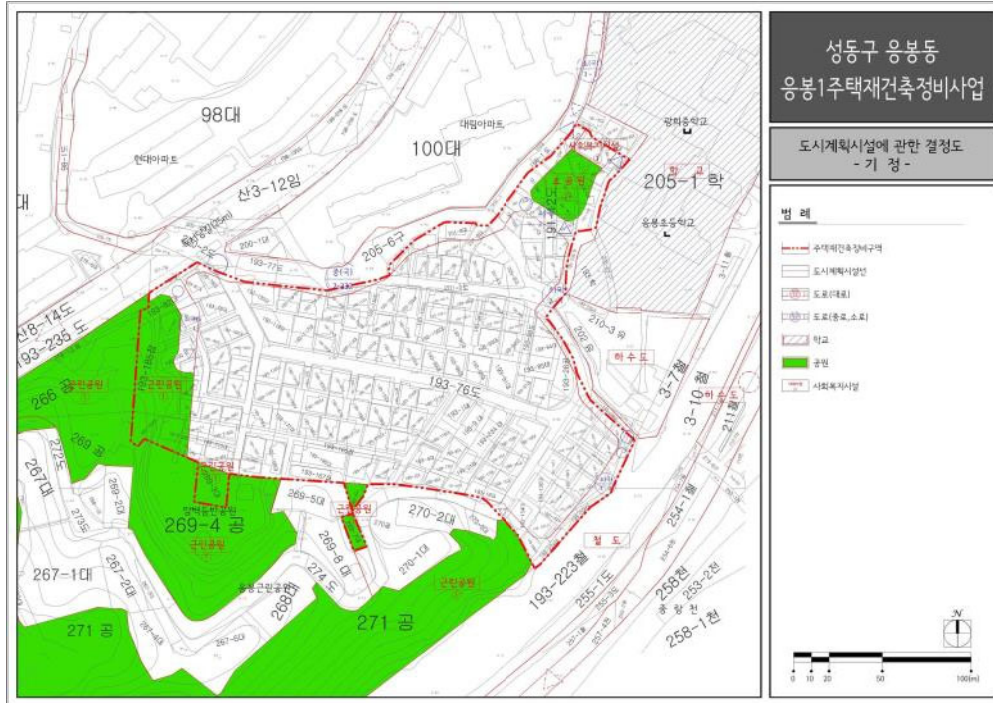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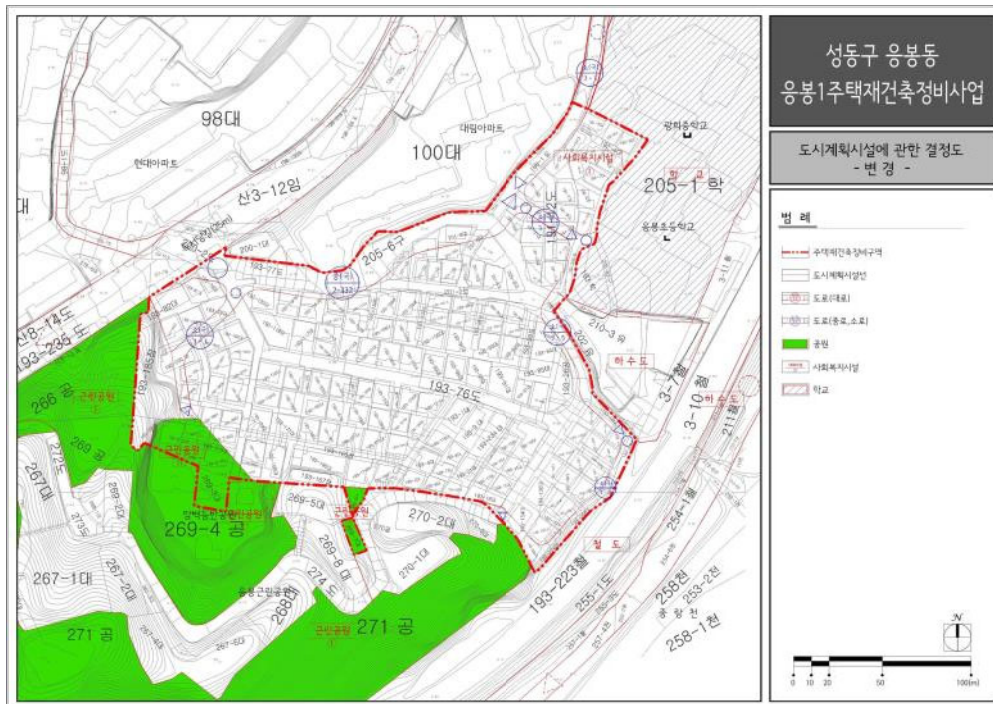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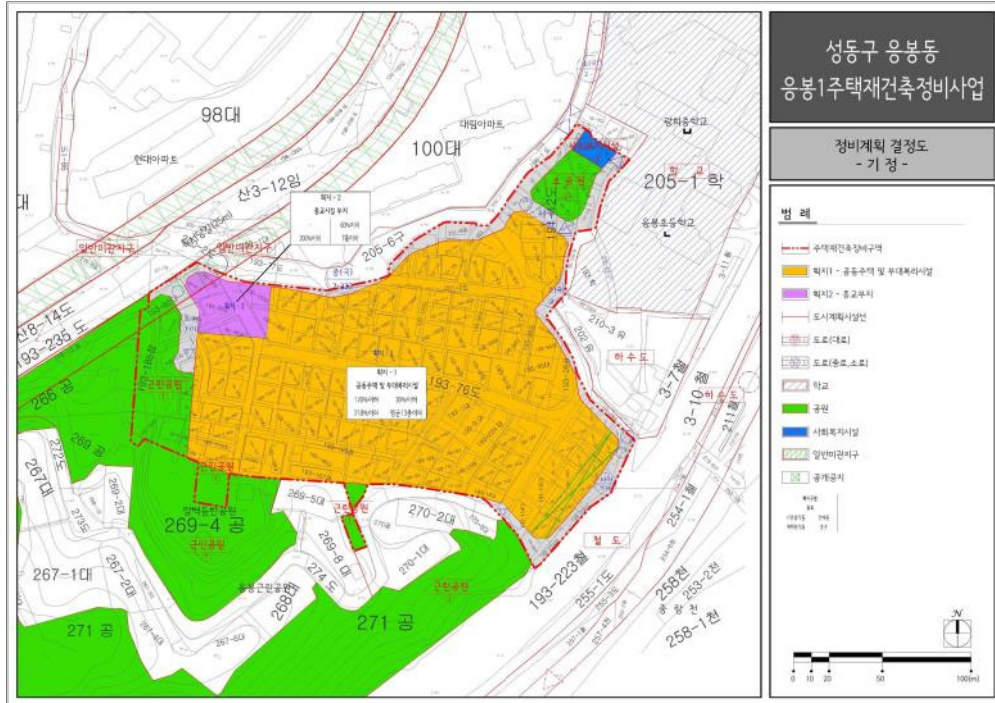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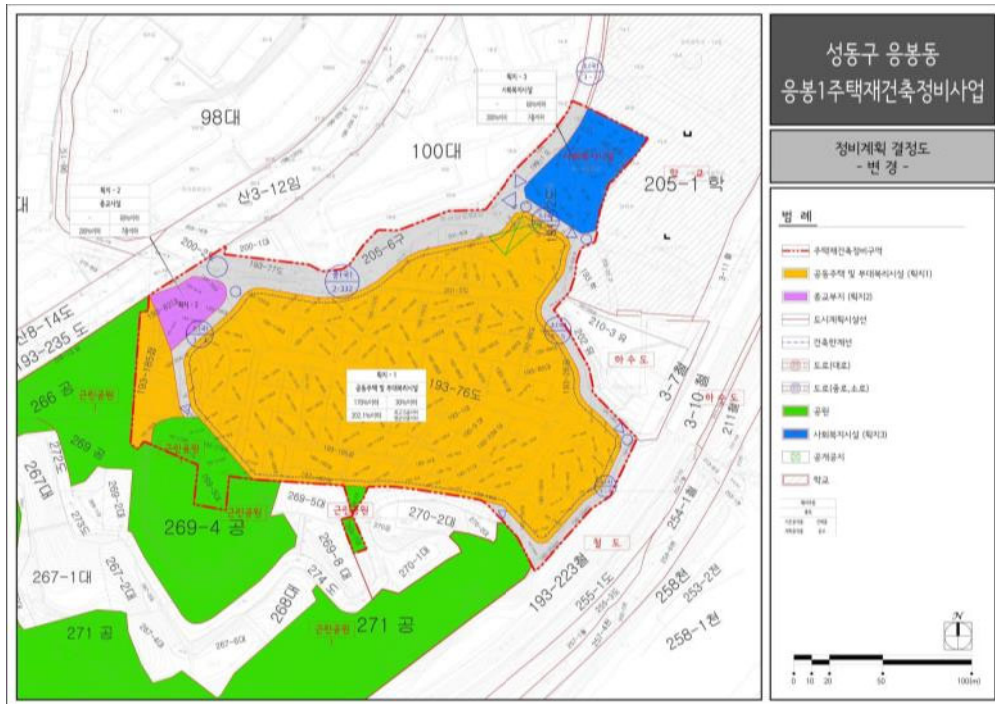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건축계획안 (기정)



건축계획안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0호

**무교 · 다동구역 제19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무교 · 다동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호(1976.04.07.)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460호(1984.7.30.)로 다동구역 제10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08.02.)로 무교 · 다동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된 무교 · 다동구역 제19지구(완료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무교 · 다동구역 제19지구 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무교 · 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일대	109,965.8 (4,371.2)	—	109,965.8 (4,371.2)	

※ ()는 제19지구 편입 면적임

다. 사업시행지구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무교 · 다동 제19지구	다동 10번지 일대	4,371.2	—	4,371.2	완료지구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71.2	—	4,371.2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490.0	—	1,490.0	34.1	
	도 로	1,001.1	—	1,001.1	22.9	既 부담 (다동 10-1, 10-2, 46-1)
	공 원	488.9	—	488.9	11.2	既 부담 (다동 46)
획 지	소 계	2,881.2	—	2,881.2	65.9	
	획 지	2,881.2	—	2,881.2	65.9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상업지역	4,371.2	—	4,371.2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 정	중로	2	204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36	무교동 14	다동 28-3	—	—	—
기 정	중로	3	155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06	다동 39-1	다동 192-1	—	—	—
기 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7	다동 85-3	다동 10-2	—	—	—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②	공원	문화공원	다동 51-5번지 일대	3,316.4 (488.9)	-	3,316.4 (488.9)	-	-

※ ()는 제19지구 편입 면적임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지구	위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 정비지구	19지구	다동 10번지	4,371.2	-	4,371.2	100.0	완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변 경	무교·다 동구역 제19지구	4,371.2	획지	2,881.2	다동 10번지	1	-	1	-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무교·다동 구역 제19지구	4,371.2	획지	2,881.2	다동 10번지	업무 시설	40 이하	640 이하	71.0 이하	완료 지구
변경							43.5 이하			

바.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규제사항(추가)

- 청계천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및 주요 보행로 인접지역에 대하여 도로에 투영된 벽면 길이의 1/2이상 투시형으로 조성

- 3) 공개공지에 관한 계획 :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개공지 운영에 관한 안내판 설치

사.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변경사유

- 재개발사업 완료 된지 36년이 지난 무교·다동 제19지구에 대해 주변 여건변화 대응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7호에 의거 경미한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고,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생관리지침(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에 부합하도록 조성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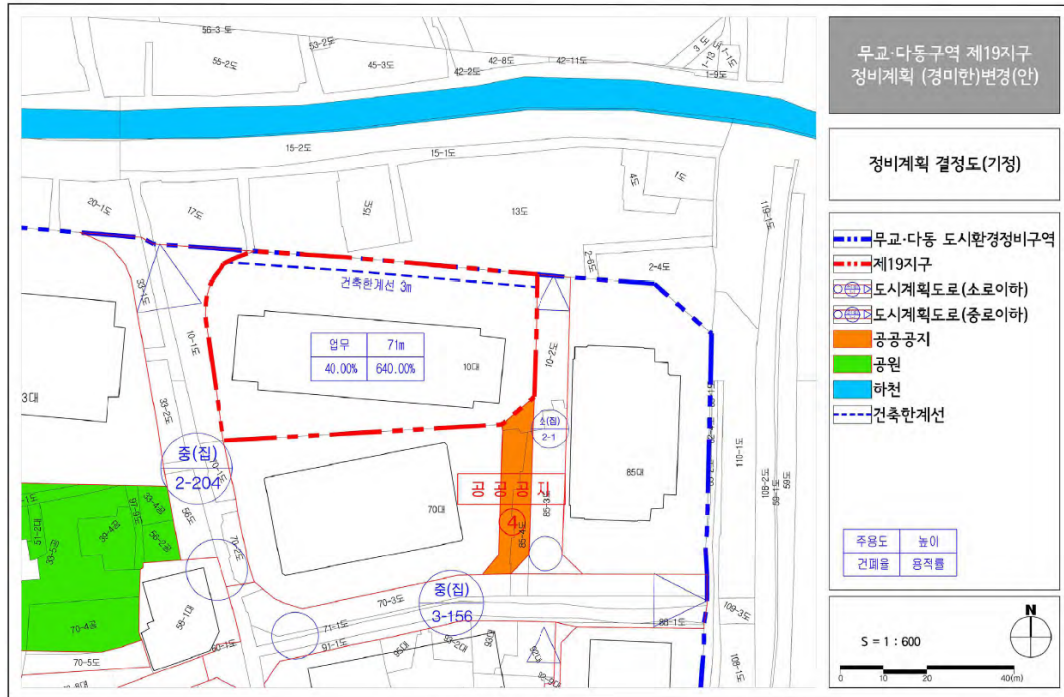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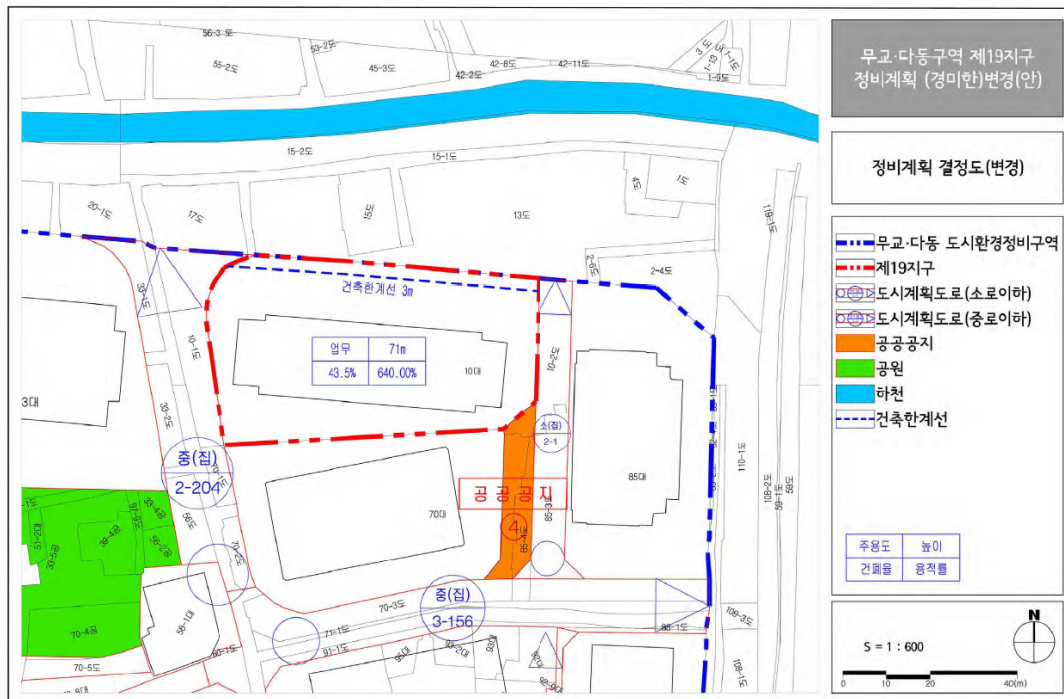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및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74)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결정도(기정)



■정비계획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78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두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65번길 **, ***호 (일산동)	일시: 2020-07-20 11:52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61톤 초과	처분일: 2020. 8.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10.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장석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884번길 15-11, ***동 ***호 (남동)	일시: 2020-05-12 05:27 장소: 마곡중앙로 내용: 제한 축하중 1.85톤 초과	처분일: 2020. 6.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8. 31.
유왕석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 * (위천면)	일시: 2020-06-04 16:00 장소: 올림픽대로 여의하류IC 내용: 제한 축하중 1.35톤 초과	처분일: 2020. 6.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8.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0.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790호

2020년도 제1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2020. 9. 17.(목) 14:00 ~ 17:00
- 나. 심의장소: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다. 심의대상: 일반안전 총 11건 16작품
- 라. 심의결과: 승인 6작품, 부결 10작품
-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0년 제12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 결과		비 고
				승 인	부 결	
1	강서구 마곡지구 C11-1블록 쿠쿠마곡빌딩	조각	Wormhole	0		
2	방배동 1028-1, 2번지 방배그랑자이	조각	Contour of a Life	0		
3-1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0 (여의도동 35-1) 여의도우체국	조각	심연의 비상		0	
3-2		조각	선물		0	
4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A1-2BL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공동주택	조각	WAVE- 순수의 공간Ⅱ		0	
5-1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A1-4BL 위례신도시 A1-4BL 공동주택	조각	공간놀이1808		0	
5-2		조각	ARTIFICIAL GARDEN	0		
6	강남구 역삼동 823-33, 34 역삼동오피스텔신축공사	조각	어울림	0		

2020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0년 제12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 결과		비 고
				승인	부결	
7	강남구 개포로 110길36(일원동 690-1번지) 디에이치포레스트	조각	바람의 탐	0		
8	송파구 방이동 42번지 외 5필지 잠실역 웰리리라테라스	조각	유토피아(사슴)		0	
9	서초구 서초동 1502-12 외 1필지 서초동 2030청년주택	조각	내면의 소리	0		
10-1	금천구 독산동 1006번지 일원 독산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공사	조각	Blossom-우리가 사랑하는 정원		0	
10-2		조각	빛의 숲-비밀의 문		0	
10-3		조각	Blooming (블루밍)		0	
10-4		조각	Urban Forest (어반 포레스트)		0	
11	서초구 반포동 32-8번지 일대 디에이치라클라스	조각	자연의 소리 II		0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795호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민간위탁 운영기관(또는 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 가. 위 탁 명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 나. 위탁기간 : 2021.1.1. ~ 2023.12.31.(3년)
- 다. 위탁비(' 21년) : 금2,370,410,000원(금이십삼억칠천사십일만원)
 - 부가가치세 및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임
 - 연간 위탁금액은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편성 심의, 계약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2020년 민간위탁금 : 2,351,000천원
- 라. 위탁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마. 공고기간 : 2020.9.25(금) ~ 11.5(목) (40일간)
- 바. 응모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시행령 제92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휴 ·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이어야 하고
- 컨소시엄 등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불가(단독 운영)
- 수탁기관 종사자는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및 겸직 제한됨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 기구 · 장비 · 시설 및 기술수준을 갖추고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법인 · 단체 · 사업자 등)으로서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활성화에 대한 추진의지와 실현가능성 제시 업체

2. 사업설명회

- 가. 일 시 : 2020.10.13(화) 17:30(시간 미정)
- 나.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다. 사전신청 : 반드시 업체별 1인만 참석(명함 및 신분증 소지)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0.8(목) 17시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사업 설명회 참가 사전신청 및 참가자 명단 제출

3. 공모참가 등록 및 신청서 제출(방문 접수)

가. 접수일 : 2020.11.5(목) 10: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제출일 17: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사업팀

다. 주 소 :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4. 현장실사

가. 일 시 : 2020.11.11(수) ~ 11.16(월) (예정)

나. 대 상 : 공모 참여기관 및 단체

다. 조 사 자 : 외부 공인회계사 1명, 소상공인정책과 직원(2인1조)

※ 민간위탁의 공모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조사내용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여부
- 제출된 제안서상의 업체현황 내용(단체 및 기관 규모, 사무실 위치 등) 사실 확인
- 최근 3년간 결산내역(공인회계사 회계검사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마. 조사결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사 참고자료로 제공

5. 민간위탁 기관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0.11.26(목) 14:30~ (예정) ※ 확정 시 추후 별도 통보

나.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대회의실

다. 심사위원 : 7명 내외(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

※ 신청 기관과 특수 관계자(이사, 감사, 기관 대표와 관련된 자 등)는 위원 제외

라. 진행방법 : 참가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 신청기관에서 PT로 발표 : 발표자는 반드시 위탁사업 참여자로 제한
- 참가인원 : 발표자 포함 총 2인 이내

마. 발표순서 : 참가자가 적격자심의위원회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참가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바. 평가방법 :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평가(30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평가
- 정성평가(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6. 신청서 제출서류(방문 접수) ※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적 평가자료 2부
- 정성적 평가자료(사업 제안서) 13부 : 원본 2부, 심의본 11부
- 제안발표용 PPT 자료(제안서 요약본) 13부 : 원본 2부, 심의본 11부
- USB 1개
- 참가 공문 1부

7. 위탁사무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가. 야시장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야시장 참가상인 모집 · 선정 · 관리 및 교육, 심사위원 선정
- 다. 야시장 시설물 설치 · 관리 및 보관
- 라. 안전대책 수립 · 시행, 우천 · 화재 예방 · 의료 및 편의 도모
- 마. 감염병 등 위기사항 극복대책
- 바. 야시장 브랜드 관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 사. 수탁 재산관리, 사업 결과보고 및 회계처리 · 정산, 만족도 조사
- 아. 타 부서(기관) 행사와 야시장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자. 기타 야시장 운영을 위해 시와 협의한 사항

8. 위탁운영 조건

- 가.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단체)은 우리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나.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 다. 수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라.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서울시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공고 이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 또는 위촉된 근무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종사자는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및 겸직 제한)
- 사. 수탁기관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서울시에 사전 통지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야 하고 업무 특성상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전 검토 후 승인이 필요함
- 아. 서울시는 수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 자.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 · 폭언 ·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지도 · 점검 시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차. 그 외 지도 · 점검(연 1회 이상, 성과점검 포함), 회계감사(연 1회)에 적극 협조하여 지적 사항은 즉각 개선해야 함
- 카.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 사항에 대하여 수시 · 정기 보고하여야 함
- 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이므로 반드시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종합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함 (평가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9. 기타사항

-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신청기관)에게 있음
- 다.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 바.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서울시가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선정업체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음

10. 문의안내

- 가. 담 당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사업팀 안병엽 주무관
- 나. 주 소 :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 다. 연락처 : 이메일(byahn717@seoul.go.kr), 사무실(02-2133-5554),
FAX(02-2133-0714)
- 라. 서울시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에 제안 요청서 및 공고문 게시

【 유의사항 】

- 해당 공고문은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신청 기관 또는 단체는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함께 숙지하여 신청할 것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제안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함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로 문의 후 작성할 것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02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권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붙임 1>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3호터널	2019-11-18 09:42:21	09누6033	10,300	YANG MEILAN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255번길 149 110동702호 (운양동, 풍경마을한강한라비발디아파트)
2	남산1호터널	2019-11-18 10:33:29	34호7881	10,300	(주)아이언렌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8 204호(삼성동, 경인빌딩)
3	남산3호터널	2019-11-18 11:27:22	04우1674	5,150	CHAE, HENAN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21 CSH UNIT 15244 BOX 662 APO AP 96205 121 CSH UNIT 15244 BOX 662 APO AP 96205
4	남산1호터널	2019-11-18 13:24:28	34호7881	10,300	(주)아이언렌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8 204호(삼성동, 경인빌딩)
5	남산1호터널	2019-11-18 16:58:42	35머7929	10,300	이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28 1420호(용두동, 동의보감타워)
6	남산3호터널	2019-11-18 17:15:22	22버9700	10,300	LI DOUKUAN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14길 12-5 (면목동)
7	남산1호터널	2019-11-19 11:39:43	19모9658	10,300	와이에스지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호(당주동, 케이-223호)
8	남산3호터널	2019-11-19 13:21:03	37나0209	10,300	주식회사 선택옵트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1967번길 79-8(하갈동) (하갈동)
9	남산1호터널	2019-11-19 13:47:42	55노1912	10,300	HAQUE AHSANUL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 334-56 ok원룸 306
10	남산3호터널	2019-11-19 16:42:00	61너6196	10,300	미아트 몽골리안 에르라인즈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3층(순화동, 순화빌딩)
11	남산3호터널	2019-11-19 18:25:42	57버8968	10,300	(주)엘바컴퍼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7 201호(방배동)
12	남산1호터널	2019-11-19 19:32:56	54나7241	10,300	보람카네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27층(서소문동, 태평로빌딩)
13	남산3호터널	2019-11-19 20:54:35	30루3137	10,300	LI YILUN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74-38 산웅주택A동204호
14	남산1호터널	2019-11-20 10:09:16	40도7529	10,300	주식회사 뉴엘마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80번길 9(관산동) (관산동)
15	남산3호터널	2019-11-20 13:53:03	69나4948	10,300	AL MEREKHI MASHEL ATTIQ J H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20 (이태원동)
16	남산1호터널	2019-11-20 14:06:54	35머7929	10,300	이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28 1420호(용두동, 동의보감타워)
17	남산1호터널	2019-11-20 16:32:49	19너1310	10,300	PIAO YONGWAN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12-4 지층101호(구로동)
18	남산1호터널	2019-11-20 18:28:38	37마3349	10,300	주식회사 스틸프라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15 비동 422호(양재동, 트윈타워)
19	남산3호터널	2019-11-20 20:01:09	28가2826	10,300	YUH CHOON HEE L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88길 3 1601호 (이촌동, 점보아파트)
20	남산1호터널	2019-11-20 20:38:11	68가4555	10,300	(주)동성엠앤아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2 114호(변동, 효성네오인텔리언)
21	남산3호터널	2019-11-21 10:43:41	62루9076	10,300	(주)한셀아이앤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7길 8 304호(우면동)
22	남산3호터널	2019-11-21 11:05:37	06수9383	10,300	AMANOVA ASSEL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19번길 27 102호(교동)
23	남산1호터널	2019-11-21 14:35:06	138루6050	10,300	주식회사 패스트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12층
24	남산1호터널	2019-11-21 16:55:44	63누0640	10,300	(주)다슬아이티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에이동 2801호(가산동, 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5	남산3호터널	2019-11-21 17:55:20	33호5619	10,300	주식회사 에이블라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41 2층 448호(창천동)
26	남산1호터널	2019-11-21 19:22:29	37누1685	10,300	파트너즈파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33-5 2층,3층(논현동)
27	남산3호터널	2019-11-21 19:41:54	19더6689	10,300	SUH DAVID JUNGHOON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4동 2601호(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28	남산3호터널	2019-11-22 07:23:28	260우2012	10,300	(주)에이치앤에이치투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09 103동 2004호(우면동, 서초참누리예코리치아파트)
29	남산1호터널	2019-11-22 12:19:42	69소3249	10,300	(주)티엠앤앤드컨설팅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군청길58
30	남산1호터널	2019-11-22 12:24:47	45오2477	10,300	(주)대통운수	경기도이천시마장면마도로177
31	남산3호터널	2019-11-22 13:33:18	20누4782	10,300	주식회사 나래푸드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96-9(회덕동) (회덕동)
32	남산1호터널	2019-11-22 14:00:17	20누4782	10,300	주식회사 나래푸드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96-9(회덕동) (회덕동)
33	남산3호터널	2019-11-22 20:23:43	31우0384	10,300	TALLOCOY TIRSO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68번길 53-5 (주)디엠에스 (대곶면)
34	남산3호터널	2019-11-25 07:50:45	41하7735	10,300	주식회사 굿윌파트너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101-15호(서초동, B1층)
35	남산3호터널	2019-11-25 10:17:59	122하1041	10,300	기아자동차(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양재동) (양재동)
36	남산3호터널	2019-11-25 10:19:56	20여8302	10,300	메타싱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 808호(마곡동, 마곡나루역캐슬파크)
37	남산3호터널	2019-11-25 14:26:06	14가5448	10,300	ZHANG YUHA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60길 49 203호(제기동)
38	남산3호터널	2019-11-25 14:53:16	27하5185	5,150	하나캐피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20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9	남산3호터널	2019-11-25 14:59:26	50오2515	10,300	주식회사 월드모어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읍별내2로203-2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40	남산3호터널	2019-11-25 15:20:02	31거2177	10,300	YUAN FENGHE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24 202호(사우동)
41	남산1호터널	2019-11-25 15:42:58	151투5653	10,300	JIN QUANYI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79번지 17호 101호 101호
42	남산1호터널	2019-11-25 16:00:23	52하5998	10,300	롯데렌탈(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8층(호계동, 신원비전타워)
43	남산1호터널	2019-11-25 16:29:48	03버0568	10,300	주식회사 앤어거스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7길 26 1층(이도일동)
44	남산1호터널	2019-11-25 17:46:28	47오2975	5,150	(주)에이케이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534 211호(가산동)
45	남산3호터널	2019-11-25 19:01:10	33소3533	10,300	AN YONGJUN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4길 20 101동 305호(봉명동, 민선홈피스텔)
46	남산3호터널	2019-11-25 19:39:35	07노5727	10,300	(주) 다원하우징	경기도 광주시 진토길 7-2(목동) (목동)
47	남산1호터널	2019-11-25 20:35:32	333조6646	10,300	주식회사 파인브이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8층 809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1차)
48	남산1호터널	2019-11-26 11:18:07	03버0568	10,300	주식회사 앤어거스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7길 26 1층(이도일동)
49	남산3호터널	2019-11-26 12:24:04	55구9557	10,300	JIN LONGDAO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59번길 17 301호(정왕동)
50	남산3호터널	2019-11-26 14:22:02	64로3543	10,300	진영에프에이(주)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9 1006호(오전동, 대현테크노월드)
51	남산1호터널	2019-11-26 16:20:00	04로4356	10,300	주식회사 테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15번길 7(석운동) (석운동)
52	남산3호터널	2019-11-26 18:50:34	57로0522	10,300	(주)명보프린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97-22(장항동) (장항동)
53	남산3호터널	2019-11-27 14:03:44	33서1751	10,300	JIN ZHUQUA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26 902동1602호(운중동, 판교대방노블랜드아파트)
54	남산1호터널	2019-11-27 15:17:44	26허0986	10,300	롯데렌탈(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8층(호계동, 신원비전타워)
55	남산1호터널	2019-11-27 17:25:16	18조7866	10,300	지스중공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1길 53 106동 804호(상계동, 두산아파트)
56	남산3호터널	2019-11-28 07:06:28	29우0219	10,300	주식회사 아리온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73 2층(야당동)
57	남산1호터널	2019-11-28 14:59:36	13나4926	10,300	LI ZIJIAN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0길 78 902호(화곡동)
58	남산3호터널	2019-11-29 07:24:12	01조0998	10,300	주식회사 엑시옴 (XIOM)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16(박달동) (박달동)
59	남산1호터널	2019-11-29 10:44:03	37무5737	10,300	JIN MINGZHE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41 JY팰리스 803호(춘의동)
60	남산3호터널	2019-11-29 17:00:24	25러6096	10,300	(주)디아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비614동(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벨리5차)
61	남산1호터널	2019-11-29 17:45:19	37너0260	5,150	NGUYEN MY PHUC THI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CAMP HUMPHREYS CAMP HUMPHREYS
62	남산3호터널	2019-11-29 19:49:11	59머6080	10,300	SMILING JACQUELINE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CAMP HUMPHREYS CAMP HUMPHREYS
63	남산3호터널	2019-11-29 20:13:42	59머6080	10,300	SMILING JACQUELINE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CAMP HUMPHREYS CAMP HUMPHREYS

<붙임 2>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19-12-02 09:20:51	34호7881	10,300	(주)아이언렌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8 204호(삼성동, 경인빌딩)
2	남산1호터널	2019-12-02 09:57:42	29오3344	10,300	CUI CHUNZHE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4길 14-9 301호(본오동)
3	남산1호터널	2019-12-02 14:36:14	53버0428	10,300	CUI XIONGDE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2길 23-1 202호 (원곡동)
4	남산1호터널	2019-12-02 17:36:46	20고1859	10,300	지케이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208호(역삼동)
5	남산1호터널	2019-12-02 18:06:24	51호6161	10,300	SK네트웍스(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영화동)
6	남산3호터널	2019-12-02 18:10:30	67고4356	10,300	(주)이스트인터랙티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1 11층(대치동, 대원빌딩)
7	남산3호터널	2019-12-02 19:32:25	61오1189	10,300	LI JINLAN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38번길 19 에이타워 708호(소사본동)
8	남산1호터널	2019-12-02 20:40:36	15노3468	10,300	(주)인코디앤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2길 31 2층(신사동)
9	남산1호터널	2019-12-02 20:57:17	58버2411	10,300	BAHRAMOV ELYO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684번길 14 (주)오로라씨에스(상하동)
10	남산3호터널	2019-12-03 09:20:13	38고7010	10,300	(주)메이케이코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9길 25(원효로3가) (원효로3가)
11	남산1호터널	2019-12-03 10:12:29	24나7375	10,300	XU CHENGYOU	경기도 평택시 송월로15번길 30 305호 (신장동, 신미아파트)
12	남산3호터널	2019-12-03 10:26:28	49호4116	10,300	비마이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305-307호(자양동,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13	남산1호터널	2019-12-03 11:37:22	34호2544	10,300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오토렌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8 101호(양평동2가, 태양빌딩)
14	남산3호터널	2019-12-03 12:59:55	45호1474	10,300	SK네트웍스(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영화동, 삼양빌딩)
15	남산1호터널	2019-12-03 14:24:29	20부6518	10,300	(주)에이치엔케이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9길 55(우면동) (우면동)
16	남산1호터널	2019-12-03 18:11:33	24루3158	10,300	CUI CHANGLU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관광로276번길 78-3 201호(매탄동)
17	남산3호터널	2019-12-03 20:29:05	01하4727	10,300	(주)황금렌트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4길 4-1(성내동) (성내동)
18	남산1호터널	2019-12-04 07:15:33	21호8860	10,300	비엔케이캐피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9층(부전동,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19	남산1호터널	2019-12-04 12:17:02	57고5593	10,300	주식회사 경기건설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846(창전동) (창전동)
20	남산3호터널	2019-12-04 17:29:06	56호0768	10,300	SK네트웍스(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영화동)
21	남산3호터널	2019-12-04 17:43:06	34호1507	10,300	(주)우리렌트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88-1 지하1층(화곡동)
22	남산1호터널	2019-12-04 18:19:38	35모7832	10,300	주식회사 문엔지니어링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곡현로268
23	남산3호터널	2019-12-05 12:37:37	07호6133	10,300	(주)신세계렌트카산업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636번길 14-23 301호(용문동)
24	남산3호터널	2019-12-05 13:32:08	49호3311	10,300	주식회사 캠프렌터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62길 13 2층(잠실동)
25	남산1호터널	2019-12-05 13:36:34	47소7363	10,300	SHEN HAN LI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51길 61 101동 918호(명일동, 명일엘지아파트)
26	남산1호터널	2019-12-05 15:57:05	47소7363	10,300	SHEN HAN LI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51길 61 101동 918호(명일동, 명일엘지아파트)
27	남산1호터널	2019-12-05 17:14:43	17도7511	10,300	WEN JUNHUI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42길 25 101동 805호(청담동, 청담아이파크)
28	남산1호터널	2019-12-05 17:17:32	10호3140	10,300	재경렌트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7호(인계동)
29	남산3호터널	2019-12-05 17:56:09	64거5585	10,300	(주)우드메탈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남가로1770
30	남산1호터널	2019-12-06 12:46:36	24러3452	10,300	PINEDA JISAN MAE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66번길 55 606호(생연동)
31	남산1호터널	2019-12-09 10:46:18	34호7881	10,300	(주)아이언렌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8 204호(삼성동, 경인빌딩)
32	남산1호터널	2019-12-09 13:06:30	25오5475	5,150	(주)동양골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42길 6 3층(한남동, 청암빌딩)
33	남산1호터널	2019-12-09 14:25:53	16마9938	10,300	(주)에이비씨랩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1914호(수서동, 수서타워)
34	남산1호터널	2019-12-09 16:24:47	63로5588	10,300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6(논현동) (논현동)
35	남산3호터널	2019-12-09 17:11:18	287머4889	10,300	SHI HONGYAN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탄리로 32 202호(부평동)
36	남산3호터널	2019-12-09 17:35:57	07보0323	10,300	(주)엔하이엔비(N9 E&C)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10 806호(광장동, 리버힐오피스텔)
37	남산1호터널	2019-12-10 07:42:01	56호0521	10,300	SK네트웍스(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영화동)
38	남산1호터널	2019-12-10 15:46:31	33여9142	10,300	(주)디에스컨텐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9 504-1호(운중동, 마크시티엘로우)
39	남산3호터널	2019-12-10 17:55:04	39누5552	5,150	(주)청해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2(만수동) (만수동)
40	남산1호터널	2019-12-11 15:16:09	61저0490	10,300	(주)오리엔탈워치컴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07(압구정동) (압구정동, 갤러리아명품관EAST지하1파텍빌딩)
41	남산1호터널	2019-12-12 11:03:37	26거8287	10,300	(주)북일푸드식자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거로 49(서촌동) (서촌동)

연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42	남산1호터널	2019-12-13 07:08:37	20너6059	10,300	SOHN HEE YOUNG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29번길 4-1 E동302호(언남동)
43	남산1호터널	2019-12-13 12:55:26	08소8308	10,300	합자회사 코리아여행사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2층(무실동, 시내시티타워)
44	남산3호터널	2019-12-13 14:28:57	37도0148	10,300	(주)코리아스카이어엔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12(서초동 (서초동, 대호빌딩))
45	남산1호터널	2019-12-13 14:48:33	65수0340	10,300	(주)레드키플러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관양동 (관양동, 더블유에이스타워))
46	남산3호터널	2019-12-13 14:50:47	54나7241	10,300	보람카네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27층(서소문동, 태평로빌딩)
47	남산1호터널	2019-12-13 15:15:02	10호3140	10,300	재경렌트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7호(인계동)
48	남산3호터널	2019-12-13 15:38:20	54노6320	10,300	SOO KOK CHIANG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55길 1-11 1층(이태원동)
49	남산3호터널	2019-12-13 19:28:50	42더9593	10,300	(유)코리아밸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28 2층(간석동, 명동빌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0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을 위한 열람공고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호(2020.2.6.)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폐지)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I. 열람 기간 : 2020. 10. 05. ~ 2020. 10. 19.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지원팀 (☎02-2133-6293)

III.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광진구 구의동 245-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5-11	812.6	감)812.6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광진구 구의동 245-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폐지	• 사업시행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포 기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 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12.6	-	812.6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812.6	812.6	-	
	준주거지역	812.6	감) 812.6	-	100.0	

□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진구 구의동 245-11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812.6	사업시행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포기로 인하여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해당사항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폐지)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폐지	-	-	광진구 구의동 245-11	812.6	단독개발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단독개발	사업시행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포기로 인하여 획지계획 폐지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폐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불허용도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폐지
지정용도	●공동주택주1)(주거복합. 단, 비주거용도(부대복리시설 포함) 지하1층에서 지상2층 내 설치)	폐지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불허용도	●사업시행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포기로 인하여 획지계획 폐지
A	지정용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폐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 폐 율	용도지역에 환원 (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밀도적용	
용 적 률		
최고높이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폐지	● 용도지역 환원(준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밀도적용	● 사업시행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포기로 인한건 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폐지

다. 역세권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폐지)

라.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폐지)

마. 차량동선 ·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폐지)

바. 공공기여 계획(폐지)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06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의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이의제기 안내
 -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나.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다. 이의 제기 방법
 - 인터넷 : www.sisul.or.kr 접속 후 교통사업 → 기타교통업무 → 혼잡통행료 징수 → 혼잡통행료 이의제기 클릭·작성
 -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대상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1호터널	2019-10-16 12:15:44	55호3027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10,3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2	남산1호터널	2019-10-16 12:58:56	55호3027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10,3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3	남산1호터널	2019-10-16 18:17:16	38하4581	(주)한화	10,30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	남산1호터널	2019-10-17 18:12:23	27하9024	윤태미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5	남산1호터널	2019-10-18 09:11:48	56호7973	주식회사 에이엔팩	10,300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6	남산3호터널	2019-10-18 09:31:18	69호7522	안봉용	10,300	세종특별자치시 운주산로
7	남산3호터널	2019-10-18 11:04:06	39하4842	주식회사 피코시스템즈	10,3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	남산3호터널	2019-10-18 12:10:23	45호6420	(주)온아시아	10,3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	남산1호터널	2019-10-18 14:01:46	17하3938	(주)에이에스케이 인터내셔널	10,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남산1호터널	2019-10-18 16:01:19	30하0528	(주)레스	10,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1	남산3호터널	2019-10-18 16:38:05	19하5521	초애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4나길
12	남산1호터널	2019-10-18 16:58:07	61호2093	현대건설(주)	1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3	남산1호터널	2019-10-18 18:56:06	38호7616	최은경	10,300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14	남산1호터널	2019-10-21 07:01:06	39하4477	트리앤쓰리	10,300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5	남산1호터널	2019-10-21 11:26:50	67호9239	CHRISTOD DAVID ALLAN	10,300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남산1호터널	2019-10-21 15:01:27	01호0328	YASER SALEM SULTAN SALEM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17	남산1호터널	2019-10-22 12:23:42	41하8197	정교빈	5,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8	남산3호터널	2019-10-22 20:00:27	133하5317	박근노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19	남산1호터널	2019-10-22 20:33:14	13호3477	유진영	10,300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20	남산3호터널	2019-10-22 20:46:46	48로3698	(주)한화	10,30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1	남산1호터널	2019-10-23 08:00:18	51호9951	PARK SANG SHIN	1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남산3호터널	2019-10-23 11:52:32	57하1001	박상만	10,3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	남산3호터널	2019-10-23 13:09:59	44하7321	PHOMMALINE CIRASAK	10,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0나길
24	남산1호터널	2019-10-23 13:16:00	57호4214	장태민	10,3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	남산1호터널	2019-10-23 13:26:30	34호8175	정재형	10,3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6	남산1호터널	2019-10-23 16:12:03	51호9920	주식회사 케이티씨	10,300	강원도 원주시 행가리1길
27	남산1호터널	2019-10-23 18:40:56	15하0431	주식회사 신우아이앤티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28	남산3호터널	2019-10-23 19:47:13	19허7125	해어랑	10,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길
29	남산1호터널	2019-10-24 15:44:53	40호8757	하우스터디부천송내 센터독서실(강덕환)	10,3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30	남산1호터널	2019-10-24 17:05:17	34호1206	탁정훈	10,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1길
31	남산3호터널	2019-10-25 07:41:56	45하0856	충환이네	10,3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2	남산3호터널	2019-10-25 08:31:50	69호7522	안봉용	10,300	세종특별자치시 운주산로
33	남산1호터널	2019-10-25 12:09:07	34하0428	PEI HAIFENG	10,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4길
34	남산1호터널	2019-10-25 16:46:36	51호8995	주식회사 미디어고릴라	10,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35	남산3호터널	2019-10-25 17:48:09	67호2635	(주)웰크론한텍	10,3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36	남산1호터널	2019-10-25 18:04:58	39호9564	윤현욱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나길
37	남산1호터널	2019-10-25 18:54:58	28도3871	사계쇼프(백승 현)	10,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6길
38	남산1호터널	2019-10-25 20:29:34	28도3871	사계쇼프(백승 현)	10,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6길
39	남산1호터널	2019-10-28 08:06:09	44하2102	박은주	10,3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8길
40	남산1호터널	2019-10-28 17:43:55	44하0400	홍경수	5,15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1	남산1호터널	2019-10-29 10:02:24	38호8479	강성진	10,300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길
42	남산1호터널	2019-10-29 10:20:47	09하5669	ONES 에듀	10,3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로
43	남산3호터널	2019-10-29 11:49:47	56호1469	SK이노베이션(주)	1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4	남산1호터널	2019-10-30 11:56:07	29하1292	김길태	10,300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45	남산1호터널	2019-10-30 12:40:18	39하6430	민동진	10,3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46	남산3호터널	2019-10-30 18:10:24	61하6313	조항준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3가길
47	남산1호터널	2019-10-30 20:31:45	29호5524	홍다애	5,1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8	남산3호터널	2019-10-31 09:56:20	15누2789	주식회사 펄세스	10,3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9	남산1호터널	2019-10-31 12:33:07	155허6663	심리코칭연구소 C&C	10,300	광주광역시 남구 수박등로48번길
50	남산1호터널	2019-10-31 16:07:27	12소5146	세무법인 올림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1	남산3호터널	2019-10-31 19:39:22	51호3822	오창준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2	남산1호터널	2019-10-31 20:31:54	39호3240	(주)가온누리커 뮤니케이션	10,300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0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동림이앤씨(주)
2. 대 표 자: 임동원(1971. 10.27)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8-1, 4층(예관동, 동림비즈센터)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62호
6. 등록취소일자: 2020. 9. 25.
7.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16호

도시관리계획(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8호(2018.05.31.)로 최종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0.10. 6. ~ 2020.10.19.)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9)
-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2)

다. 도시관리계획(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일대	-	증) 1,064,794.0	1,064,794.0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변경	
계		1,064,974.0	-	1,064,974.0	1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63,366.1	-	1,063,366.1	99.9	99.9	
	제1종일반주거지역	26,660.3	-	26,660.3	2.5	2.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0,768.9	감) 15,550.9	75,218.0	8.5	7.1	
	제3종일반주거지역	945,936.9	증) 15,550.9	961,487.8	88.9	90.3	
상업 지역	소계	1,427.9	-	1,427.9	0.1	0.1	
	근린상업지역	1,427.9	-	1,427.9	0.1	0.1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확지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 1	청담동 134-21 일대	-	증) 61,978.0	61,978.0	
신설	특별계획구역 2	청담동 134-16	-	증) 3,360.2	3,360.2	
신설	특별계획구역 3	삼성동 2-5 일대	-	증) 7,258.8	7,258.8	
신설	특별계획구역 4	삼성동 6	-	증) 5,946.5	5,946.5	
신설	특별계획구역 5	삼성동 3-3	-	증) 3,234.8	3,234.8	
신설	특별계획구역 6	삼성동 4-6 일대	-	증) 7,571.9	7,571.9	
신설	특별계획구역 7	삼성동 17	-	증) 9,974.3	9,974.3	
신설	특별계획구역 8	삼성동 19-4 일대	-	증) 27,721.8	27,721.8	
신설	특별계획구역 9	역삼동 712-3 일대	-	증) 24,161.6	24,161.6	
신설	특별계획구역 10	역삼동 716	-	증) 5,316.6	5,316.6	
신설	특별계획구역 11	역삼동 716-10	-	증) 3,456.7	3,456.7	
신설	특별계획구역 12	역삼동 758 일대	-	증) 12,363.1	12,363.1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	청담동 134-20	-	증) 3,686.0	3,686.0	

라. 관계도서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2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유)푸른들유통 등 261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 10. 01 ~ `20. 10. 20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0. 10. 01 ~ 2020. 10. 20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장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6, 팩스번호 : 02-2133-4904
 -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 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명단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	96오6198	(유)푸른들유통	2020-08-25 09:25	서울특별시	학여울역~개포우성아파트사거리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	74보6525	(주)멘토스포츠아카데미	2020-08-24 16: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60,000
3	93거9692	(주)양촌형제토건	2020-08-25 08:53	경기도 김포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4	81부0464	(주)올물로	2020-08-27 21:06	서울특별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	55로5986	(주)천지인부동산중개법인컨설팅	2020-08-28 17:3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	82부4141	(주)케이티	2020-08-04 09:0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	서울40바1708	(주)코리아에프씨캐딜락	2020-08-25 08:48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	128호7685	나래식품(주)	2020-08-12 10:50	전라북도 임실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	33우0711	비와이에이치주식회사	2020-08-28 20:0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	60하3694	서정분(여성)	2020-07-11 10:13	서울특별시	광진숲나루~아차산역(어린이공원후문)	전용차로위반	50,000
11	21하5290	안원선(BRCM더마켓부띠끄)	2020-08-12 16: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	52호4765	에스에이치에프앤알	2020-08-06 09:0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3	67호3338	웍스프레즐서울과기대점(공릉점)(김재선)	2020-08-03 08:53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	60하3228	이우정(홀리데이)	2020-08-23 14:57	경기도 용인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	63하6800	재단법인자생의료재단	2020-08-13 07:1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	36오0918	제이트론아이앤씨(주)	2020-08-28 20: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	44호3124	주)굿벨콘	2020-08-06 08:46	경기도 성남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	49하1403	주식회사개념원리에듀	2020-08-04 17:18	서울특별시	한남IC~ 잠원IC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	54라2145	주식회사구구파트너스	2020-08-24 09:4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	52하0748	주식회사국민사랑	2020-08-13 12:4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	37구3428	주식회사드림뷰	2020-08-24 19:50	경기도 의정부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	85마0176	주식회사반달	2020-08-26 07:39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	38보8383	주식회사신화투자그룹	2020-08-25 13:13	충청남도 당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	42조3731	주식회사에이원알에스	2020-08-20 10:36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28	전용차로위반	50,000
25	242도1495	주식회사영림하우시	2020-08-28 14:28	서울특별시	상계동 169-453	전용차로위반	50,000
26	04도5318	주식회사소스카이엔티	2020-08-20 13:16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44-21 가로판매대51	전용차로위반	50,000
27	90로8649	주식회사올물로	2020-08-24 14:34	서울특별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8	23나2766	주식회사유니마크로	2020-08-20 16:01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385-3	전용차로위반	50,000
29	03루1282	주식회사이공미디어인	2020-08-18 18:09	서울특별시	삼성교~종합운동장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0	30주1700	주식회사케이저유그룹	2020-08-24 20: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1	63호0620	주식회사팜스베이	2020-08-12 19:37	경기도 이천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	159호8425	지병기(기은정빌)	2020-08-18 10:56	부산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	46호4832	정호유통(전성준)	2020-08-13 18:29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	21호7648	홍경택(덴앤틱)	2020-08-04 20:30	경기도 안양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	49로8272	A**	2020-08-28 17:49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	24라0131	B**	2020-08-25 19:1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7	14다1802	C**	2020-08-21 09:24	대전광역시	염곡IC~청계산입구삼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38	64나4664	C**	2020-08-25 18: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9	33루7573	H**	2020-08-27 12:44	경기도 수원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	47보4413	L**	2020-08-26 07:15	경기도 시흥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1	53보0368	L**	2020-08-26 05:17	경기도 광명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총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	66수1504	L**	2020-08-13 16:47	서울특별시	한남IC~잠원IC 경부고속도로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3	17나7500	L**	2020-08-26 11:2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4	101루1858	P**	2020-08-24 08:27	광주광역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	26머1716	P**	2020-08-28 18:5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6	33수3225	S**	2020-08-30 15:03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	12수9935	W**	2020-08-24 20:39	인천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8	39서6044	Z**	2020-08-28 19:33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	49서2170	Z**	2020-08-26 20:29	경기도 부천시	양화대교북단~양화대교남단	전용차로위반	50,000
50	22하1429	Z**	2020-07-12 15:59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	08고9879	Z**	2020-08-27 15:17	경기도 안양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	266로9175	가**	2020-08-25 10: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셋방길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3	113라9413	강**	2020-08-21 17:54	서울특별시	양화대교북단~양화대교남단	전용차로위반	50,000
54	52조1735	강**	2020-08-27 20:1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	37조4984	강**	2020-08-25 19: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6	48모7607	강**	2020-08-24 09:44	경기도 광명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7	35수1555	강**	2020-08-24 08:02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	52구6601	강**	2020-08-25 11:02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59	40모2764	강**	2020-08-26 20:35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0	20호3675	경**	2020-08-07 08:00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1	경기14보5907	고**	2020-08-25 11:20	경기도 안양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60,000
62	80서9565	고**	2020-08-25 07:30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	서울81배2517	고**	2020-08-28 16: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4	서울32자3855	공**	2020-08-24 14: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5	26저5857	곽**	2020-08-24 18:4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	경기34모5735	곽**	2020-08-24 19:41	경기도 의정부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7	서울32사9170	권**	2020-08-28 18:03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8	서울89자1361	권**	2020-08-26 07:58	서울특별시	화랑대사거리~태릉선수촌	전용차로위반	50,000
69	서울31아2751	김**	2020-08-21 07:52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0	64루8754	김**	2020-08-24 19: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	41버2280	김**	2020-08-20 13:46	경기도 안양시	여의도동 44-21 가로판매대55	전용차로위반	50,000
72	37허0913	김**	2020-08-09 16:33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	13하7583	김**	2020-08-14 08:55	경상남도 양산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4	48부1469	김**	2020-08-26 16:15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	41라0956	김**	2020-08-05 12:46	서울특별시	봉림교~신림역 4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6	30구6538	김**	2020-08-26 09:48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	22도5459	김**	2020-08-26 19:5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8	123두1481	김**	2020-08-28 20:47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9	49저2632	김**	2020-08-24 18:2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0	서울83바1323	김**	2020-08-26 15:06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81	64거0383	김**	2020-08-26 09:0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2	141머6422	김**	2020-08-26 20:22	경기도 용인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3	63거1978	김**	2020-08-27 21:45	서울특별시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84	서울31사3917	김**	2020-08-24 18:4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	02로6528	김**	2020-08-30 14:35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6	48더4757	김**	2020-08-27 18:14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	105두7188	김**	2020-08-21 18:35	경기도 남양주시	학여울역~대치우성 아파트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8	26무7661	김**	2020-08-28 07:57	경기도 광주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	326거3134	김**	2020-08-24 18: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0	14허8241	김**	2020-08-19 20:09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91	161다3374	김**	2020-08-28 17:31	충청남도 당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2	22라4612	김**	2020-08-26 08:07	전라북도 전주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3	69무7596	김**	2020-08-25 17:39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4	서울06타7788	김**	2020-08-25 07:5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95	61마7681	김**	2020-08-27 17:33	경기도 고양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6	294마1590	김**	2020-08-27 20:30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7	24저6689	김**	2020-08-28 07:44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8	81도2840	김**	2020-08-28 08:3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9	20보2944	김**	2020-08-26 20:27	경기도 평택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서울31아5620	김**	2020-08-26 20: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40저7763	김**	2020-08-25 20:2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40나0616	김**	2020-08-28 14:45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59오3920	김**	2020-08-26 17:37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34조4721	김**	2020-08-25 18:44	전라북도 전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273소2491	김**	2020-08-14 15:04	경기도 고양시	은평뉴타운~지축교차로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19수0412	김**	2020-08-24 17:32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32가0955	김**	2020-08-22 12:51	경기도 남양주시	논현역~신사역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24라0145	김**	2020-08-28 17:20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67구7476	김**	2020-08-26 19:09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63저2925	김**	2020-08-25 09:26	경기도 오산시	학여울역~개포우성아파트사거리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25마9605	김**	2020-08-20 17:36	서울특별시	서초IC~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81다3535	김**	2020-08-28 17:28	부산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47가7852	김**	2020-08-25 09:1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32버0242	김**	2020-08-26 18:2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32버0242	김**	2020-08-25 19:1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128하2459	김**	2020-08-19 16:4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서울45고7292	나**	2020-08-25 09:4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20하0218	남**	2020-08-14 1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31더1689	노**	2020-08-25 19:3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15나5269	마**	2020-08-25 18:53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96더8030	모**	2020-08-25 17:42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22서0340	문**	2020-08-28 17:13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27여3949	문**	2020-08-28 18:08	경기도 하남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48누5893	문**	2020-08-27 07:2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12가7681	박**	2020-08-24 16:0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서울32아1383	박**	2020-08-27 20:30	경기도 구리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26머7137	박**	2020-08-25 18:1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90라8079	박**	2020-08-24 17:4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서울31바8941	박**	2020-08-26 17:04	서울특별시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08부6231	박**	2020-08-26 19:14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13마3168	박**	2020-08-24 17:29	강원도 태백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서울48도4758	박**	2020-08-29 12:30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총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서울89자9434	박**	2020-08-28 18:5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333마3107	박**	2020-08-26 19:58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81나0535	박**	2020-08-28 07:5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서울31사8195	박**	2020-08-28 20:33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37	47더5903	박**	2020-08-29 15: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19가2236	배**	2020-08-25 13:06	서울특별시	풍납사거리~강동구청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61모7419	배**	2020-08-27 16:23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59가3907	백**	2020-08-29 13:02	인천광역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서울32자4417	백**	2020-08-28 20:33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40거8724	백**	2020-08-25 13:54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82오7511	변**	2020-08-24 17:24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14히5146	변**	2020-08-19 20:07	충청남도 논산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49가8812	변**	2020-08-13 18:15	서울특별시	양화대교북단교차로~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34보1574	서**	2020-08-24 17:46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14서1359	선**	2020-08-28 14:19	경기도 파주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45리8657	설**	2020-08-27 14:06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37 아일렉스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서울91자3260	성**	2020-08-26 19:2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16구1493	손**	2020-08-25 15:39	서울특별시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26-1 (응답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12고2884	손**	2020-08-26 19:4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66부2148	손**	2020-08-25 20:25	경기도 부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54구1187	신**	2020-08-26 19:3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366저1196	신**	2020-08-06 19:32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46리5378	신**	2020-08-25 08:2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51마5053	신**	2020-08-25 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40루9077	신**	2020-08-27 17:5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09모1211	신**	2020-08-30 17:1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34부6195	신**	2020-08-27 08:1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57주8826	신**	2020-08-24 13:21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140 (잠실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83저4854	심**	2020-08-29 18:41	강원도 평창군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68구6676	안**	2020-08-28 18:12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66하0478	안**	2020-07-16 14: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61서4366	안**	2020-08-26 20:15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15노8569	안**	2020-08-24 12:02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42거2714	안**	2020-08-13 18:18	경기도 수원시	시흥대로~대림삼거리 방향(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06리0188	양**	2020-08-28 18:55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396구3782	엄**	2020-08-26 17:23	경기도 의왕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63오9929	오**	2020-08-26 15:11	경기도 고양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60조9741	오**	2020-08-25 18:30	경기도 양평군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24두8045	오**	2020-08-26 09:3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92도8015	왕**	2020-08-25 08:41	경기도 이천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145하2693	우**	2020-08-10 17:17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69거2815	유**	2020-08-26 18:38	인천광역시	양화대교북단~양화대교남단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69조3767	유**	2020-08-07 17:59	경기도 하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서울83사1528	윤**	2020-08-28 19:42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24루8159	윤**	2020-08-24 11:12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53-3 미라클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04수9089	윤**	2020-08-24 08:5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01너7990	이**	2020-08-27 19:0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62리4576	이**	2020-08-24 09:3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12라1231	이**	2020-08-24 16: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82	85서6388	이**	2020-08-28 20:12	경기도 안산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서울32자2101	이**	2020-08-27 20:4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167하1735	이**	2020-08-01 13:25	경기도 안양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60도8939	이**	2020-08-26 10:23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25라6076	이**	2020-08-28 18:20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22고0941	이**	2020-08-25 20:0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46호4053	이**	2020-08-17 16:20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46호4053	이**	2020-08-20 09:52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46호4053	이**	2020-08-20 09:51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68도0904	이**	2020-08-24 17: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328마8847	이**	2020-08-27 19:08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95조9385	이**	2020-08-26 19:36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179보2199	이**	2020-08-25 16:0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57루4641	이**	2020-08-25 07:3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01모1505	이**	2020-08-28 20:27	경기도 하남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28오4067	이**	2020-08-26 17:37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서울성북파9723	이**	2020-08-27 18:33	서울특별시	종로5가역~동대문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40,000
199	96도4700	이**	2020-08-28 11:0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60여2645	이**	2020-08-28 07:5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09로2093	이**	2020-08-28 17:55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96누9460	이**	2020-08-26 19: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325부4258	이**	2020-08-26 17:3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서울31자7096	이**	2020-08-29 21:14	서울특별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61노1659	이**	2020-08-30 20:5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47니5176	이**	2020-08-26 08:07	경기도 양평군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45도9701	임**	2020-08-29 14: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91주8860	임**	2020-08-29 11: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57마8151	임**	2020-08-24 07:19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39여0710	임**	2020-08-28 21: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228서8218	임**	2020-08-26 14:2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03부8983	장**	2020-08-21 11:27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6 국회의사당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서울32아3179	장**	2020-08-28 19:34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97수1723	전**	2020-08-21 17:23	서울특별시	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 교차로 (한양3차)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91우7777	전**	2020-08-28 19:49	경기도 광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41루1634	전**	2020-08-27 07:56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41루1634	전**	2020-08-25 10:24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39모5400	전**	2020-08-28 19:2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서울31바2613	정**	2020-08-24 10:10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45구5153	정**	2020-08-05 18:15	경기도 안산시	장지역~장지역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02보9922	정**	2020-08-18 18:09	서울특별시	삼성교~종합운동장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09거8174	정**	2020-08-28 20:20	강원도 홍천군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22소1726	정**	2020-08-27 07:41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27수4856	정**	2020-08-28 16: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81부9955	정**	2020-08-27 18:32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67도0155	정**	2020-08-28 12:3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14우2872	정**	2020-08-20 17:40	서울특별시	양화대교 북단~남단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28	서울36바1302	정**	2020-08-24 08:2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09소1668	조**	2020-08-25 14:40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60다9735	조**	2020-08-27 20:13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02모1943	조**	2020-08-29 17:13	서울특별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24우8969	조**	2020-08-26 17:20	서울특별시	상계동 737 상계주공3단지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20호2911	최**	2020-07-29 17:50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50거7660	최**	2020-08-27 09:17	경기도 하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20나3450	최**	2020-08-24 17:45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13라2758	최**	2020-08-24 09:11	서울특별시	수색교교차로~수색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69부0159	최**	2020-08-04 15:35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02조8723	최**	2020-08-25 18:36	경기도 고양시	여의도 하나투어금융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37모7345	최**	2020-08-29 11:01	충청남도 서산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66모8659	최**	2020-08-25 17:45	경상북도 김천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41주3871	최**	2020-08-28 18:40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30저9319	최**	2020-08-29 10:58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372가5636	최**	2020-08-24 19:05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27누7355	최**	2020-08-24 18:12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09보2256	최**	2020-08-26 08:54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84수4364	최**	2020-08-24 10:52	서울특별시	종로5가 231-4 가로판매대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69마4408	탁**	2020-08-26 09:45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18가1843	하**	2020-08-26 10:3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176저6222	한**	2020-08-27 08: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비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서울31사5680	한**	2020-08-25 08:3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56하8702	한**	2020-08-07 20:3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13수3438	한**	2020-08-20 15:56	경기도 고양시	종로2가 84-8 대한기독교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64가3670	한**	2020-08-19 17:55	경기도 부천시	압구정동 489 가로판매대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82라7071	함**	2020-08-26 12:43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서울32사2764	함**	2020-08-26 19:39	서울특별시	한양아파트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145호1393	허**	2020-08-28 19:2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서울31사5216	허**	2020-08-26 09:0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15고1717	허**	2020-08-25 18:37	인천광역시	여의도 하나투어금융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90누8850	허**	2020-08-25 15:42	경기도 과천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서울32사9116	현**	2020-08-26 20:4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66구2395	황**	2020-08-28 10:50	경기도 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 고 시

◆ 도봉구고시 제2020-14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115(2020.8.6.)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최초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30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본 내용을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및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2091-37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5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30번지 일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도봉동 공공공지 조성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2,987㎡

- 내 용 : 토지의 보상 및 공공공지 조성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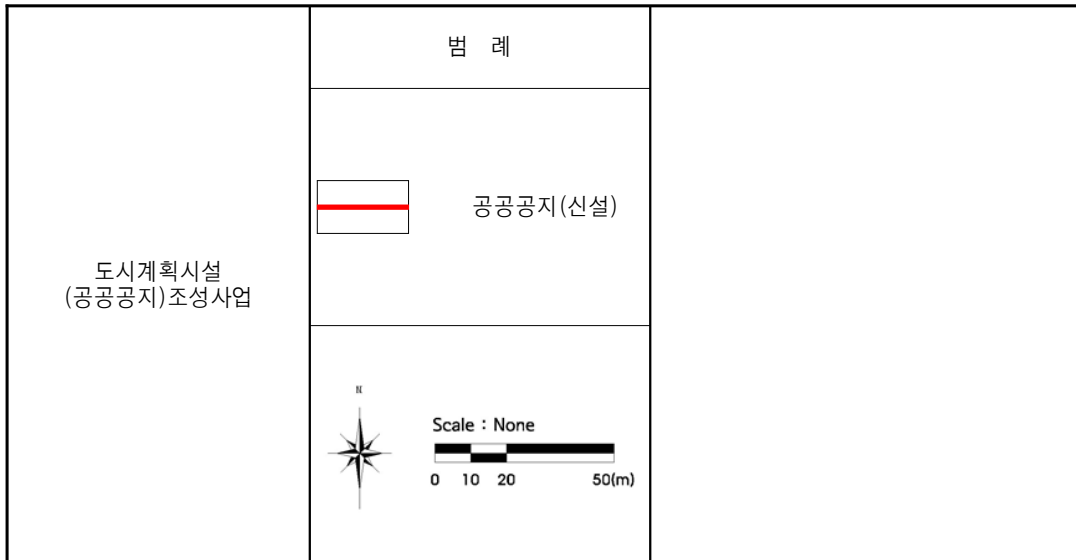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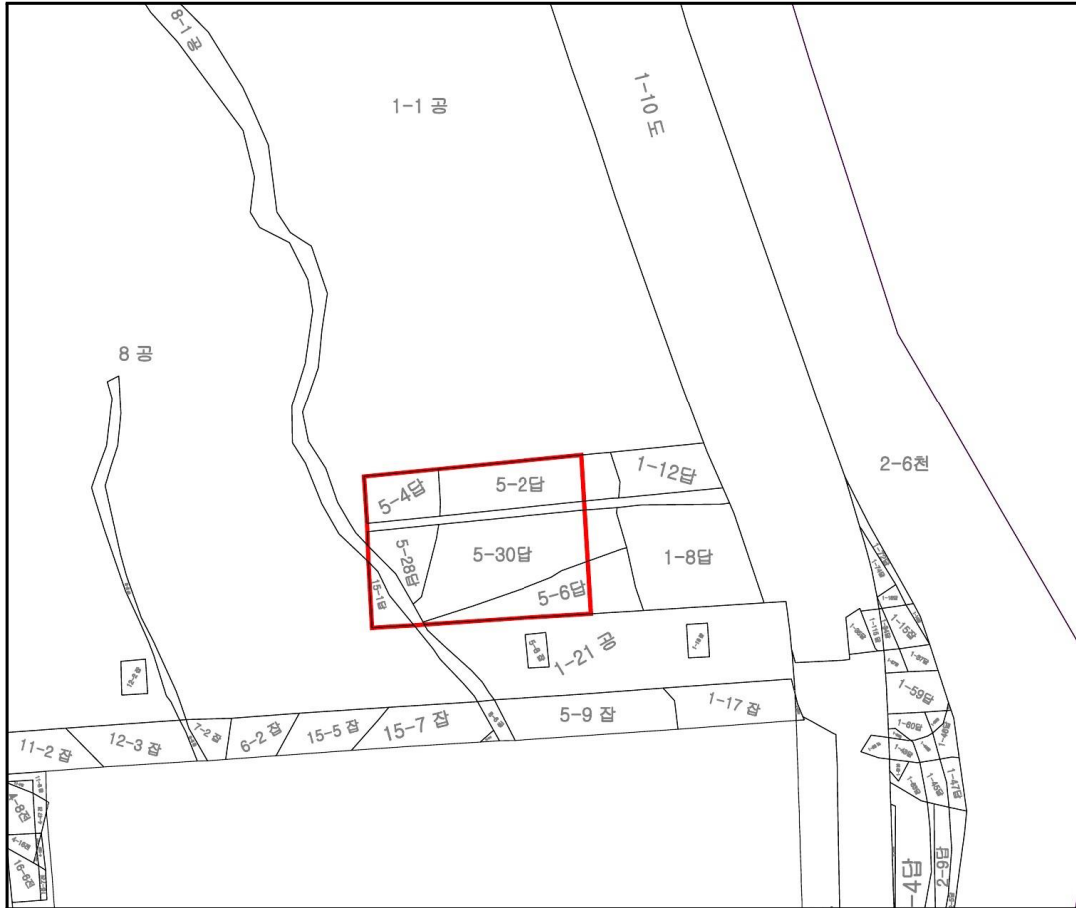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등 : 따로붙임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5,778	2,987							
1	도봉동 1-1	공	21,256	16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도봉동 5-2	답	732	597	재단법인 송석교육 문화재단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5*-14					
3	도봉동 5-4	답	315	315	신상*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5길 22, 10*동 20*호(월계동 대우아파트)					
					송임*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5길 22, 10*동 20*호(월계동 대우아파트)					
4	도봉동 5-6	답	625	388	김용*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490-*, 30*호		북서울 농업형 동조합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66(쌍문동) 성북지점	근저당권	
5	도봉동 5-28	답	274	274	신상*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5길 22, 10*동 20*호(월계동 대우아파트)	1059.42 /1,109				
					송임*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5길 22, 10*동 20*호(월계동 대우아파트)	49.58/ 1,109				
6	도봉동 5-30	답	1,167	1,029	재단법인 송석교육 문화재단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5*-1*					
7	도봉동 8-1	공	1,824	99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8	도봉동 15-1	답	123	123	사회복지 법인 송석복지 재단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125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보상 용지도



◆ 구로구고시 제2020-19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 3.2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16호(1999.12.15.)로 변경 결정된 구로구 구로동 800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남구로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구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명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7호선 남구로역 1번 출입구)	구로동 800번지 일대	5,968	증)64.4	6,032.4	'93.3.18. (서고시 제77호)	에스컬레이터설치

나. 변경사유서

시 설 명	결정(변경) 내용	변 경 사유
도시철도 (7호선 남구로역 1번 출입구)	· 면적변경 (당초)5,968㎡ →(변경)6,032.4㎡(증64.4㎡) · 시설면적의 1.7% 이내 · 에스컬레이터(E/S) 신설	· 지하철 정거장의 교통약자(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이용편의를 위해 남구로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철도:정거장)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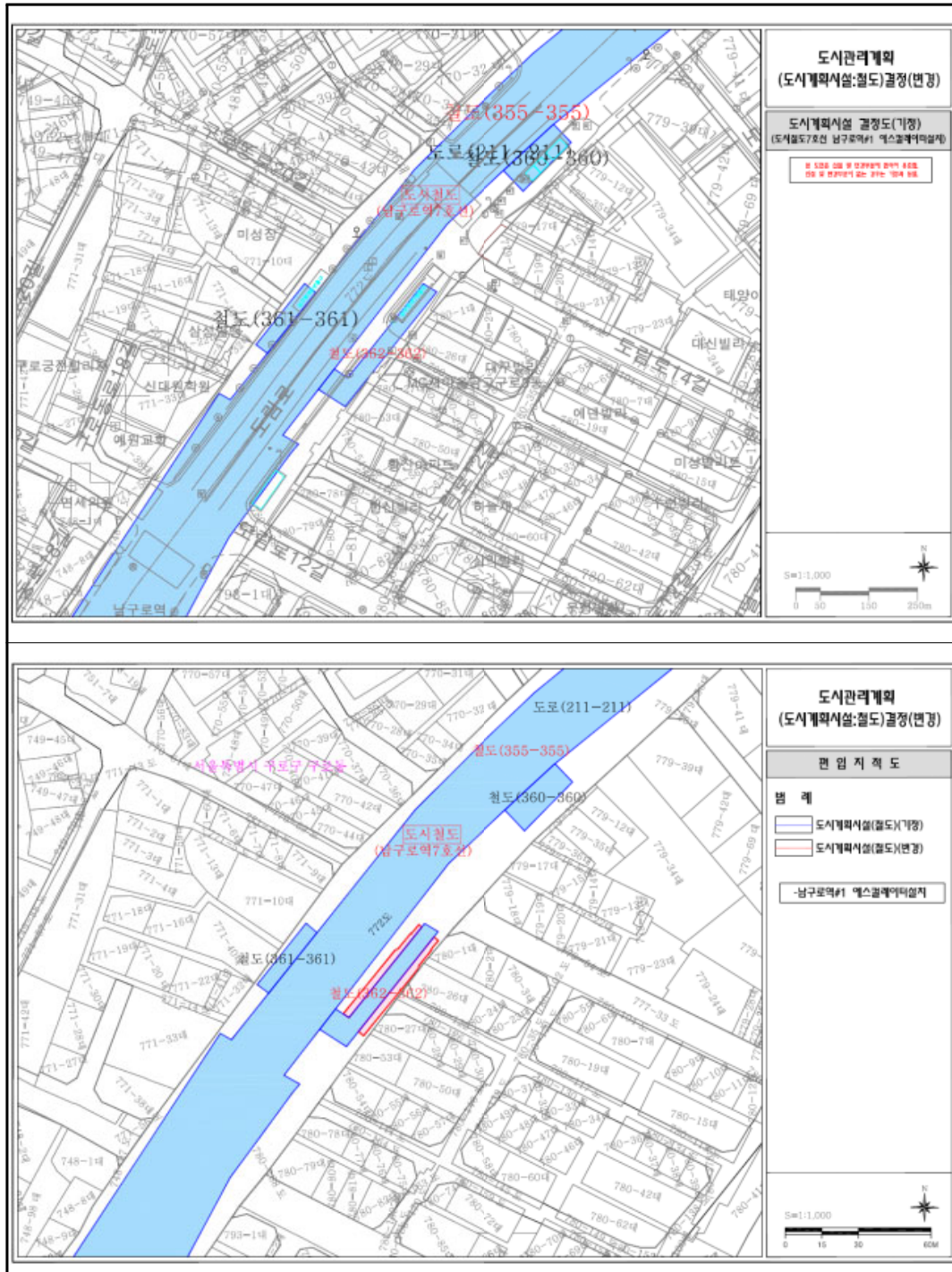
2.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지형도면(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28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지형도면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0-1140호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79호(2006.5.1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4호(2019.2.14.)로 열람공고한 종로5가 321-19번지 외 11필지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폐지 및 획지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종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2148-2813)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개발규모)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B-27-1	합계	1,318.9	B-27-1	합계	1,318.9	-
	종로5가동 321-11	47.6		종로5가동 321-11	47.6	계 : 1,074㎡
	종로5가동 321-12	33.7		종로5가동 321-12	33.7	
	종로5가동 321-13	35.0		종로5가동 321-19	809.9	
	종로5가동 321-14	36.5		종로5가동 321-23	47.9	
	종로5가동 321-15	76.0		종로5가동 321-24	26.8	
	종로5가동 321-16	37.4		종로5가동 321-13	35.0	
	종로5가동 321-17	48.9		종로5가동 321-14	36.5	
	종로5가동 321-18	82.6		종로5가동 321-26	36.6	
	종로5가동 321-19	809.9		종로5가동 321-15	76.0	
	종로5가동 321-23	47.9	B-27-3	종로5가동 321-16	37.4	계 : 244.9㎡
	종로5가동 321-24	26.8		종로5가동 321-17	48.9	
	종로5가동 321-26	36.6		종로5가동 321-18	82.6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27-1,3	• 획지분할 (1개 획지→2개 획지)	• 2개의 획지로 분할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실현성을 높이고자 함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가) 건축물 용도계획

■ 기 정

위치	구분	권장 및 지정용도			불허용도(전충)
		지정용도(전충)	권장용도(전충)	예시용도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블록	시장 UC-1	-	-	-	
	간선 가로변 UC-2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광장시장 -주단, 포목, 전통 의류 도·소매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종로변 UC-3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동대문시장 -혼수용품 및 의류 관련 도·소매 업종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청계천변 UC-4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이면부 UC-5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청계천변 UC-6	•관광숙박시설	-	-	•위락시설

■ 변 경

위치	구분	권장용도		불허용도(전충)
		권장용도(전충)	예시용도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블록	시장 UC-1	-	-	
	간선 가로변 UC-2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광장시장 -주단, 포목, 전통 의류 도·소매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종로변 UC-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동대문시장 -혼수용품 및 의류 관련 도·소매 업종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청계천변 UC-4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이면부 UC-5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27-1,3	• 용도번호 UC-6 폐지	•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물의 지정용도를 삭제하고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용도계획)으로 환원

(나) 용적률 계획 : 변경

구분	위치	적용대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기정	C-1-1	청계천 및 간선가로변 (획지 B-27-1)	400%이하	600%이하	1,058.9%이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례법 적용
변경	C-1	청계천 및 간선가로변	400%이하	600%이하	800%이하	업무시설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27-1,3	• 용적률 번호 C-1-1 폐지	• 관광숙박시설사업 승인취소로 종전 용적률계획으로 환원 (상한 용적률 1,058.9% 이하 → 800% 이하)

(다)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높이계획 : 변경

구분	높이제한		지침내용	비고
	기정	변경		
높이	최고높이: 90m이하	최고높이: 70m이하	동대문시장 블록 청계천변/간선가로변	도로사선제한 배제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27-1	• 최고높이 하향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및 대지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높이계획 하향

(마) 건축물의 배치계획 : 변경

구분	지침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축물 배치	-	•저층부로부터 고층부 이격배치 - 11층이상 건축물 고층부(3층~6층) 5m이상 이격배치, 6층(20m)이상 고층부는 저층부 건축선으로부터 최소 5m이상 반드시 이격배치	획지 B-27-1에 한함
대지 내 공지	-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가로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청계천로에 연접하여 계획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27-1	• 건축물 배치 및 대지 내 공지 계획 신설	• 청계천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고층부 이격과 청계천변 일대 공지의 연속성을 유지 필요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지침내용		비고
	기정	변경	
개방형 화장실	-	• 청계천변 개방형 화장실 설치 -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 부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획지 B-27-1에 한함
저층부 개방	-	• 건축물의 청계천변 저층부 옥상 개방 - 옥외계단을 설치하여 상시 대중이 이용토록 계획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27-1	• 개방형 화장실 및 저층부 개방 계획 신설	• 청계천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청계천 수변경관을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옥상 개방

라. 관련도서(생략) : 열람장소 비치

◆ 종로구공고 제2020-1133호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90-7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동성중고)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종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2)

다. 열람내용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학교:동성중고) 결정(변경)(안)

1)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로구 혜화동 90-7	21,106.0	증)10,040.3	31,146.3	1982.8.12.	동성 중·고교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학교	○ 면적변경 : 증10,040.3㎡ · 기정 21,106.0㎡ · 변경 31,146.3㎡	■ 학교 내 특별관 증축 및 실사용 중인 학교부지 경계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 건축물의 규모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학교	35% 이하	120% 이하	지상5층 이하	서고 2007-442호 (2007.12.06.)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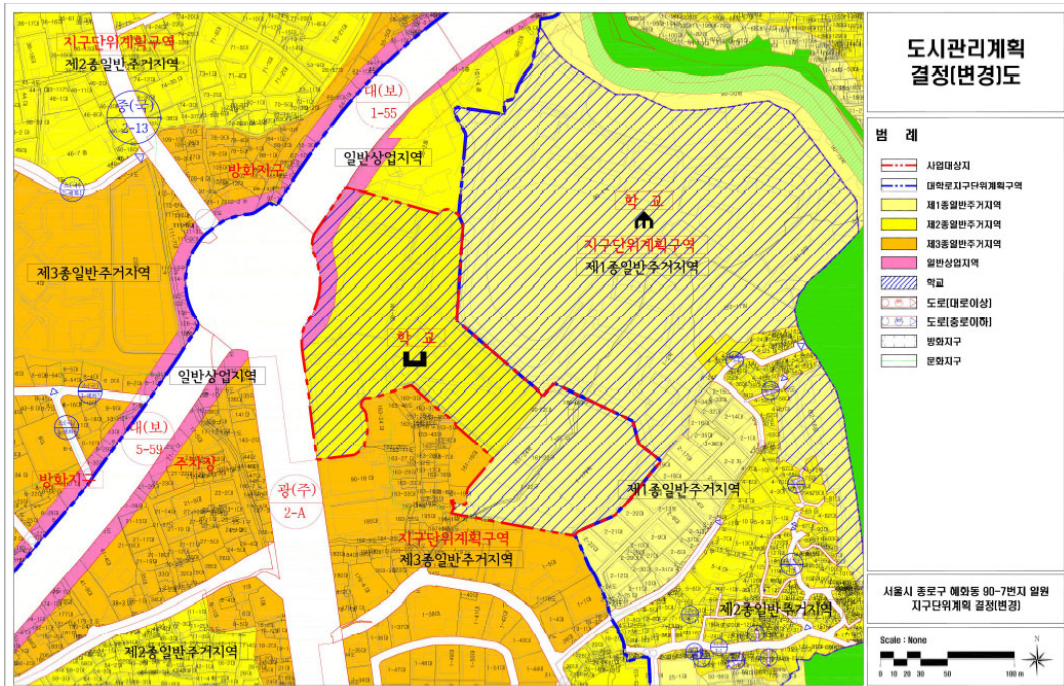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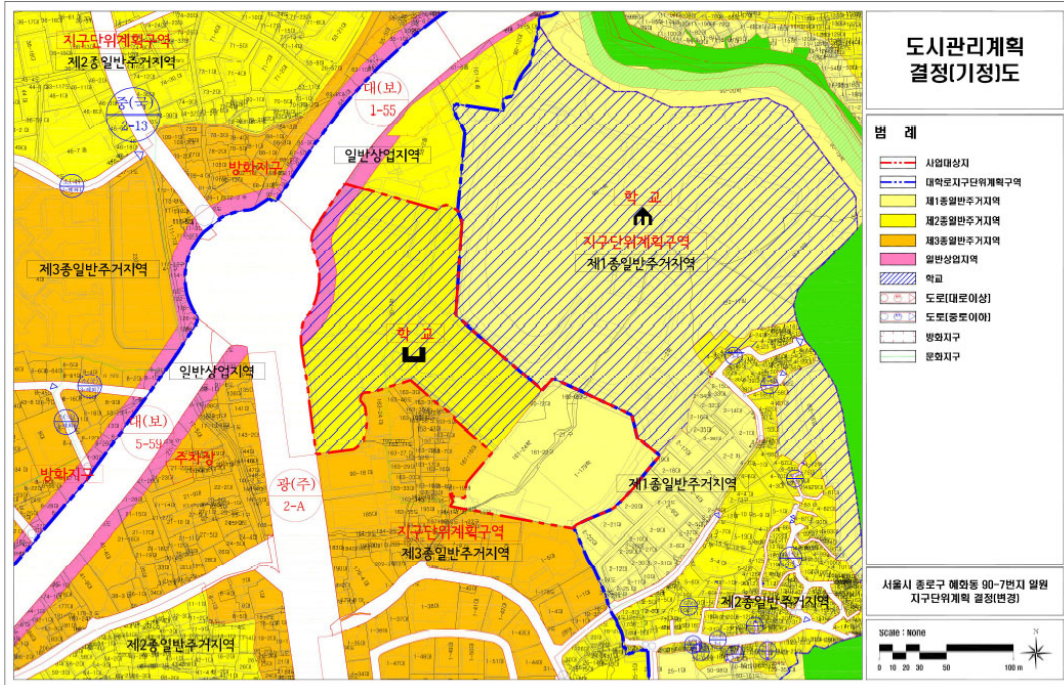
가) 건축물의 높이

☐ 높이계획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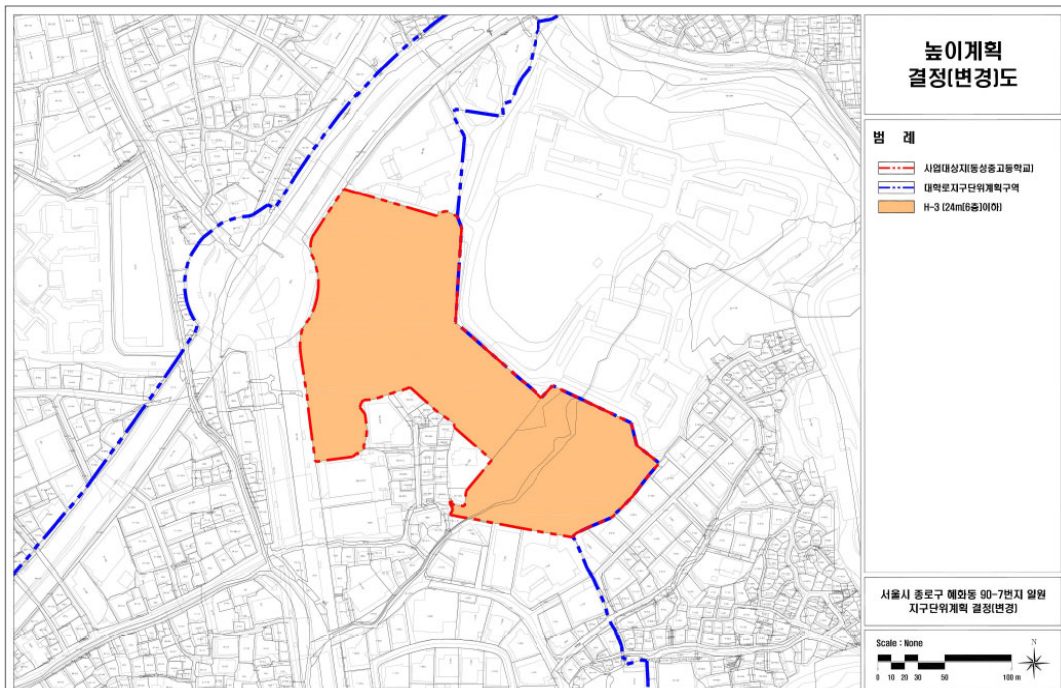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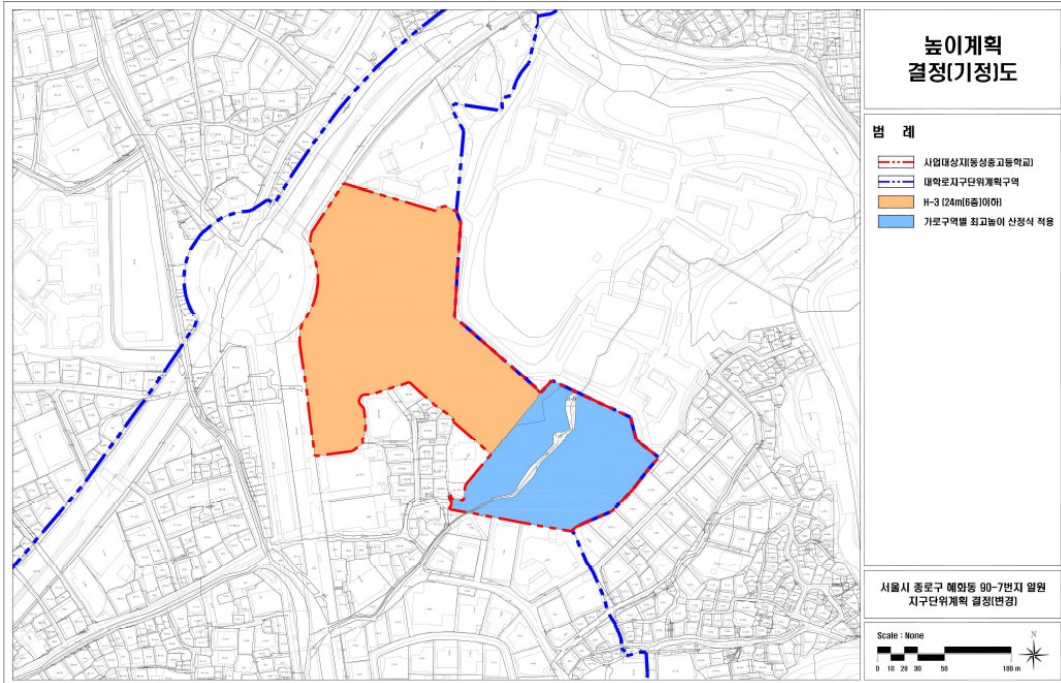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	기호	
제2·3종일반주거지역 (도로폭 20m이상)	24m(6층)이하	H-3	금회 시설경계 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는 부분의 높이 계획 변경 · 기정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 변경 : 24m[6층]이하

라.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높이계획 결정(변경)도



◆ 중랑구공고 제2020-10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호(1997.02.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된 봉화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공원구역에 접하는 협소한 보도구간에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중복결정 후 보도폭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중 랑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139번지 일대

나. 공원면적 : 556,451.3㎡

다. 조성계획(안)

1) 시설면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계	556,451.3	65,918.88	556,451.3	66,145.88	
기반시설	37,873.47	37,873.47	38,994.47	38,100.47	증 227㎡
조 경 시 설	4,286.40 (1,291.86)	4,286.40 (1,291.86)	4,286.40 (1,291.86)	4,286.40 (1,291.86)	
휴 양 시 설	4,738.23	4,738.23	4,738.23	4,738.23	
유 희 시 설	941.79	941.79	941.79	941.79	
운 동 시 설	8,286.41	8,286.41	8,286.41	8,286.41	
교 양 시 설	7,297.97	7,297.97	7,297.97	7,297.97	
편 익 시 설	1,656.61 (22.40)	1,656.61 (22.40)	1,656.61 (22.40)	1,656.61 (22.40)	
관 리 시 설	486.00	486.00	486.00	486.00	
녹지 및 기타	490,243.5		490,016.5		감 227㎡
시설율(법정40%)	$(65,918.88 / 556,451.3) \times 100 = 11.85\%$		$(66,145.88 / 556,451.3) \times 100 = 11.89\%$		
건 폐 율	$(4,820.88 / 556,451.3) \times 100 = 0.87\%$		$(4,820.88 / 556,451.3) \times 100 = 0.87\%$		

◆ 성북구공고 제2020-1229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149호(2018.6.7.)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일대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성 북 구 청 장

-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일대
나. 오동근린공원(성북) 면적 : 220,878.3㎡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오동근린공원(성북) 조성사업)
 -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일대
 - 사업내용 : 암석원 및 철쭉동산 등 테마공간 조성
라. 열람장소 : 성북구청 9층 공원녹지과(☎ 02-2241-3665)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열람시간 09:00~18:00)
바. 관계도서 :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서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치 : 강북구 번동 산28-6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계		1,532,959.4	355,286.74	30	19,453.61	44,286.71	153	1,259,273.8	355,226.74	30	19,848.62	44,681.72	153	감) 60㎡
기 반 시 설	소계	135,745	110,857					135,987	112,099					증) 1,242㎡
	도로	115,123	90,235					116,365	91,477					증) 1,242㎡
	오동교	200	200					200	200					
	광장	20,422	20,422					20,422	20,422					
조경시설		57,322	57,322	1	3,786.05	9,726.01	54	60,504	60,504	1	3,786.05	9,726.01	54	증) 3,182㎡
휴양시설		18,719	18,719	3	376.8	376.8	11	19,010	19,010	3	376.8	376.8	11	증) 291㎡
유희시설		12,887	12,887		650	650	2	12,887	12,887		650	650	2	
운동시설		68,082.12	62,652.12	4	6,275.76	13,039.68	84	60,283.12	55,853.12	4	6,275.76	13,039.68	84	감) 6,799㎡
교양시설		72,351	72,351	6	4,932.04	15,712.25	1	72,933	72,933	7	5,363.05	16,143.26	1	증) 582㎡
편익시설		18,216.62	17,949.62	11	2,475.56	2,999.64	1	19,694.62	19,427.62	11	2,475.56	2,999.64	1	증) 1,478㎡
관리시설		2,549	2,549	5	957.4	1,782.33		2,513	2,513	4	921.4	1,746.33		감) 36㎡
녹지 및 기타		1,147,087.66						875,462.06						감) 271,625.6㎡
공원시설율 (법정40%)		(353,286.74㎡ / 1,532,959.4㎡) × 100% = 23.18 %						(355,226.74㎡ / 1,259,273.8㎡) × 100% = 28.21 %						
건폐율(10%)		(19,453.61㎡ / 1,532,959.4㎡) × 100% = 1.27 %						(19,848.62㎡ / 1,259,273.8㎡) × 100% = 1.58 %						

※ 총괄표(지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계	1,532,959.4	355,286.74	30	19,453.61	44,286.71	153	1,259,273.8	355,226.74	30	19,848.62	44,681.72	153	감) 60㎡
“가” 지구	665,190	195,552.68	12	9,851.81	22,313.8	69	684,156.6	195,552.68	12	9,851.81	22,313.8	69	
“나” 지구	241,948	40,057	1	1,249	5,574	30	115,490.2	40,057	1	1,249	5,574	30	
“다” 지구	442,418.4	51,471.06	6	3,274.36	9,414.63	52	238,748.7	51,471.06	6	3,274.36	9,414.63	52	
“라” 지구	183,403	68,206	11	5,078.44	6,984.28	2	220,878.3	68,146	11	5,473.45	7,379.29	2	감) 60㎡

1. “가”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65,190	195,552.68	12	9,851.81	22,313.80	69	684,156.6	195,552.68	12	9,851.81	22,313.80	69	
기 반 시 설	소 계	52,527	52,527					52,527	52,527					
	도 로	37,445	37,445					37,445	37,445					
	오동교	200	200					200	200					
	광 장	14,882	14,882					14,882	14,882					
조 경 시 설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휴 양 시 설		13,658	13,658	1	44.80	44.80	1	13,658	13,658	1	44.80	44.80	1	
유 희 시 설		1,655	1,655					1,655	1,655					
운 동 시 설		8,771.12	7,341.12				31	8,771.12	7,341.12				31	
교 양 시 설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편 익 시 설		9,712.56	9,712.56	5	2,188.97	2,495.69	1	9,712.56	9,712.56	5	2,188.97	2,495.69	1	
관 리 시 설		1,829	1,829	1	547.40	1,372.33		1,829	1,829	1	547.40	1,372.33		
녹지 / 기타		468,207.32						487,173.92						증)18,966.6㎡
공원시설율 (법정40%)		(195,552.68㎡ / 665,190㎡) × 100% = 29.40 %						(195,552.68㎡ / 684,156.6㎡) × 100% = 28.58 %						
건폐율(10%)		(9,851.81㎡ / 665,190㎡) × 100% = 1.48 %						(9,851.81㎡ / 684,156.6㎡) × 100% = 1.44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65,190	195,552.68		12	9,851.81	22,313.8	69			684,156.6	195,552.68		12	9,851.81	22,313.8	69			
기 반 시 설	소 계			52,527	52,527								52,527	52,527								
	도 로		전지역	37,445	37,445								전지역	37,445	37,445							
	오동교		미아4동 산35-1, 25-1	200	200								미아4동 산35-1, 25-1	200	200							
	광 장	가	10개소	14,882	14,882								가	10개소	14,882	14,882						
		가-1	변동 산28-6, 산28-9, 29,87, 87-189, 89-3, 95-7,627-1,	(2,873)	(2,873)								가-1	변동 산28-6, 산28-9, 29,87, 87-189, 89-3, 95-7,627-1,	(2,873)	(2,873)						
		가-2	변동 92,93-2	(33)	(33)								가-2	변동 92,93-2	(33)	(33)						
		가-3	변동 산28-6	(14)	(14)								가-3	변동 산28-6	(14)	(14)						
		가-4	변동 산28-6	(300)	(300)								가-4	변동 산28-6	(300)	(300)						
		가-5	변동 산28-6, 산28-3, 120-1, 120-6,121	(11,316)	(11,316)								가-5	변동 산28-6, 산28-3, 120-1, 120-6,121	(11,316)	(11,316)						
		가-6	변동 916	(127)	(127)								가-6	변동 916	(127)	(127)						
		가-7	변동 93	(54)	(54)								가-7	변동 93	(54)	(54)						
		가-8	변동 산28-6	(79)	(79)								가-8	변동 산28-6	(79)	(79)						
		가-9	변동 92,628	(58)	(58)								가-9	변동 92,628	(58)	(58)						
	가-10	변동 산28-6	(28)	(28)								가-10	변동 산28-6	(28)	(28)							
조 경 시 설	소 계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월영연못	나	변동 산28-6	12,526	12,526								나	변동 산28-6	12,526	12,526						
	계 류	다	2개소	3,971	3,971								다	2개소	3,971	3,971						
		다-1	변동 산28-6, 28-3	(2,829)	(2,829)								다-1	변동 산28-6, 28-3	(2,829)	(2,829)						
		다-2	변동 산28-6 외 5필지	(1,142)	(1,142)								다-2	변동 산28-6 외 5필지	(1,142)	(1,142)						
	철쭉연못	라	변동 산28-6 외 5필지	3,598	3,598								라	변동 산28-6 외 5필지	3,598	3,598						
	미라폰드	①	변동 120-1 외 3필지	2,400	2,400								①	변동 120-1 외 3필지	2,400	2,400						
조 경 시 설	점령분수	②	변동 산28-3	386	386								②	변동 산28-3	386	386						
	저류지	마	변동 산28-6	467	467								마	변동 산28-6	467	467						
	야생초화원	바	변동 산28-6 산28-7	11,070	11,070		지하2층 지상2층	3,786.05	9,726.01				바	변동 산28-6 산28-7	11,070	11,070		지하2층 지상2층	3,786.05	9,726.01		
	잔디마당	사	2개소	21,664	21,664								사	2개소	21,664	21,664						
사-1		변동 산28-6	(13,228)	(13,228)								사-1	변동 산28-6	(13,228)	(13,228)							
사-2		변동 산28-6 외 6필지	(8,436)	(8,436)								사-2	변동 산28-6 외 6필지	(8,436)	(8,43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창포원	아	변동 산28-6 120-1	1,167	1,167						아	변동 산28-6 120-1	1,167	1,167								
	낙수대	③	변동 산28-6	73	73						③	변동 산28-6	73	73								
	월광폭포	④	변동 산28-6	-	-	철근콘크리트 인양막			1	④	변동 산28-6	-	-	철근콘크리트 인양막					1			
	월광대	⑤	변동 산28-6	-	-	철근콘크리트 석재			1	⑤	변동 산28-6	-	-	철근콘크리트 석재					1			
	월영대	⑥	변동 산28-6	-	-	철근콘크리트 석재			1	⑥	변동 산28-6	-	-	철근콘크리트 석재					1			
	전통정자	⑦	변동 산28-6	-	-				2	⑦	변동 산28-6	-	-							2		
		⑦-1	변동 산28-6	-	-	목재			(1)	⑦-1	변동 산28-6	-	-	목재					(1)			
		⑦-2	변동 산28-6	-	-	목재			(1)	⑦-2	변동 산28-6	-	-	목재					(1)			
	파고라	⑧	변동 산28-6	-	-	목재			13	⑧	변동 산28-6	-	-	목재					13			
	조 파고라	⑨	변동 산28-6	-	-	막구조			1	⑨	변동 산28-6	-	-	막구조					1			
	한조형물	⑩	변동 산28-7	-	-				10	⑩	변동 산28-7	-	-						10			
조형화분	⑪	변동 산28-10	-	-				4	⑪	변동 산28-10	-	-						4				
휴양시설	소 계			13,658	13,658		1	44.8	44.8	1			13,658	13,658		1	44.8	44.8	1			
	휴게소	자	11개소	2,621	2,621						자	11개소	2,621	2,621								
		자-1	변동 산28-6	(364)	(364)						자-1	변동 산28-6	(364)	(364)								
		자-2	변동 산28-6	(303)	(303)						자-2	변동 산28-6	(303)	(303)								
		자-3	변동 산28-6	(126)	(126)						자-3	변동 산28-6	(126)	(126)								
		자-4	변동 산28-10	(215)	(215)						자-4	변동 산28-10	(215)	(215)								
		자-5	변동 산28-10	(188)	(188)						자-5	변동 산28-10	(188)	(188)								
	휴게소	자-6	변동 산28-10	(333)	(333)						자-6	변동 산28-10	(333)	(333)								
		자-7	변동 산28-10	(137)	(137)						자-7	변동 산28-10	(137)	(137)								
		자-8	변동 산28-10	(545)	(545)						자-8	변동 산28-10	(545)	(545)								
		자-9	변동 산28-10	(200)	(200)						자-9	변동 산28-10	(200)	(200)								
자-10		변동 산28-10	(80)	(80)						자-10	변동 산28-10	(80)	(80)									
자-11		변동 산28-10	(130)	(130)						자-11	변동 산28-10	(130)	(130)									
데크쉼터	카	9개소	10,408	10,408						카	9개소	10,408	10,408									
	카-1	변동 산28-6	(780)	(780)						카-1	변동 산28-6	(780)	(780)									
	카-2	변동 산28-6	(146)	(146)						카-2	변동 산28-6	(146)	(146)									
	카-3	변동 산28-6	(72)	(72)						카-3	변동 산28-6	(72)	(72)									
	카-4	변동 산28-6	(419)	(419)						카-4	변동 산28-6	(419)	(419)									
	카-5	변동 산28-6	(7,735)	(7,735)	지상1층		44.80	44.80		카-5	변동 산28-6	(7,735)	(7,735)	지상1층		44.80	44.80					
	카-6	변동 산28-6	(966)	(966)						카-6	변동 산28-6	(966)	(966)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 히 시 설	수변센터	카-7	산28-3 변동 산28-10	(79)	(79)						카-7	산28-3 변동 산28-10	(79)	(79)						
		카-8	변동 산35-64	(92)	(92)						카-8	변동 산35-64	(92)	(92)						
		카-9	변동 산28-3	(119)	(119)						카-9	변동 산28-3	(119)	(119)						
		타	5개소	629	629						타	5개소	629	629						
		타-1	변동 산28-6	(49)	(49)						타-1	변동 산28-6	(49)	(49)						
		타-2	변동 산28-6	(268)	(268)						타-2	변동 산28-6	(268)	(268)						
		타-3	변동 산28-6	(41)	(41)						타-3	변동 산28-6	(41)	(41)						
		타-4	변동 산28-6, 92	(195)	(195)						타-4	변동 산28-6, 92	(195)	(195)						
		타-5	변동 산28-6, 628	(76)	(76)						타-5	변동 산28-6, 628	(76)	(76)						
	소 계	㉔	전지역	-	-				1	㉔	전지역	-	-						1	
	정 자	㉔-1	변3동 산28-10일대			목재 (팔각)			(1)	㉔-1	변3동 산28-10일대			목재 (팔각)					(1)	
	유 하 시 설	소 계			1,655	1,655			-	-			1,655	1,655			-	-		
어린이 놀이터		파	3개소	1,655	1,655						파	3개소	1,655	1,655						
		파-1	변동 산28-6	(482)	(482)						파-1	변동 산28-6	(482)	(482)						
		파-2	변동 산28-1	(458)	(458)						파-2	변동 산28-1	(458)	(458)						
		파-3	변동 산28-10	(715)	(715)						파-3	변동 산28-10	(715)	(715)						
유 하 시 설	소 계			8,771.12	7,341.12				31			8,771.12	7,341.12						31	
	체 령	하	1개소	310	310						하	1개소	310	310						
	단련장	하-1	변동 산28-10	(310)	(310)						하-1	변동 산28-10	(310)	(310)						
	다목적 운동장	거	2개소	1,068	1,068						거	2개소	1,068	1,068						
		거-1	변동 산28-1	(491)	(491)						거-1	변동 산28-1	(491)	(491)						
	거-2	변동 산28-1	(577)	(577)						거-2	변동 산28-1	(577)	(577)							
	배 드 민턴장	너	5개소	2,915	2,915						너	5개소	2,915	2,915						
		너-1	변동 산28-10	(585)	(585)						너-1	변동 산28-10	(585)	(585)						
		너-2	변동 산28-10	(537)	(537)						너-2	변동 산28-10	(537)	(537)						
		너-4	변3동 산28-87	(519)	(519)						너-4	변3동 산28-87	(519)	(519)						
		너-5	변3동 산28-8 산28-71	(426)	(426)						너-5	변3동 산28-8 산28-71	(426)	(426)						
		너-6	변3동 산35-65 산 28-88	(848)	(848)						너-6	변3동 산35-65 산 28-88	(848)	(848)						
	족구장	더	1개소	561	561						더	1개소	561	561						
		더-1	변동 산28-68	(561)	(561)						더-1	변동 산28-68	(561)	(56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테니스장	러	1개소	1,759.12	1,759.12						러	1개소	1,759.12	1,759.12						
	체력단련 시설	러-1	변동 115-10	(1759.12)	(1759.12)						러-1	변동 115-10	(1759.12)	(1759.12)						
		㉔	전지역	2,158	728					31	㉔	전지역	2,158	728						31
교 양 시 설	소 계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구한옥	1	변동 93-1일대	800	800	목조	2	204.96	204.96		1	변동 93-1일대	800	800	목조	2	204.96	204.96		
	문화센터	2	변동 산28-6	4,108	4,108	철근 지상3층		2,707.85	7,525.64		2	변동 산28-6	4,108	4,108	철근 지상3층		2,707.85	7,525.64		
	미술관	3	변동 산28-6	1,187	1,187	철근 지상2층		371.78	944.37		3	변동 산28-6	1,187	1,187	철근 지상2층		371.78	944.37		
	야생화원																			
교 양 시 설	단식물원	더	변동 산28-10일대	33,610	33,610						더	변동 산28-10일대	33,610	33,610						
	화목원	머	변동 산28-8	11,803	11,803						머	변동 산28-8	11,803	11,803						
	무대조형물	㉔	변동 산28-6	-	-					1	㉔	변동 산28-6	-	-						1
편 의 시 설	소계			9,712.56	9,712.56		5	2,188.97	2,495.69	1			9,712.56	9,712.56		5	2,188.97	2,495.69	1	
	주차장	머	변동 산28-6	3,026	3,026						머	변동 산28-6	3,026	3,026						
	주차장	버	변동 산28-6	125	125						버	변동 산28-6	125	125						
	주차장	서	변동 산28-6	226	226						서	변동 산28-6	226	226						
	전망대	4	변동 산28-6	2,169	2,169	철근 지상3층		852.79	1,075.03		4	변동 산28-6	2,169	2,169	철근 지상3층		852.79	1,075.03		
	레스토랑	5	변동 산28-6	3,082	3,082	철근 지상1층		667.39	667.39		5	변동 산28-6	3,082	3,082	철근 지상1층		667.39	667.39		
	글래스 파빌리온	6	변동 산28-6 120-1	446	446	철근 지상1층		381.95	466.43		6	변동 산28-6 120-1	446	446	철근 지상1층		381.95	466.43		
	야외 화장실	7	변동 산28-6	558	558	철근 지상1층		206.28	206.28		7	변동 산28-6	558	558	철근 지상1층		206.28	206.28		
	야외 화장실	7-1	변동 115-10	80.56	80.56	철근 지상1층		80.56	80.56		7-1	변동 115-10	80.56	80.56	철근 지상1층		80.56	80.5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1층 경사형엘리베이터	㉔	변동 산28-6						(80.56)									(80.56)		
	소 계			1,829	1,829		1	547.40	1,372.33				1,829	1,829		1	547.40	1,372.33		
관리시설	방문자센터	8	변동 산28-9임	1,829	1,829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547.40	1,372.33		8	변동 산28-9임	1,829	1,829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547.40	1,372.33		
	녹지 및 기타				468,207.32								487,173.92							증)18,966.6㎡

2. “나”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41,948	40,057	1	1,249	5,574	30	115,490.2	40,057	1	1,249	5,574	30	
기 반 시 설	소 계	25,072					25,072	10,867					
	도 로	(23,556)					(23,556)	(9,351)					
	광 장	(1,516)					(1,516)	(1,516)					
	조 경 시 설	-				13	-	-				13	
	휴 양 시 설	574				3	574	574				3	
	유 희 시 설	2,776					2,776	2,776					
	운 동 시 설	4,632				14	4,632	4,632				14	
	교 양 시 설	19,797	1	1,249	5,574		19,797	19,797	1	1,249	5,574		
	편 익 시 설	1,411					1,411	1,411					
	관 리 시 설	-					-	-					
	녹지 / 기타	187,686					61,228.2						합) 126,457.8㎡
공원시설율 (법정40%)		$(40,057㎡ / 241,948㎡) \times 100\% = 16.56\%$					$(40,057㎡ / 115,490.2㎡) \times 100\% = 34.68\%$						
건폐율(10%)		$(1,249㎡ / 241,948㎡) \times 100\% = 0.52\%$					$(1,249㎡ / 115,490.2㎡) \times 100\% = 1.08\%$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 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41,948	40,057		1	1,249	5,574				115,490.2	40,057		1	1,249	5,574		
기 반	소 계			25,072	10,867								25,072	10,867						
	도 로			23,556	9,351								23,556	9,351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물(㎡)		공작 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 설	광 장	가	4개소	1,516	1,516						가	4개소	1,516	1,516						
		가-1	번2동 산27-108일대	(318)	(318)						가-1	번2동 산27-108일대	(318)	(318)						
		가-2	번2동 산27-117일대	(217)	(217)						가-2	번2동 산27-117일대	(217)	(217)						
		가-3	번2동 산27-8일대	(91)	(91)						가-3	번2동 산27-8일대	(91)	(91)						
		가-4	번2동 산27-8일대	(890)	(890)						가-4	번2동 산27-8일대	(890)	(890)						
조경 시설	소 계			-	-					13			-	-					13	
	파고라	①	전지역	-	-					13	①	전지역	-	-					13	
휴 양 시 설	소 계			574	574					3			574	574					3	
	휴게소	나	4개소	574	574						나	4개소	574	574						
		나-1	번2동 산27-120일대	(240)	(240)						나-1	번2동 산27-120일대	(240)	(240)						
		나-2	번2동 산27-8일대	(90)	(90)						나-2	번2동 산27-8일대	(90)	(90)						
		나-3	미아9동 산25-1일대	(158)	(158)						나-3	미아9동 산25-1일대	(158)	(158)						
		나-4	번2동 산27-108일대	(86)	(86)						나-4	번2동 산27-108일대	(86)	(86)						
	정 자	②	전지역			목재				3	②	전지역			목재				3	
		②-1	미아9동 산25-50일대			목재 (팔각)				(1)	②-1	미아9동 산25-50일대			목재 (팔각)				(1)	
		②-2	미아9동 산25-1일대			목재 (육각)				(1)	②-2	미아9동 산25-1일대			목재 (육각)				(1)	
		②-3	번2동 산27-120일대			목재 (사각)				(1)	②-3	번2동 산27-120일대			목재 (사각)				(1)	
	유 희 시 설	소 계	다	4개소	2,776	2,776						다	4개소	2,776	2,776					
어린이 놀이터		다-1	미아9동 산25-43일대	(446)	(446)						다-1	미아9동 산25-43일대	(446)	(446)						
		다-2	번2동 산 27-108일대	(1,000)	(1,000)						다-2	번2동 산 27-108일대	(1,000)	(1,000)						
		다-3	번2동 산27-5일대	(950)	(950)						다-3	번2동 산27-5일대	(950)	(950)						
		다-4	미아9동 산25-28일대	(380)	(380)						다-4	미아9동 산25-28일대	(380)	(38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물(㎡)		공작 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소 계			4,632	4,632		-	-	-	14			4,632	4,632		-	-	-	14	
	체력 단련장	라	2개소	3,021	3,021						라	2개소	3,021	3,021						
		라-1	미아9동 산25-52일대	(2,320)	(2,320)						라-1	미아9동 산25-52일대	(2,320)	(2,320)						
		라-2	미아9동 산34-2일대	(701)	(701)						라-2	미아9동 산34-2일대	(701)	(701)						
	다목적 운동장	마	미아9동 산25-46일대	515	515					마	미아9동 산25-46일대	515	515							
	배드 민턴장	바	번2동 산25-1일대	1,096	1,096					바	번2동 산25-1일대	1,096	1,096							
	체력 단련시설	전지 역							14	전지 역									14	
교양 시설	소 계			19,797	19,797		1	1,249	5,574				19,797	19,797		1	1,249	5,574		
	도서관	1	번2동 산 27-108일대	1,720	1,720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지하1 층 지상4 층	1,249	5,574		1	번2동 산 27-108일대	1,720	1,720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지하1 층 지상4 층	1,249	5,574		
	관목원	사	미아9동 산25-1일대	538	538						사	미아9동 산25-1일대	538	538						
	자연 학습장	아	번2동 122-55일대	921	921						아	번2동 122-55일대	921	921						
	보태닉 가든	자	번2동 122-42일대	3,888	3,888						자	번2동 122-42일대	3,888	3,888						
	생태 습지원	차	번2동 122-10일대	12,730	12,730						차	번2동 122-10일대	12,730	12,730						
편의 시설	소 계			1,411	1,411								1,411	1,411						
	약수터 주차장	카	번2동 123-4일대	164	164						카	번2동 123-4일대	164	164						
		타	3개소	1,247	1,247						타	3개소	1,247	1,247						
		타-2	미아9동 산25-32일대	(307)	(307)						타-2	미아9동 산25-32일대	(307)	(307)						
		타-3	번3동 산 27-108일대	(940)	(940)						타-3	번3동 산 27-108일대	(940)	(94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 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187,686									61,228.2						감) 126,457.8 ㎡	

3. “다”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42,418.4	51,471.06	6	3,3274.36	9,414.63	52	238,748.7	51,471.06	6	3,274.36	9,414.63	52	
기 반 시 설	소 계	32,765	23,082					32,765	23,082					
	도 로	32,510	21,827					32,510	21,827					
	광 장	1,255	1,255					1,255	1,255					
조 경 시 설		-	-				6	-	-				6	
휴 양 시 설		1,851	1,851	1	132	132	7	1,851	1,851	1	132	132	7	
유 희 시 설		3,696	3,696					3,696	3,696					
운 동 시 설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9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9	
교 양 시 설		-	-					-	-					
편 의 시 설		4,326.06	4,059.06	1	114.59	135.95		4,326.06	4,059.06	3	114.59	135.95		
녹지 / 기타		376,997.34						174,327.64						감) 202,669.7㎡
공원시설율 (법정40%)		(51,471.06㎡ / 442,418.4㎡) × 100% = 11.63 %						(51,471.06㎡ / 238,748.7㎡) × 100% = 21.56 %						
건폐율(10%)		(3,307.36㎡ / 442,418.4㎡) × 100% = 0.75 %						(3,274.36㎡ / 238,748.7㎡) × 100% = 1.37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42,418.4	51,471.06		6	3,274.36	9,414.63	52			238,748.7	51,471.06		6	3,274.36	9,414.63	52		
기 반 시 설	소 계			33,765	23,082								33,765	23,082							
	도 로		전지역	32,510	21,827							전지역	32,510	21,827							
	광 장	가	4개소	1,255	1,255						가	4개소	1,255	1,255							
		가-1	번2동 148-383일대	(177)	(177)						가-1	번2동 148-383일대	(177)	(177)							
		가-2	번2동 산12일대	(103)	(103)						가-2	번2동 산12일대	(103)	(103)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124)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124)							
		가-4	미아동 산1-5일대	(379)	(379)						가-4	미아동 산1-5일대	(379)	(379)							
		가-5	번2동 산5일대	(472)	(472)						가-5	번2동 산5일대	(472)	(472)							
조경 시설	파고라	①	전지역	-	-				6	①	전지역	-	-						6		
휴 양 시 설	소 계			1,851	1,851			132	132				1,851	1,851			132	132			
	휴게소	나	18개소	1,495	1,495						나	18개소	1,495	1,495							
		나-1	번2동 산20-1일대	(608)	(608)						나-1	번2동 산20-1일대	(608)	(608)							
		나-2	미아3동 산25-14일대	(143)	(143)						나-2	미아3동 산25-14일대	(143)	(143)							
		나-3	번2동 336-2일대	(124)	(124)						나-3	번2동 336-2일대	(124)	(124)							
		나-4	번2동 산25-2일대	(135)	(135)						나-4	번2동 산25-2일대	(135)	(135)							
		나-5	번2동 314일대	(126)	(126)						나-5	번2동 314일대	(126)	(126)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나-7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7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8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8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9	미아9동산25-51일대	(40)	(40)						나-9	미아9동산25-51일대	(40)	(40)							
		나-10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0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1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1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2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2	미아3동산25-38일대	(8)	(8)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13	미아동 산19-106일대	(40)	(40)						나-13	미아동 산19-106일대	(40)	(40)							
		나-14	미아동 산19-80일대	(63)	(63)						나-14	미아동 산19-80일대	(63)	(63)							
		나-15	미아동 산19-80일대	(32)	(32)						나-15	미아동 산19-80일대	(32)	(32)							
		나-16	미아동 산19-80일대	(13)	(13)						나-16	미아동 산19-80일대	(13)	(13)							
		나-17	미아동 산19-80일대	(10)	(10)						나-17	미아동 산19-80일대	(10)	(10)							
		나-18	미아동 산19-80일대	(14)	(14)						나-18	미아동 산19-80일대	(14)	(14)							
	경로당	다	미아동 198-30	356	356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	132	132		다	미아동 198-30	356	356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	132	132			
휴양시설	소 계	②				목재				7	②				목재					7	
	정 자	②-1	번2동 산16일대			목재 (사각)				(1)	②-1	번2동 산16일대			목재 (사각)					(1)	
		②-2	미아3동 산25-44일대			목재 (사각)				(1)	②-2	미아3동 산25-44일대			목재 (사각)					(1)	
		②-3	휴게소내 (다-1)			목재 (육각)				(1)	②-3	휴게소내 (다-1)			목재 (육각)					(1)	
		②-4	번2동 산23일대			목재 (팔각)				(1)	②-4	번2동 산23일대			목재 (팔각)					(1)	
		②-5	체력단련장내 (라)			목재 (사각)				(2)	②-5	체력단련장내 (라)			목재 (사각)					(2)	
		②-6	휴게소내 (다-9)			목재 (사각)				(1)	②-6	휴게소내 (다-9)			목재 (사각)					(1)	
유	소 계			3,696	3,696							3,696	3,696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희 시 설	어린이 놀이터	다	5개소	3,696	3,696						라	5개소	3,696	3,696							
		다-1	번2동 산5일대	(494)	(494)						라-1	번2동 산5일대	(494)	(494)							
		다-2	미아3동 산25-44일대	(1,010)	(1,010)						라-2	미아3동 산25-44일대	(1,010)	(1,010)							
		다-3	미아9동 산9-3일대	(1,085)	(1,085)						라-3	미아9동 산9-3일대	(1,085)	(1,085)							
		다-4	번2동 산23일대	(422)	(422)						라-4	번2동 산23일대	(422)	(422)							
		다-5	번2동 산25-2일대	(685)	(685)						라-5	번2동 산25-2일대	(685)	(685)							
관 공 동 시 설	소 계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9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9		
	체 력 단련장	라	미아3동 산25-14일대	621	621						마	미아3동 산25-14일대	621	621							
	다목적 운동장	마	4개소	16,054	13,054			(441)	(441)		바	4개소	16,054	13,054			(441)	(441)			
		마-1	번2동 산23-1일대	(15,000)	(12,000)			(441)	(441)	4	바-1	번2동 산23-1일대	(15,000)	(12,000)			(441)	(441)	4		
		마-2	번2동 산5일대	(266)	(266)						바-2	번2동 산5일대	(266)	(266)							
		마-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바-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마-4	번2동 산23일대	(243)	(243)						바-4	번2동 산23일대	(243)	(243)							
	체력단련시 설		전지역							35		전지역							35		
종합 운동장	사	번동 산23-1일대	3,688	3,688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3 층상2 층	1,778.49	7,141.27		사	번동 산23-1일대	3,688	3,688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3 층상2 층	1,778.49	7,141.27				
실내 배드민턴장	아	번2동 산17-8일대	1,420	1,420	SRC 조	지하1 층상2 층	1,249.28	2,005.41		아	번2동 산17-8일대	1,420	1,420	SRC 조	지하1 층상2 층	1,249.28	2,005.41				
편 의 시 설	소 계			4,326.06	4,059.06		3	114.59	135.95				4,326.06	4,059.06		3	114.59	135.95			
	약수터	자	4개소	382	382						자	4개소	382	382							
		자-1	번2동 산16일대	(83)	(83)						자-1	번2동 산16일대	(83)	(83)							
		자-2	번2동 산14-1일대	(178)	(178)						자-2	번2동 산14-1일대	(178)	(178)							
		자-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자-3	번2동 산17-1일대	(57)	(57)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주차장	자-4	번2동 산23-14일대	(64)	(64)						자-4	번2동 산23-14일대	(64)	(64)						
		차	5개소	3,502	3,235						차	5개소	3,502	3,235						
		차-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차-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차-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차-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차-3	번2동 314일대	(604)	(604)						차-3	번2동 314일대	(604)	(604)						
		차-4	번2동 23-14일대	(368)	(368)						차-4	번2동 23-14일대	(368)	(368)						
		차-6	미아동 산1-5일대	(211)	(211)						차-6	미아동 산1-5일대	(211)	(211)						
	화장실	카		371.06	371.06	철근 조	지상 1층	93.23	93.23		카		371.06	371.06	철근 조	지상 1층	93.23	93.23		
	엘리베이터	타	2개소	71	71			21.36	42.72		타	2개소	71	71			21.36	42.72		
		타-1	미아동 180-30일대	(27)	(27)	철골 조	지상 2층	10.68	21.36		타-1	미아동 180-30일대	(27)	(27)	철골 조	지상 2층	10.68	21.36		
		타-2	미아동 산19-80일대	(44)	(44)	철골 조	지상 2층	10.68	21.36		타-2	미아동 산19-80일대	(44)	(44)	철골 조	지상 2층	10.68	21.36		
녹지 및 기타			376,997.34	-								174,327.64	-						감)202,669 .7㎡	

4. “라” 지구(성북지역)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83,403	68,206	11	5,078.44	6,984.28	2	220,878.3	68,146	11	5,473.45	7,379.29	2	감) 60㎡
기 반 시 설	소 계	24,381	24,381					25,623	25,623					증) 1,242㎡
	도 로	21,612	21,612					22,854	22,854					증) 1,242㎡
	광 장	2,769	2,769					2,769	2,769					
조경시설								3,182	3,182					증) 3,182㎡
휴양시설		2,636	2,636	1	200	200		2,927	2,927	1	200	200		증) 291㎡
유흥시설		4,760	4,760		650	650	2	4,760	4,760		650	650	2	
운동시설		32,896	31,896	2	3,247.99	3,893.00		25,097	25,097	2	3,247.99	3,893.00		감) 6,799㎡
교양시설		1,046	1,046	1	398.45	1,463.28		1,628	1,628	2	829.46	1,894.29		증) 582㎡
편익시설		2,767	2,767	3	172	368		4,245	4,245	3	172	368		증) 1,478㎡
관리시설		720	720	4	410	410		684	684	3	374	374		감) 36㎡
녹지,기타		114,197						152,732.3						증) 38,535.3㎡
공원시설율 (법정40%)		(68,206㎡ / 183,403㎡) × 100% = 37.19%						(68,146㎡ / 220,878.3㎡) × 100% = 30.85%						
건폐율(10%)		(5,078.44㎡ / 183,403㎡) × 100% = 2.77%						(5,473.45㎡ / 220,878.3㎡) × 100% = 2.48%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83,403	68,206		11	5,078.44	6,984.28	2기			220,878.3	68,146		11	5,473.45	7,379.29	2기	감) 60㎡
기 반	소 계			24,381	24,381								25,623	25,623						증) 1,242㎡
	도 로			21,612	21,612								22,854	22,854						증) 1,242㎡
	휴게광장	가	상월곡 산1-62	1,135	1,135						가	상월곡 산1-62	1,135	1,135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 설	진입광장	나		1,634	1,634						나		1,634	1,634						
		나-1	하월곡 산2-1	(385)	(385)						나-1	하월곡 산2-1	(385)	(385)						
		나-2	월곡 산2-87	(705)	(705)						나-2	월곡 산2-87	(705)	(705)						
		나-3	월곡 산2-87	(472)	(472)						나-3	월곡 산2-87	(472)	(472)						
조 경 시 설	소 계											3,182	3,182						증)3,182㎡	
	들꽃향기원									하	하월곡 산2-41	2,200	2,200						신설 증)2,200㎡	
	명상의숲									거	하월곡 산2-1	346	346						신설 증)346㎡	
	학교숲정원									너	상월곡 산1-1	636	636						신설 증)636㎡	
휴 양 시 설	소 계			2,636	2,636		1	200	200			2,927	2,927		1	200	200		증)291㎡	
	소공원	다	장위 산3-104	1,213	1,213					다	장위 산3-104	1,213	1,213							
	노인정	1	장위 산3-120 장위 산3-102	540	540		1	200	200	1	장위 산3-120 장위 산3-102	540	540		1	200	200			
	휴게소	라		883	883						라		1,174	1,174						증)291㎡
		라-1	장위 산3-104	(418)	(418)						라-1	장위 산3-104	(418)	(418)						
		라-2	하월곡 산2-1	(210)	(210)						라-2	하월곡 산2-1	(210)	(210)						
		라-3	상월곡 산1-62	(205)	(205)						라-3	상월곡 산1-62	(205)	(205)						
		라-4	하월곡 산2-14	(50)	(50)						라-4	하월곡 산2-14	(50)	(50)						
											라-5	상월곡동 산1-1	(291)	(291)						신설 증)291㎡
유 희 시 설	소 계			4,760	4,760			650	650	2		4,760	4,760			650	650	2		
어린이 놀이터	마		4,760	4,760						마		4,760	4,760							
	마-1	하월곡 산2-1	(770)	(770)			300	300	1	마-1	하월곡 산2-1	(770)	(770)			300	300	1		
	마-2	상월곡 산1-1	(1,236)	(1,236)						마-2	상월곡 산1-1	(1,236)	(1,236)							
	마-3	상월곡 산1-1	(1,194)	(1,194)						마-3	상월곡 산1-1	(1,194)	(1,194)							
	마-4	상월곡 산1-73	(1,560)	(1,560)			350	350	1	마-4	상월곡 산1-73	(1,560)	(1,560)			350	350	1		
문 어	소 계			31,896	31,896		2	3,247.99	3,893.00			25,097	25,097		2	3,247.99	3,893.00		감) 6,799㎡	
	다목적 운동장	바	하월곡 산2-1	6,508	6,508														폐지 감) 6,508㎡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 설	체육관	2	하월곡 산2-1	3,985	3,985	RC	1	1,505.13	2,041.26		2	하월곡 산2-1	3,985	3,985	RC	1	1,505.13	2,041.26		
	테니스장	사		2,669	2,669						사		2,669	2,669						
		사-1	하월곡 산2-1	2,000	2,000						사-1	하월곡 산2-1	2,000	(2,000)						
		사-2	하월곡 산2-14	669	669						사-2	하월곡 산2-14	669	(669)						
	배 드 민턴장	아		365	365						아		365	365						
		아-4	하월곡 산2-87	(365)	(365)						아-4	하월곡 산2-87	(365)	(365)						
	축구장	자		15,898	15,898						자		15,607	15,607					감) 291㎡	
		자-1	상월곡 산4-1	(8,966)	(8,966)						자-1	상월곡 산4-1	(8,675)	(8,675)					감) 291㎡	
		자-2	상월곡 산2-1	(6,932)	(6,932)						자-2	상월곡 산2-1	(6,932)	(6,932)						
		농구장	차	하월곡 산2-88	644	644					차	하월곡 산2-88	644	644						
실내배드민턴 장	파	하월곡 산2-1	1,827	1,827	철근콘크리트	1	1,742.86	1,851.74		파	하월곡 산2-1	1,827	1,827	철근콘크리트	1	1,742.86	1,851.74			
교 양 시 설	소 계			1,046	1,046		1	398.45	1,463.28				1,628	1,628		2	829.46	1,894.29	증) 582㎡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8	하월곡 산2-1	1,046	1,046	RC	1	398.45	1,463.28		8	하월곡 산2-1	1,046	1,046	RC	1	398.45	1,463.28		
	숲속도서관										9	하월곡 산2-41	582	582	RC	1	431.01	431.01	신설 증) 582㎡	
편 의 시 설	소 계			2,767	2,767		3	172	368				4,242	4,245		3	172	368	증) 1,478㎡	
	전망대	4	상월곡 산1-47	545	545		1	64	128		4	상월곡 산1-47	545	545		1	64	128		
	음수대	카	하월곡 산2-1	140	140						카	하월곡 산2-1	140	140						
	주차장	타		2,082	2,082						타		2,082	2,082						
		타-1	하월곡 산2-1	(702)	(702)						타-1	하월곡 산2-1	(702)	(702)						
	주차장	타-2	하월곡 산2-1	(337)	(337)						타-2	하월곡 산2-1	(337)	(337)						
		타-3	장위동 산3-92	(326)	(326)						타-3	장위동 산3-92	(326)	(326)						
		타-4	장위동 산3-86	(493)	(493)						타-4	장위동 산3-86	(493)	(493)						
타-5		월곡 산2-36	(70)	(70)						타-5	월곡 산2-36	(70)	(7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타-6	하월곡 산2-1	(154)	(154)						타-6	하월곡 산2-1	(154)	(154)						
	화장실	5		159	159		2	108	240		5		159	159		2	108	240		
		5-1	장위동 산3-117	(24)	(24)		1	(24)	(24)		5-1	장위동 산3-117	(24)	(24)		1	(24)	(24)		
		5-2	하월곡 산2-124	(135)	(135)		1	(84)	(216)		5-2	하월곡 산2-124	(135)	(135)		1	(84)	(216)		
	데크로드									허	상월곡 산1-1	1,478	1,478						증) 1,478㎡	
	소 계											684	684		3	374	374		감) 36㎡	
	관 리 사무실	6		720	720		4	410	410		6		684	684		3	374	374		
		6-1	하월곡 산2-1	(540)	(540)		1	(264)	(264)		6-1	하월곡 산2-1	(540)	(540)		1	(264)	(264)		
		6-2	상월곡 산1-41	(108)	(108)		1	(74)	(74)		6-2	상월곡 산1-41	(108)	(108)		1	(74)	(74)		
		6-3	하월곡 산2-14	(36)	(36)		1	(36)	(36)		6-3	하월곡 산2-14	(36)	(36)		1	(36)	(36)		
	창 고	7	하월곡 산2-14	(36)	(36)		1	(36)	(36)											폐지 감) 36㎡
녹지 및 기타				114,197								152,732.3							증) 38,535.3㎡	

다. 도로조서
“가”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14,652	37,445 (4,685)				
당초	대로	3류	1	25	445	(3,325)	도시계획도	8-221, 공원경계	83,공원경계	
당초	중로	3류	3	12	175	(1,360)	도시계획도	바-4	광장 가-9	
당초	소로	소계			2,878	13,834				
당초		3	1	5	456	1441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75	
당초		3	2	5	499	2490	연결로	소로 3-3	광장 가-6	
당초		3	3	6	135	924	연결로	녹지	광장 가-1	
당초		3	4	4	94	495	연결로	야생초화원	소로 3-3	
당초		3	5	4	9	37	연결로	주차장 버	소로 3-4	
당초		3	6	4	45	648	연결로	소로 3-2	소로 3-3	
당초		3	7	4	37	152	연결로	소로 3-6	미술관	
당초		3	8	5	494	2502	연결로	소로 3-14	소로 3-3	
당초		3	9	3	81	241	연결로	미술관	소로 3-11	
당초		3	10	3.6	48	116	연결로	소로 3-8	소로 3-11	
당초		3	11	4.5	51	217	연결로	소로 3-9, 10	소로 3-2	
당초		3	12	4	247	982	연결로	휴게소 가-5	휴게소 가-2	
당초		3	13	4	223	878	연결로	광장 가-6	소로 3-1	
당초		3	14	4.5	91	424	진입로	광장 가-6	소로 3-8	
당초		3	15	6	368	2287	진입로	부지경계	주차장 어	
당초	산책로	소 계			11,154	18,926				
당초			1	2.5	270	53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4	
당초			2	2.9	29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당초			3	1.5	127	186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0	
당초			4	1.5	157	228	산책로	산책로 3	운동시설 너-6	
당초			5	1.5	3	7	산책로	산책로 4	파고라	
당초			6	1.5	43	60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2	
당초			7	1.5	13	32	산책로	산책로 4	운동시설 너-4	
당초			8	1.2	32	41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9	1.2	21	54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10	1.5	255	387	산책로	산책로 12	전망대	
당초			11	1.5	22	33	산책로	산책로 12	운동시설 너-4	
당초			12	2	289	508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5	
당초			13	1	78	97	산책로	휴게시설 자-8	운동시설 너-6	
당초			14	1.3	54	75	산책로	운동시설 너-6	산책로 15	
당초	산책로		15	1.5	110	170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시설 자-6	
당초			16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7	
당초			17	1.5	201	344	산책로	산책로 15	부지경계	
당초			18	2	56	111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17	
당초			19	1.5	19	38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7	
당초			20	1.2	21	29	산책로	산책로 17	운동시설 너-5	
당초			21	1.2	115	139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2	1.2	38	44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3	2	4	9	산책로	산책로 22	운동시설 너-5	
당초			24	1.2	24	29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5	1.5	20	30	산책로	산책로 10	휴게소 자-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당초			26	1.5	230	344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12	
당초			27	1.5	107	160	산책로	광장 가-7	산책로 134	
당초			2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27	산책로 134	
당초			29	1.5	16	29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30	
당초			30	1.5	25	41	산책로	산책로 33	산책로 29	
당초			31	1.5	2	3	산책로	산책로 30	녹지	
당초			32	2	29	48	산책로	산책로 34	부지경계	
당초			33	1.5	7	11	산책로	녹지	산책로 34	
당초			34	1.5	185	265	산책로	데크쉼터 카-2	산책로 31	
당초			35	1.5	172	254	산책로	저류지	소로 3-12	
당초			36	1.5	27	37	산책로	저류지	광장 가-3	
당초			37	2	48	99	산책로	광장 가-3	데크쉼터 카-4	
당초			38	1.5	49	72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1	
당초			39	1.5	87	129	산책로	데크쉼터 카-4	데크쉼터 카-5	
당초			40	1.5	100	150	산책로	소로 3-12	산책로 35	
당초			41	1.2	45	9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2	1.2	44	53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3	1.5	18	28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당초			44	2	16	32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당초	산책로		45	2.8	31	89	산책로	산책로 43, 44	소로 3-1	
당초			46	1.5	21	32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5	
당초			47	1.5	33	69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6	
당초			48	2	57	118	산책로	산책로 49	소로 3-1	
당초			49	2	46	92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0	2	52	10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1	2	69	111	산책로	광장 가-1	방문자센터	
당초			52	2	8	15	산책로	산책로 53	소로 3-3	
당초			53	2	49	100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당초			54	2.5	15	37	산책로	소로 3-8	구한옥	
당초			55	1.2	25	28	산책로	구한옥	광장 가-2	
당초			56	2	33	66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6	
당초			57	1.5	93	141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9	
당초			5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57	수변쉼터 타-4	
당초			59	1.5	16	25	산책로	산책로 57	산책로 58	
당초			60	2	5	9	산책로	소로 3-8	광장 가-9	
당초			61	1.5	40	67	산책로	산책로 57	월영연못	
당초			62	2.3	6	15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3	
당초			63	1.5	118	176	산책로	광장 가-9	소로 3-8	
당초			64	1.5	14	20	산책로	산책로 63	월영연못	
당초			65	1.5	12	18	산책로	월영연못	월영연못	
당초	산책로		66	2	7	15	산책로	소로 3-6	월영연못	
당초			67	1.5	24	39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소로 3-6	
당초			68	1.5	34	51	산책로	수변쉼터 타-4	수변쉼터 타-5	
당초			69	2	17	33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수변쉼터 타-1	
당초			70	1.8	6	10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9	
당초			71	2.4	4	11	산책로	소로 3-8	수변쉼터 타-1	
당초			72	1.2	39	46	산책로	소로 3-10	창포원	
당초			73	1.2	40	48	산책로	창포원	산책로 7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당초			74	2	52	106	산책로	창포원	소로 3-11	
당초			75	2	198	457	산책로	소로 3-13	광장 가-4	
당초			76	2.6	5	13	산책로	소로 3-11	소로 3-2	
당초			77	1.5	15	36	산책로	소로 3-2	월영연못	
당초			78	2	19	40	산책로	산책로 35	데크쉼터 카-3	
당초			79	1.5	72	107	산책로	문화센터	광장 가-6	
당초			80	1.5	118	177	산책로	광장 가-8	산책로 79	
당초			81	1.5	80	122	산책로	광장 가-8	전망대	
당초			82	1.5	7	10	산책로	광장 가-8	문화센터	
당초			83	2	27	54	산책로	소로 3-14	광장 가-6	
당초			84	2	39	78	산책로	소로 3-14	데크쉼터 카-6	
당초			85	1.5	32	45	산책로	산책로 86	어린이놀이터 파-1	
당초			86	1.5	67	100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87	
당초			87	2	362	656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소 자-1	
당초			88	2	35	73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0	
당초			89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90	다목적 운동장 가-2	
당초			90	1.5	223	335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87	
당초			91	1.5	87	129	산책로	산책로 90	산지	
당초			92	2.5	305	61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99	
당초			93	1.5	160	243	산책로	산책로 92	중로 3-1	
당초			94	2	199	401	산책로	산책로 96	산책로 92	
당초			95	1.5	63	95	산책로	산책로 94	산책로 99	
당초			96	2	180	369	산책로	산책로 97	부지경계	
당초			97	2	72	164	산책로	녹지	산책로 99	
당초	산책로		98	1.5	38	57	산책로	산책로 98	산책로 97	
당초			99	2	548	1096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120	
당초			100	1.5	208	310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8	
당초			101	1.3	191	272	산책로	산책로 99	산책로 87	
당초			102	1.5	245	363	산 책 로	산책로 87	휴게소 자-3	
당초			103	2	53	99	산 책 로	휴게소 자-4	산책로 70	
당초			104	1.5	85	127	산 책 로	휴게소 자-4	운동시설 너-8	
당초			105	1.2	35	40	산 책 로	산책로 104	운동시설 너-8	
당초			106	1.2	55	66	산 책 로	운동시설 너-8	산책로 108	
당초			107	1.2	20	28	산 책 로	산책로 106	운동시설 너-8	
당초			108	1.5	120	173	산 책 로	휴게소 자-2	운동시설 너-1	
당초			109	2	332	567	산 책 로	산책로 108	녹지	
당초			110	1.5	173	260	산 책 로	휴게소 자-2	산책로 99	
당초			111	1.5	25	38	산 책 로	운동시설 너-1	산책로 109	
당초			112	1.5	37	60	산 책 로	산책로 111	산책로 109	
당초			113	2	73	123	산 책 로	산책로 109	운동시설 너-1	
당초			114	1.2	26	31	산 책 로	산책로 115	산책로 113	
당초			115	1.5	43	65	산 책 로	산책로 113	운동시설 너-2	
당초	산책로		116	1	7	10	산 책 로	운동시설 너-2	산책로 117	
당초			117	1	25	25	산 책 로	녹지	산책로 109	
당초			118	1.2	99	115	산 책 로	산책로 109	산책로 120	
당초			119	1.2	143	173	산 책 로	산책로 121	산책로 118	
당초			120	1.8	270	383	산 책 로	녹지	산책로 1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21	1	48	48	산책로	산책로 119	산책로 109	
당초			122	1.5	104	152	산책로	산책로 120	녹지	
당초			123	1.2	132	171	산책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4	1.5	75	111	산책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5	1.5	24	46	산책로	산책로 123	산책로 124	
당초			126	1.2	15	19	산책로	산책로 122	산책로 121	
당초			127	1	40	40	산책로	녹지	부지경계	
당초			128	2	126	256	산책로	산책로 99	운동시설 너-7	
당초			129	1.5	38	67	산책로	산책로 128	부지경계	
당초			130	1.5	26	38	산책로	산책로 99	부지경계	
당초			131	2	77	167	산책로	산책로 99	산책로 133	
당초			132	2	186	407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당초			133	2	113	227	산책로	산책로 132	산책로 96	
당초			134	2.3	341	716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8	
당초			135	2	166	316	산책로	소로 3-8	소로 3-8	
당초			136	2.5	125	350	산책로	산책로 109	운동시설 러-1	

다. 도로조서

“나”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5,159	9,351 (14,205)				
당초		소 계			605	(11,828)				
당초	중로	1류	1	20	571	(11,420)	도시계획도	습지생태원 차	주차장 타-2	
당초		3류	1	12	34	(408)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주차장 타-3	
당초		소 계			827	1,500 (2,377)				
당초	소로	3류	1	6	250	1,500	시설연결로	광장 가-3	광장 가-2	
당초		3류	2	6	577	(2,377)	도시계획도	주차장 타-3	어린이놀이터 다-1	
당초		소 계			3,727	7,851				
당초			1	2	39	78	산책로	산책로2	어린이놀이터 다-3	
당초			2	2	129	25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	
당초			3	4	150	600	산책로	광장 가-3	어린이놀이터 다-3	
당초			4	2.3	275	632	산책로	광장 가-3	번2동 산27-108	
당초			5	2	107	214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4	
당초	산책로		6	2	78	156	산책로	주차장 타-4	휴게소 나-2	
당초			7	2	23	46	산책로	광장 가-4	휴게소 다-2	
당초			8	2	351	702	산책로	휴게소 나-2	산책로9	
당초			9	2	264	528	산책로	광장 가-3	체력단련장 라-1	
당초			10	2	79	158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1	산책로9	
당초			11	2	216	432	산책로	보태닉가든 자	산책로9	
당초			12	2	70	140	산책로	산책로11	보태닉가든 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3	2	43	86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9	
당초			14	2	55	110	산책로	소로 3-2	체력단련장 라-1	
당초	산책로		15	2	193	386	산책로	산책로21	보태닉가든 자	
당초			16	1.5	24	36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산책로15	
당초			17	1.5	24	36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산책로18	
당초			18	1.5	86	129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당초			19	2~2.5	39	88	산책로	중로 1-1	어린이놀이터 다-4	
당초			20	2	321	64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4	산책로18	
당초			21	2	154	308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3	
당초			22	2	42	8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3	2	21	42	산책로	산책로26	체력단련장 라-1	
당초			24	2	22	4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5	2	143	286	산책로	관목원 사	산책로26	
당초			26	2	133	26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1	
당초			27	2	18	36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9	
당초			28	2	87	174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9	
당초			29	2	130	260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5	
당초			30	4	80	318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보태닉가든 자	
당초			31	1	73	73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2	번2동 산27-108	
당초			32	1	13	13	산책로	광장 가-1	번2동 산27-108	
당초			33	2	3	6	산책로	휴게소 나-4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34	2	242	484	산책로	광장2	휴게소 나-4	

다. 도로조서
“다”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0,097	21,827 (10,683)				
변경	합 계				10,097	21,827 (10,683)				
당초	중로	소 계			659	(8,118)				
당초		3류	1	12~15	625	(7,710)	도시계획도	산1-4,공원경계	산13-1,공원경계	
당초		3류	2	12	34	(408)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산책로57	
당초	소로	소 계			876	4,832 (2,565)				
변경		소 계			876	4,832 (2,565)				
당초		1류	1	10	190	1,900	진 입 로	번2동 637-7	번2동 산25-8	
당초		1류	2	11	20	220	진 입 로	소로 1-1	다목적운동장 바-1	
당초		2류	1	9	285	(2,565)	도시계획도	중로 3-2종점	산책로1종점	
당초		2류	2	8	282	2,256	시설연결로	소로 3-1종점	중로 3-2시점	
신규		3류	1	5	99	456	시설연결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당초		소 계			8,562	16,995				
변경		소 계			8,562	16,995				
당초			1	2	619	1,238	산책로	광장 가-5	미아3동 산13-6	
당초	산책로		2	2	90	180	산책로	광장 가-5	산책로1	
당초			3	2	122	244	산책로	광장 가-5	부지경계	
당초			4	2	37	74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바-2	산책로5	
당초			5	2	144	28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6	2	155	31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7	2	300	600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6	
당초			8	1.5	57	86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7	
당초			9	2	41	82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12	
당초			10	2	163	326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12	
당초			11	2	182	364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12	
당초	산책로		12	2	545	1,0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13	2	208	416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2	
당초			14	2	72	144	산책로	산책로13	배드민턴장 마-3	
당초			15	2	163	326	산책로	산책로31	배드민턴장 마-3	
당초			16	2	58	116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당초			17	2	52	104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15	
당초			18	2	203	406	산책로	산책로31	약수터 자-3	
당초			19	2	169	318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20	
당초			20	2	520	1,040	산책로	산책로15	어린이놀이터 라-2	
당초			21	2	63	126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22	
당초	산책로		22	2	158	316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12	
당초			23	2	107	214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24	2	36	72	산책로	산책로23	배드민턴장 마-2	
당초			25	2	76	152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3	
당초			26	2	61	122	산책로	산책로20	어린이놀이터 라-2	
당초			27	2	292	584	산책로	산책로29	산책로20	
당초			28	2	122	244	산책로	배드민턴장 마-4	어린이놀이터 라-2	
당초			29	2	335	670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37	
당초			30	2	87	174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29	
당초			31	2	14	2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2시점	
당초			32	2	47	94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29	
당초			33	2	18	36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0	
당초			34	2	73	146	산책로	휴게소 나-3	산책로35	
당초	산책로		35	2	169	338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7	
당초			36	2	150	30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0	
당초			37	2	454	908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28	
당초			38	2	40	80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37	
당초			39	2	38	76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40	
당초			40	2	549	1,098	산책로	종합체육관(사)	산책로54	
당초			41	1.5	96	144	산책로	소로 1-1	광장 가-4	
당초			42	1.5	28	42	산책로	소로 1-1	휴게소 나-4	
당초			43	2	115	230	산책로	휴게소 나-5	어린이놀이터 라-5	
당초			44	1.5	143	215	산책로	산책로43	산책로45	
당초			45	1.5	119	179	산책로	산책로40	부지경계	
당초			46	1.5	14	21	산책로	산책로45	다목적운동장 바-4	
당초			47	1.5	20	3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바-4	부지경계	
당초			48	2	50	100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40	
당초			49	1.5	95	143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8	
당초			50	1.5	19	2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8	
당초			51	2	45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52	
당초			52	2	99	198	산책로	산책로48	산책로53	
당초			53	2	36	72	산책로	산책로54	어린이놀이터 라-4	
당초			54	2	96	192	산책로	산책로37	휴게소 나-2	
당초			55	2	63	126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라-2	체력단련장 바-1	
당초			56	2	14	28	산책로	산책로55	휴게소 나-1	
당초			57	1.8	202	364	산책로	중로 3-2	휴게소 나-9	
당초	산책로		58	2	83	166	산책로	미아3동 산25-38	휴게소 나-6	
당초			59	1.8	17	31	산책로	휴게소 나-1	휴게소 나-2	
당초			60	2	6	12	산책로	휴게소 나-2	중로 3-2	
당초			61	2	38	76	산책로	휴게소 나-9	미아3동 산25-38	
당초			62	2	6	12	산책로	285-110 차	산책로61	
당초			63	5	127	539	산책로	소로 3-1	부지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64	2.5	158	268	산책로	산책로63	부지경계	
당초			65	1.5	15	25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64	
당초			66	2	27	55	산책로	편익 타-1	휴게소 나-13	
당초			67	2	25	50	산책로	편익 타-2	휴게소 나-14	
당초			68	1.8	17	28	산책로	휴게소 나-14	부지경계	

다. 도로조서

“라”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820)	21,612				
변경		합 계			(4,048)	22,854				
당초	중로	소 계		15	(28)	(420)				
당초		2	1	15	28	420	간선도로	부지서측	부지동측	
당초	소로	소 계			2,341	17,936				
당초		1	3	10	276	2,760	주진입로	부지남서측하단	주차장	
당초		1	4	10	80	800	주진입로	소1-3	부지남측하단	
당초		1	5	10	120	1,200	주진입로	부지남측하단	부지남측경계	
당초		1	6	10	156	1,560	주진입로	부지남측하단	주차장	
당초		1	9	10	490	4,900	주진입로	소3-8	부지남측하단	
당초		1	10	10	140	1,400	주진입로	소1-9	축구장	
당초		3	2	6	200	1,200	주진입로	부지동측경계	소1-3	
당초		3	7	6	50	300	주진입로	부지북측경계	부지서측	
당초		3	8	6	90	540	주진입로	주차장	부지동측	
당초		3	9	6	10	60	주진입로	부지서측경계	소3-18	
당초		3	10	6	50	300	주진입로	소3-9	월곡초등학교앞	
당초		3	11	6	40	240	주진입로	소3-10	놀이터앞	
당초		3	13	4	335	1,340	주진입로	주차장	소3-26	
당초		3	14	4	234	936	주진입로	소3-8	전망대	
당초		3	15	4	50	200	주진입로	소3-32	휴게광장	
당초		3	16	4	50	200	주진입로	부지동남측경계	소3-11	
당초	산책로	소 계			1,421	3,256				
변경		소 계			1,679	4,498				
신규	산책로	1	11	3.5~1 2	160	1,092	산책로	진입광장	들꽃향기원	
당초		3	17	3	140	420	산책로	소공원	중2-1	
당초		3	18	3	170	510	산책로	중2-1	소3-1	
당초		3	19	2	55	110	산책로	소3-13	주차장	
당초	산책로	3	20	2	60	120	산책로	소3-13	관리사무소	
당초		3	21	2	70	140	산책로	소3-3	테니스장, 휴게실	
변경		3	21	2	82	164	산책로	소1-3	소1-11	
당초		3	22	2	35	70	산책로	소1-13	배드민턴장	
당초		3	23	3	82	246	산책로	소3-17	소3-17	
당초		3	24	3	22	66	산책로	소1-6	진입광장	
당초		3	25	2	110	220	산책로	주차장	소3-26종점	
당초		3	26	2	115	230	산책로	소3-14	소3-1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27	2	122	244	산책로	소3-13	소3-26	
당초		3	28	2	65	130	산책로	소3-27	소3-29	
당초		3	29	2	210	420	산책로	전망대	휴게광장	
당초		3	31	2	55	110	산책로	소3-29	소3-32	
당초		3	32	2	110	220	산책로	소1-10	전망대	
신규		3	33	1.5	76	114	산책로	소3-13	명상의숲	
신규		3	34	1.2	10	12	산책로	소3-13	명상의숲	

◆ 동작구공고 제2020-1389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15.10.29.)로 변경결정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2020.7.8.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동 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 02-820-9666, FAX 02-820-9780)

다. 열람의견 제출장소 : 위 열람장소

라. 열람내용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 가.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나.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적 용 기 준	적 용 대 상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획지로의 직접 출입을 제한 - 간선도로변으로 직접 출입 규제 및 안전한 교통소통 유도	변경 없음	간선도로변(동작대로, 남부순환로, 서초로, 사당로)
주차 출입구	이면부 출입동선계획이 불가한 간선 가로변 획지	기정	- 방배동 866-6 • 방배동 1736 - 방배동 3160(동작대로, 서초로)
		변경	- 방배동 866-6 • 방배동 1736 - 방배동 3160(동작대로, 서초로) - 사당동 1044-15(남부순환로) (폭원 : 7m)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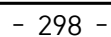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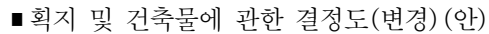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 출입구	남부순환도로변 사당동 1044-15 번지 일부구간 주차출입허용	대상지 이면부에 확보된 도로(폭3m)는 주차장법(제6조,11조)에 따라 차량진출입구 법정너비 기준 미달로 차량출입동선계획이 불가한 구역으로 남부순환로변 주차출입구(7m) 확보 필요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변경없음

④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II.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 서초구공고 제2020-146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초구 신원동 225일대 서초복합복지타운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로 변경(중복)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변경(폐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	11,979	감)11,979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35호 (2009.06.11.)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 청사	근린공공시설 (보건지소)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	-	증)900	900	-	중복결정 공공청사(보건지소) 및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	증)11,979	11,979	-	

■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60%이하	150%이하	5층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2.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5), 내곡동 주민센터(02-2155-7951)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로 갈음)

5.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2155-6819, 이메일 lyj5969@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미래조선기술(대표 한재형)
3. 점용자 주소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27-107, 비취맨션 10-309
4. 점 용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8-2(행주대교 상류 남단)
4. 점 용 목 적 : 유선장 대체건조를 위한 하천점용
5. 점 용 면 적 : 1,000㎡
6. 점 용 기 간 : 2020.10. 1. ~ 2020.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주)리우엠앤씨(대표 이종우)
3. 점용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망원동)
4. 점 용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망원동 205-5)

4.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 [(유선장 및 부대시설(사무실))]
 5. 점 용 면 적 : 323.34㎡(유선장:295.34㎡, 사무실: 28㎡)
 6. 점 용 기 간 : 2020.10. 1. ~ 2020.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시설 안전공단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서울시계 내 한강 (원효대교)	선박 2척	정밀안전 진단점검	2020.10.5.~ 2020.11.30.	2020. 9.2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시계 내 한강 (성산대교 북단)	선박 2척	가설교량 철거공사	2020.10.1.~ 2020.12.31.	2020. 9.2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90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가양대교 북단	선박 36척	공사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	2020.10.1.~ 2020.10.31.	2020. 9.2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67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광장티엔비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6길 54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73-2번지상 한강,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57번지상 한강	선박 25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	2020.10.1.~ 2020.12.31.	2020. 9.2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68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74-1 한강	선박 1척	공사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	2020.10.1.~ 2020.12.31.	2020. 9.25.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8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당초	변경
위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57-2번지 등 37필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57-2번지 등 44필지
면적	영구 44,863㎡, 일시 46,395㎡	영구 46,313㎡, 일시 52,26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올림픽대교 남단IC 구조개선
- 내 역 :

당초	변경
- RAMP J1 · J2 · E교신설 - 상수및하수관로이설 240m - 공사용가도, 가시설, 교량제작장 1식	- RAMP J1 · J2 · E교신설 - 한가람로 RAMP(L=212m, B=5m) 신설 - 상수및하수관로이설 240m - 공사용가도, 가시설, 교량제작장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 2016.11.14.~2021.11.13.(2016.11.14.~2020.11.13.)
변경 2016.11.14.~2021.12.31.(2016.11.14.~2021.12.31.)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